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재산권의 보호

2024년 2월 29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번역본 복제 또는 재출판 요청](#) 문의 양식을 작성하여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영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4년 2월 29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https://ks.echr.coe.int>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 목차

일러두기 .....	5
I. 서문 .....	6
II. 일반적 쟁점 .....	7
A. 제 1 의정서 제 1 조 적용가능성 – “소유물”.....	7
1. “소유물”이라는 개념 .....	7
a. 독자적 의미 .....	7
b. 보호되는 “소유물”.....	8
i. 정당한 기대 .....	9
c. “소유물”的 여러 유형과 그 외 소유권 .....	11
i. 청구권 및 판결 채무 .....	11
ii. 회사 주식, 기타 금융 상품 및 그 외 사업 자산 .....	12
iii. 전문직의 고객 .....	14
iv. 혜가 .....	14
v. 미래 소득 .....	15
vi. 지식재산권 .....	15
vii. 부동산 임대차 및 주거권 .....	15
viii. 사회 보장 혜택/연금 .....	17
ix. 국내외 무력 충돌 상황에서 재산의 파괴 – 필요한 증거 수준 .....	19
x. 인간 배아 .....	19
B. 평화로운 재산 향유권에 대한 개입 .....	20
1. “3 대 규칙” 접근법 .....	20
a. 재산 박탈 .....	22
b. 사용 제한 .....	23
c. 일반 규칙 .....	25
2. 적법성 원칙 .....	25
3. 공공의 또는 일반의 이익 .....	29
4. 비례성 및 관련 쟁점(공정한 균형, 보상, 재량).....	31
a. 절차적 요소 .....	32
b. 조치의 선택 .....	33
c. 공정한 균형 심사와 관련된 실체적 사안 .....	34
d. 청구인 관련 사안 .....	36
e. 공정한 균형의 요소인 재산 개입에 따른 보상 .....	36
C.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 .....	39
1. 수평적 효과 – 사인의 개입 .....	42
2. 구제 조치 .....	43
3. 집행 절차 .....	44
D.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그 외 협약 조항 간 관계 .....	46
1. 제 2 조 .....	46
2. 제 3 조 .....	47
3. 제 4 조 .....	47
4. 제 6 조 .....	47
5. 제 7 조 .....	49
6. 제 8 조 .....	50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7. 제 10 조.....	52
8. 제 11 조.....	53
9. 제 13 조.....	53
10. 제 14 조 .....	54
<b>III. 구체적 사안 .....</b>	<b>57</b>
E. 임대차 및 임대료 통제 .....	57
F. 사회 복지 사건 .....	61
G. 은행 사건.....	65
H. 과세.....	68
I. 토지 계획 .....	70
J. 범죄 수익 몰수 .....	71
K. 재산의 원상회복 .....	74
L. 국유 기업 .....	78
M. 긴축 조치 .....	80
N. 유럽연합법 .....	81
<b>인용 판례 목록.....</b>	<b>84</b>

##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拉斯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관한 판례법을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를 통해 이 분야의 주요 원칙들과 관련 판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더욱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54; *Jeronovičs v. Latvia* [GC], § 109).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30078/06, 2012, § 89,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인권분야에서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56, 더 최근 사건인 *N.D. and N.T. v. Spain* [GC], nos. 8675/15 및 8697/15, § 110, 2020년 2월 13일).

최근 유럽인권협약 제 15 의정서는 협약 전문에 보충성의 원칙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원칙은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재판소 간에 공동의 책임을 부과”하며, 국가 당국과 법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Grzeda v. Poland* [GC], § 324).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뤄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결은 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I. 서문

###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법 및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소유물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 단 위의 규정은 국가가 공동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세금이나 기타의 부담금 또는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을 집행할 권리를 결코 해하지 아니한다.”

### HUDOC 주제어

적극적 의무(P1-1)

소유물(P1-1-1) – 소유물의 평화로운 향유(P1-1-1) – 개입(P1-1-1) – 재산 박탈(P1-1-1): 공익(P1-1-1) – 법으로 규정된(P1-1-1): 접근가능성(P1-1-1); 예측가능성(P1-1-1);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P1-1-1) – 국제법 일반 원칙(P1-1-1)

재산 사용 제한(P1-1-2): 공공의 이익(P1-1-2) – 세금 확보(P1-1-2) – 부담금 또는 벌금 확보 (P1-1-2)

1.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재판소”)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선고한 주요 판결에 관한 정보를 법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재판소의 판례에서 발전한 핵심 원칙을 관련 선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인용한 판례는 리딩케이스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최근에 선고한 판결과 결정으로 선별하였다.

2. 스트拉斯부르 재판소는 판결로써 재판소에 제소된 개별사건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럽인권협약(“협약”)이 정한 규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켜 각국이 협약당사국으로서 약속한 이행사항을 준수하게 한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978, § 154).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통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를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이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2012, § 89).

3.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재산권을 보장한다. *Marckx v. Belgium*, 1979, §§ 63–64 사건에서 재판소는 처음으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 제 1 조는 누구나 자신의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보장한다. “소유물” 및 “재산의 사용”(프랑스어: “biens(소유물)”, “propriété(재산)”, “usage des biens(소유물의 사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를 분명히 하였다. 협약 준비문서를 보아도, 현재 제 1 조의 전신인 여러 초안을 연이어 작성하면서 쟁점을 설명하기 위해 계속해서 “재산의 권리”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여 이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실제로도 자신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재산권의 전통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이다 ...

그렇지만 제 1 조 제 1 항 후문은 “공동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체약국에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 항은 그러한 법의 “필요성”은 유일하게 체약국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 “공동의 이익”과 관련하여, 사건에 따라서는 입법부가 “재산 사용을 제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 II. 일반적 쟁점

### A. 제 1 의정서 제 1 조 적용가능성 – “소유물”

#### 제 1 의정서 제 1 조 – 재산권

“1.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가 있다. ...”

#### HUDOC 주제어

소유물(P1-1-1) – 소유물의 평화로운 향유(P1-1-1)

#### 1. “소유물”이라는 개념

4. 제 1 의정서 제 1 조 첫 부분의 “소유물”은 독자적인 개념으로 “기존의 소유물”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적어도 “정당한 기대”를 주장할 수 있는 자산(청구권 포함)도 그 범위에 속한다. “대물”권과 “대인”권도 “소유물”이다. 이 용어는 부동산, 동산 및 그 외 소유권을 망라한다.

##### a. 독자적 의미

5. “소유물”이라는 개념은 국내법의 형식적 분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의미로 물질적인 재화의 소유권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자산을 구성하는 기타 권리와 이익도 “재산권”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이 조항의 목적에 따른 “소유물”로 간주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의 상황상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실체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부여되었는지 여부는 사건마다 심리해야 할 쟁점이다(*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3;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24;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29; *Beyeler v. Italy* [GC], 2000, § 100; *Iatridis v. Greece* [GC], 1999, § 54;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71; *Fabris v. France* [GC], 2013, §§ 49 및 51; *Parrillo v. Italy* [GC], 2015, § 211; *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76; *Elif Kızıl v. Turkey*, 2020, § 61).

6. 일국의 국내법이 어떤 이익을 “권리”로도 또는 심지어 “재산권”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의 이익이 정황에 따라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로 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시간이 경과하면 취소할 수 있고 불안정한 공공 재산 점유권에 관한 *Depalle v. France* [GC], 2010, § 68; 무단 거주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에 관한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29). 당국이 장기간 용인하면 분쟁이 있는 필지라도 그 재산권을 청구인들에게 부여하기도 하였다(*Kosmas and Others v. Greece*, 2017, §§ 68–71; 또한 청구인에게 적절한 권원이 없었지만, 설립 문서에 언급된 종교 재단의 재산에 관한 *Arnavutköy Greek Orthodox Taksiarhis Church Foundation v. Türkiye*, 2022, §§ 45–46 참조). 나아가,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권과 더불어, 필지 수용(收用)을 명령하는 국내법으로써 소유권이 창출되었다고 보았다(*Kutlu and Others v. Turkey*, 2016, § 58).

7. 재판소는 개입이 주장될 당시 시행 중인 국내법이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 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31).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을 상황에 따라 “소유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27; *Depalle v. France* [GC], 2010, § 85, 전항 참조; *Brossel-Triboulet and Others v. France* [GC], 2010, § 71; *Keriman Tekin and Others v. Turkey*, 2016, §§ 42–46), 국내법이 불법 건축물을 재산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2016, § 68). 따라서

국내 법원의 재산권 인정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의 심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30–131).

8. 재산에 대한 권리는 정황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취소가 되기 전이라면 그 재산은 “소유물”로 본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75; *Krstić v. Serbia*, 2013, § 83; *Čakarević v. Croatia*, 2018, § 52; *Moskal v. Poland*, 2009, § 40; *Grobelny v. Poland*, 2020, § 58). 예를 들어 *Beyeler v. Italy* [GC], 2000, §§ 104–10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그림을 수년간 소유하였고, 당국이 사실상 그림 소유권이 있다고 보았으며,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당국이 그림 구매 계약을 무효로 보았음에도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소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또한 아래 사회복지 사건에 관한 장 참조).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조달 계약이 이후에 무효가 되더라도 의정서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구성할 수 있다고도 판결하였다(*Kurban v. Turkey*, 2020, §§ 64–65).

9. 비물질적 자산의 경우, 재판소는 특히 문제가 된 법적 지위가 재정적 권리와 이익을 발생시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 상표, 저작권, 특히 같은 지식재산권(*Melnichuk v. Ukraine* (dec.), 2005;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72, 76 및 78; *Tokel v. Turkey*, 2021, § 56; *AsDAC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0, § 24; *Korotyuk v. Ukraine*, 2023, § 33), 또는 재산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주류 판매 면허 또는 어업권 등, *Tre Traktörer Aktiebolag v. Sweden*, 1989, § 53; *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2005, § 66; *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2018, § 89) 및 회사 명의로 등록된 인터넷 도메인의 독점 사용권(*Paeffgen GmbH v. Germany* (dec.), 2007)도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b. 보호되는 “소유물”

10.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한 사람의 기존 “소유물”에만 적용한다(*Marckx v. Belgium*, 1979, § 50;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4).

11. 따라서 청구인은 논란이 된 결정이 이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 관련일 경우에만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소유물”은 “기존 소유물” 또는 자산(청구권 포함)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적어도 실효적으로 향유할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31; *J.A. Pye (Oxford) Ltd and J.A. Pye (Oxford) Land Ltd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61; *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2005, § 74 (c); *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 (c); *Katona and Závorský v. Slovakia*, § 52).

12.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효적 행사가 불가능한 재산권 인정을 바라는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로 볼 수 없으며, 조건 미이행으로 소멸하는 조건부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2001, §§ 82–83; *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69; *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c); *Malhous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0; *Nerv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002, § 43; *Stretch v. the United Kingdom*, 2003, § 32;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72) (수용 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은 아래 참조).

13. 국내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이 있고 청구인의 신청을 이후 국내 법원이 거부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일단 합법적으로 수용되었던 재산이 상당한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공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경우인 *Kopecký v. Slovakia* [GC], 2004, § 50 및 *Çiftçiler Joint Stock Company and Others v. Turkey* (dec.), 2020, § 82;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청구인 회사의 데이터 센터 건립 허가를 거부한 *UAB AmberCore DC and UAB Arcus Novus v. Lithuania*, 2023, §§ 130–131).

14. 재산권 침해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람은 우선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Pištorová v. the Czech Republic*, 2004, § 38; *Des Fours Walderode v. the Czech Republic* (dec.), 2004; *Zhigalev v. Russia*, 2006, § 131). 애초에 재산권 부여와 확인은 국가 법체계에 속하고, 청구인은 국내법에서 해당 권리의 정확한 성격과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을 위헌으로 선언했지만, 적용은 연기하였다면, 그 판결 적용 전까지는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지 않는다(*Dobrowolski and Others v. Poland* (dec.), 2018, § 28).

15. 청구인에게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이 있는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결정해야 한다(*J.A. Pye (Oxford) Ltd and J.A. Pye (Oxford) Land Ltd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61). 재판소는 청구인 아버지의 유산이 청구인과의 친자 관계가 확립되기 훨씬 전에 청산되었기 때문에 “소유물”을 구성할 만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Wysowska v. Poland* (dec.), 2018, §§ 51–52).

16. 반면, 국내 법원에서 청구인 남편의 유언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한 이후 청구인이 공증된 증서를 통해 남편의 유산을 수령한 다음 토지 등기소에 양도받은 재산을 등기한 경우, 재판소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청구인의 소유권이 그 성격상 “소유물”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28–132).

### i. 정당한 기대

17. 상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정당한 기대”도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보호를 누릴 수 있다(*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31; 반대의 경우라면 *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73).

18. “기대”가 “정당”하려면 그저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성격이 있어야 하며, 문제가 된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된 법 조항 또는 법률 행위(사법적 결정 등)에 근거해야 한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49–50;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73; *Sagchinadze and Others v. Georgia*, 2010, § 103; *Ceni v. Italy*, 2014, § 39; *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75; *Valverde Digon v. Spain*, 2023, § 49).

19.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맥락에서 “정당한 기대권”이라는 개념은 *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1991, § 51 사건에서 재판소가 처음으로 발전시켰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약식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사들은 개발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하였다. 건축 당국이 취소할 수 없는 건축 허가는 “청구인 회사의 자산을 구성하는 부분”이었다(*ibid.*, § 51; 장기 임대차 갱신 옵션 행사와 관련하여 *Stretch v. the United Kingdom*, 2003, § 35 및 아파트 구매 예비 계약 체결, 대금 완납 및 청구인의 아파트 소유 취득과 관련된 *Ceni v. Italy*, 2014, § 43). 따라서 같은 범주로 분류되는 사건에서 “정당한 기대”는 건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행위에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의지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47).

20. “정당한 기대”라는 개념의 또 다른 면은 *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31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판소는, 파기원이 선고한 여러 결정을 기준으로 삼아, 청구인들이 해운 사고로 인한 청구권이 일반적인 불법 행위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청구권은 피해가 발생한 즉시 성립되었다고 판결하였다. “정당한 기대”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에 해당하는 청구권이 국내법상 어떻게 취급될지 것인가와 관련된다(*Draon v. France* [GC], 2005, § 70; *Maurice v. France* [GC], 2005, §§ 67–69 또한 *N.M. and Others v. France*, 2022, §§ 49–50 참조).

21. 마찬가지로, *Uzan and Others v. Turkey*, 2019, § 193 사건에서 재판소는 상속과 증여로 특정 권리를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국내 법원이 인정한 미성년 청구인들에게 “소유”의 개념에 속하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Jarre v. France*, 2024, §§ 48–49 사건도 상속권, 특히 프랑스에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지만 외국법에 준거하여 상속인으로 지정될 권리가 부인된 개인들이 프랑스에 있는 유산의 일부를 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법률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즉각적인 효력에 관한 사안을 다루었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및 청구인들이 청구를 제기했을 때 네 가지 법적 조건을 지켰으므로 “소유물”에 해당하는 “정당한 기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2. 나아가, *Aliyeva and Others v. Azerbaijan*, 2021, §§ 109–111 사건에서 아제르바이잔 대법원이 국가의 필요에 따른 수용(收用)과 관련된 유사한 사건과 다른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재판소는 법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청구인들의 권리가 명확하게 확인된 대법원 판례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결하였다. 즉, 국내 법원이 모순적으로 접근하기는 했지만, 청구인들의 청구권은 국내법으로 충분히 확립된 “정당한 기대”로 인정되어 “소유물”에 해당하였다(*ibid.*, §§ 118–120 대조).

23. 반대로, 국내법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에 대한 분쟁이 있고 이후 청구인의 신청을 국내 법원이 거부한 경우라면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5;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73; *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75; *Karachalios v. Greece* (dec.), 2017, § 46;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49). 또한 이후 관련 조항이 입법 개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이전 법규에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Galakvoščius v. Lithuania* (dec.), 2020, §§ 42 및 59–60). 이 사건은 청구인이 지방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납부한 기탁금의 환불을 당국이 거부한 사건이다.

24. 정당한 기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는 피청구국 정부 구성원이 청구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에 유리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단순한 사실에 청구인이 의거하는 경우(*Bata v. Czech Republic* (dec.), 2008, § 77), 단순히 법률에 명시된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선언, 즉 결국 채택되지 않은 향후 법령에 의거하는 경우(*Zamoyski-Brisson v. Poland* (dec.), 2017, § 78) 또는 청구인의 재정 지원 청구와 관련하여, 관련 국내법이 지급 금액 및 한정된 긴급 자금 분배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충분한 긴급 자금이 가용하다는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경우(*Traina Berto and Alfonsetti v. Italy* (dec.), 2022, §§ 45–46)이다. 마찬가지로, 건축조합을 통해 사인(私人)들에게 불법으로 분배된 국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BCR Banca pentru locuințe S.A. v. Romania* (dec.), 2024, §§ 127–139).

25. 기존 “소유물”과 관련되지 않은 제소에서,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의 정황상 실체적 권리에 대한 권원을 청구인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요건은 재판소의 판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심리되었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76). 예를 들어, 다수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청구권”이 있었는지(*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74), 청구인들은 “복지 혜택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를 입증하였는지(*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1) 또는 해당인들이 “어떤 형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 조건”을 충족하였는지(*Richardson v. the United Kingdom* (dec.), 2012, § 17) 각각 심리하였다.

26. 재판소의 판례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정당한 기대”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진짜 분쟁” 또는 “주장해 볼 만한 청구권”的 존재를 고려하지 않으며, 이는 협약 제 6 조의 민사 영역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판단하는 맥락과는 다르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50 및 52; *Draon v. France* [GC], 2005, § 68).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 개념이 적용되는 청구권의 존재와 제기된 절차에 제 6 조제 1 항의

적용가능성 사이에 상호 연관성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들에게는 국내법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가 없었다는 사실로 이 사건의 정황에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었다. 동시에 재산권의 존재에 대해 심각한 분쟁이 정말로 발생한다면 제 6 조제 1 항의 보장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결론을 배제할 수 없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52; *J.S. and A.S. v. Poland*, 2005, § 51).

27. 요컨대, 소유권이 발생하는 국내법상 근거 요건을 언급한 판례는 표현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 일반적인 취지를 요약하자면 “정당한 기대”로 구성된 “소유물”을 인정받으려면 청구인은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는 *Kopecký v. Slovakia* [GC], 2004 사건 제 52 항에서 언급된 원칙을 적용할 때(청구권 및 판결 채무에 관한 다음 장 참조) 국내법에 따라 충분히 확립된 실질적인 재산권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79).

### c. “소유물”的 여러 유형과 그 외 소유권

#### i. 청구권 및 판결 채무

28. 어떤 청구권을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산”으로 보게 하려면 청구권자는 국내법상 청구권의 근거가 충분함을 증명해야 하며, 그 예로는 이를 확인하는 국내 법원의 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52; *Plechanow v. Poland*, 2009, § 83;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2007, § 94;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5; *Haupt v. Austria* (dec.), 2017, § 47;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2018, § 142; *Grbac v. Croatia*, 2021, § 86). 증명이 되면 비로소 “정당한 기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Draon v. France* [GC], 2005, § 65).

29. 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당한 기대권” 개념은 “자산”에 해당하는 청구권이 국내법으로 취급되는 방식 및 특히 국내 법원의 확립된 판례법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48).

30. 이와는 대조적으로 재판소는 확립된 청구권이라도 예측가능한 입법적 개입으로 인해 성립될 수 없다면 “정당한 기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였다(*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1997, § 69).

31. 조건의 불이행으로 소멸하는 조건부 청구권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에 따른 소유물을 구성하지 않는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 *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2001, § 83; *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69).

32.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판결 채무는 “소유물”을 구성한다(*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1994, § 59; *Burdov v. Russia*, 2002, § 40;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79; *Yuriy Nikolayevich Ivanov v. Ukraine*, 2009, § 45; *Streltsov and other “Novocherkassk military pensioners” cases v. Russia*, 2010, § 58). 반대로 최종 판결이 아니어서 즉시 지급할 수 없는 판결 채무는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유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33. 조건이 차별적인 경우라면 협약 제 14 조와 결합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Zeïbek v. Greece*, 2009, §§ 45–46). 상속 및 상속인 지정 청구권이 대우의 차이와 관련될 경우 “소유물”로 보았다(*Marckx v. Belgium*, 1979, §§ 52–55; *Fabris v. France* [GC], 2013, §§ 52–55).

## ii. 회사 주식, 기타 금융 상품 및 그 외 사업 자산

34.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회사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와 더불어 “소유물”로 볼 수 있다(*Olczak v. Poland* (dec.), 2002, § 60; *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91; *Shesti Mai Engineering OOD and Others v. Bulgaria*, 2011, § 77; *Sebeleva and Others v. Russia*, 2022, § 39). 여기에는 회사 자산에 대한 간접적인 청구권, 즉 회사가 해산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지분권뿐만 아니라 의결권, 회사의 행위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 등 그 외 그에 상응하는 권리도 포함된다(*Company S. and T. v. Sweden*, 위원회 결정, 1986; *Reisner v. Turkey*, 2015, § 45; *Marini v. Albania*, 2007, § 165). *Pintar and Others v. Slovenia*, 2021, § 91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제적 가치가 의심스러운 청구인들의 주식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가정한다 하여도 청구인들의 주식 취소에는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적용한다고 판단하였다.

35. 다만, 일반 원칙을 따르자면 주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조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1995, §§ 65–66; *Olczak v. Poland* (dec.), 2002, § 57); *Lekić v. Slovenia* [GC], 2018, § 111;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24;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37). 그러나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34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성격과 예상되는 효과가 주주의 법적 권리에 직접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단순히 회사 지배구조에서 주주의 지위를 뒤흔들어 회사 내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어지럽히는 것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나 절차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Olczak v. Poland* (dec.), 2002, § 58; 재판소가 청구인인 주주의 피해자 지위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여러 사례를 언급한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31–133; 또한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44–45 참조).

36. 재판소는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조치에서 주주를 피해자 지위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는 일반 원칙에 대한 두 가지 예외 상황을 파악하였다(*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24;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37). 이러한 상황이라면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용어로 “내부에서” 법인격이라는 가림막을 치워버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Lekić v. Slovenia* [GC], 2018, § 111;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38). 즉, 재판소는 회사의 재산을 겨냥한 조치의 결과로 주주가 협약 제 34 조에 따른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37. 첫 번째 예외는 회사와 주주를 구분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보일 만큼 서로 밀접하게 동일시되는 상황이다(*KIPS DOO and Drekalović v. Montenegro*, 2018, § 87; *Fine Doo and Cano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dec.), 2022, § 30). 이는 소규모 또는 가족 소유/운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주주들이 제기한 사건에서 볼 수 있으며, 특히 단독 소유주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조치에 진정을 제기하거나(*Glas Nadezhda EOOD and Anatoliy Elenkov v. Bulgaria*, 2007, § 40;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37), 소규모 협동조합의 모든 주주가 청구인으로 재판소에 제소하는 경우 또는 가족 소유 회사의 한 주주가 협약에 따라 제소한 반면, 나머지 주주들은 이에 대해 적어도 이의는 제기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Ankarcrona v. Sweden* (dec.), 2000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는 이유는 협약 권리 침해의 현실 또는 그러한 침해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주주 간 또는 주주와 이사회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36–137).

38. 두 번째 유형은 재판소가 회사의 고유한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주주가 청구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이며, 회사가 정관에 따라 또는 청산의 경우 청산인을 통해 협약 기관에 협약 기관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증명되는

예외적인 정황의 존재와 관련된다(*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1995, § 66; *Lekić v. Slovenia* [GC], 2018, § 111; *CDI Holding Aktiengesellschaft and Others v. Slovakia* (dec.), 2001, § 4; *Meltex Ltd and Movsesyan v. Armenia*, 2008, § 66; *Veselá and Loyka v. Slovakia* (dec.), 2005; *G.J. v. Luxembourg*, 2000, § 24; *Feldman and Slovyanskyy Bank*, 2017, §§ 28–29; *Vladimirova v. Russia*, 2018, §§ 40–41).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대한 외부 감독 또는 통제 수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유일한 요소로 보는 것은 아니다(*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24, 138–139 및 143).

39.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관리자가 국내에서 또는 스트拉斯부르에서 주요 불만을 제기할 수 없거나 그럴 의지가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진다(*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1995, § 70; *Veselá and Loyka v. Slovakia* (dec.), 2005;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44). 아니면 그 대신에 주주는 정규 관리자의 해임 및 신탁관리인의 임명 같은 사안에 대해 신탁관리인과 주주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주거나, 신탁관리인의 다양한 행위가 주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음을 증명해야 한다(*Credit and Industrial Bank v. the Czech Republic*, 2003, § 51; *Camberrow MM5 AD v. Bulgaria* (dec.), 2004; *Capital Bank AD v. Bulgaria* (dec.), 2005; *International Bank for Commerce and Development AD and Others v. Bulgaria*, 2016, §§ 90–92; *G. J. v. Luxembourg*, §§ 23–24; *Feldman and Slovyanskyy Bank*, 2017, §§ 28–29). 각 사건의 쟁점은 주주들의 상황에 직접적으로(*S.p.r.l. ANCA and Others v. Belgium* (dec.), 1984) 또는 간접적으로(*G. J. v. Luxembourg*, § 24)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주주들은 회사가 정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통해 협약 기관에 제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또는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유력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하며 그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44–145).

40. 재판소는 이러한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사건에서 금융 위기 이후 국가가 은행을 감독하에 둘 때 은행에 대한 규제권을 상실했다고 주주들은 주장했지만, 그들을 회사에 대한 조치의 피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첫째, 개혁은 은행과 은행 내 법정 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청구인 주주들의 권리에 미친 영향은 부수적이고 간접적이었다. 주주들의 의결권이 인위적으로 희석되거나 주식이 완전히 취소된 경우는 없었다. 청구인들의 개별 주식 보유 비율로는 어느 은행도 제한할 수 없는 정도였고, 집단으로 뭉쳐도 그 영향력을 통합할 만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분열되고 약했다(*ibid.*, §§ 154–155). 둘째, 주주의 수가 많고 권한을 완전히 위임받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공적 은행은 청구인들과 “밀접하게 동일시”된다고 판단되지 않았다. 청구인들이 두 은행에서 소유했을지도 모르는 주식의 정확한 비율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ibid.*, § 157). 마지막으로, 은행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집단으로 의결권을 보유한 청구인들은 은행이 자기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할 수 있었으며 개혁과 감독 당국의 결정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은행에 부당한 압력이 있다는 증거도 없었으므로, 은행이 자기 명의로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막은 예외적인 사정은 없었다(*ibid.*, §§ 159–164).

41. 재판소는 또한, 은행 및 그와 유사한 기관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가 해당 경제 시스템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은행 및 그와 유사한 기관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개입 조치를 수용하는 유럽평의회 회원국의 규제 맥락에서의 기준과 재판소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ibid.*, § 167). 그러나 회원국이 은행 부문을 규제하려고 시도할 때 그에 대한 한계는 있다(예를 들어, “은행 사건”的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참조).

42. *Lekić v. Slovenia* [GC], 2018, § 111 사건에서 재판소는 *Agrotexim and Others*, 1995 사건에서 확립된 일반 원칙이 주주들이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기업과

동일시되기를 주장할 때(즉, “내부에서” 경우) 여러 차례 적용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2020, § 138). 그러나 *Agrotexim* 판례의 원칙은 유한책임회사의 법인격이라는 가림막을 그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즉, “외부에서” 경우) 치워버리는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유한책임회사를 단순히 소유주나 경영진의 사기 행위를 위한 걸치레로 세운 경우, 법인격이라는 가림막을 치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이 아니다(*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2013, § 877). 또한 국유 유한책임회사 또는 은행의 채권자가 제소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논란이 된 회사 또는 은행의 채무 변제를 거부하면서 법인격이라는 가림막 뒤에 숨자,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14–15).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기업 자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거나 그 외 방식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였는지와 같은 요소에 의거하였다(*Lekić v. Slovenia* [GC], 2018, § 111).

43. 마지막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자본 시장에서 협상할 수 있고, 한 명의 무기명인으로부터 다른 무기명인에게 양도되며, 여러 요인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채권에도 적용된다(*Mamatás and Others v. Greece*, 2016, § 90 또한 *Pintar and Others v. Slovenia*, 2021, § 92 참조). *Freire Lopes v. Portugal* (dec.), 2023, § 78 사건에서 재판소는 은행이 청구인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합의가 채권(금융 상품)과 유사하다고 판결하였다.

44. 그러나 처음에는 차량을 현물로 받을 권리를 규정하였으나 협약 비준 직후와 그 이후에는 기본법의 대상으로 규정한 “특수 목적” 또는 “상품” 형태의 국채는 재산을 취득할 권리로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Grishchenko v. Russia* (dec.), 2004).

45. 마지막으로, *Pannon Plakát Kft and Others v. Hungary*, 2022, §§ 42 및 44 사건에서 재판소는 도로변 광고 적치물을 다른 유형의 사업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비탄력적이고 가변성이 없는 자산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입법에 따라 이러한 광고 적치물을 철거하여 청구사들은 시장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는 이익을 볼 기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주식의 자본 가치가 감소할 수 있다.

### iii. 전문직의 고객

46.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노력하여 쌓아 올린 고객층이 여러모로 사권(私權)의 성격을 지니고 자산을 구성하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항 전문이 의미하는 “소유물”일 수 있는 사건에서 재산권과 유사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Lederer v. Germany* (dec.), 2006; *Buzescu v. Romania*, 2005, § 81; *Wendenburg and Others v. Germany* (dec.), 2003; *Olbertz v. Germany* (dec.), 1999; *Döring v. Germany* (dec.), 1999; *Iatridis v. Greece* [GC], 1999, § 54; *Van Marle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86, § 41; *Malik v. the United Kingdom*, 2012, § 89; *Rola v. Slovenia*, § 71;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려면 *Könyv-Tár Kft and Others v. Hungary*, 2018, §§ 31–32 참조).

### iv. 허가

47. 사업 운영 허가는 소유물을 구성하고, 허가 취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장하는 권리에 개입한다(*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62–63; *Bimer S.A. v. Moldova*, 2007, § 49; *Rosenzweig and Bonded Warehouses Ltd. v. Poland*, 2005, § 49; *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130; *Tre Traktörer Aktiebolag v. Sweden*, 1989, § 53; *Vékony v. Hungary*, 2015, § 29; *Fredin v. Sweden (no. 1)*, 1991, § 40; *Malik v. the United Kingdom*, 2012, § 90; *NIT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2, § 235).

48. 취소되면 은행이 강제 청산에 들어가는 은행 운영 허가는 소유물로 보았다(*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130).

49.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평소에 양식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홍합 종자 채취 허가는 “소유물”로 보고 홍합 종자 채취의 일시적 금지는 그러한 허가에 제한을 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2018, § 89).

50. 나아가 전국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을 허가할 때 주파수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허가는 실체가 박탈된 것이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77).

51. 마지막으로, *Eólica de S. Julião, Lda v. Portugal* (dec.), 2024, §§ 94–95 사건에서 재판소는 풍력 터빈 운영 허가는 소음 영향 연구를 제출한다는 조건부라고 판단하였고, 연구는 제출되지 않았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청구사에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이 없다.

## v. 미래 소득

52.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Denisov v. Ukraine* [GC], 2018, § 137). 미래의 소득은 이미 획득되었거나 미래 소득에 대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소유물”을 구성한다(*Ian Edgar (Liverpool)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2000; *Wendenburg and Others v. Germany* (dec.), 2003; *Levänen and Others v. Finland* (dec.), 2006;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4; *Denisov v. Ukraine* [GC], 2018, § 137; *Juszczyzyn Poland*, 2022, § 344; *Gyulumyan and Others v. Armenia* (dec.), 2023, § 101).

53. 반대로, 고정된 소득이나 보장된 매출이 없는 자유직의 사업량은 경제생활의 불확실성이 좌우하므로 “소유물”을 구성하지 않는다(*Greek Federation of Customs Officers, Gialouris and Others v. Greece*, 위원회 결정, 1995).

## vi. 지식재산권

54.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지식재산권 자체에도 적용된다(*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72).

55. 상표 등록 신청은 상표가 등록되기 전에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78) 이미 등록된 상표는 말할 것도 없고(*Kamoy Radyo Televizyon Yayincilik ve Organizasyon A.S. v. Turkey*, 2019, § 37), 특허(*Smith Kline and French Laboratories Ltd v. the Netherlands* (dec.), 1990; *Lenzing AG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98; *Tokel v. Turkey*, 2021, § 56) 및 저작권(*Melnichuk v. Ukraine* (dec.), 2005)에도 적용된다. 저작권자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보호를 받는다(*Neij and Sunde Kolmisoppi v. Sweden* (dec.), 2013; *SIA AKKA/LAA v. Latvia*, 2016, § 41). 소설 번역 출판권(*SC Editura Orizonturi SRL v. Romania*, 2008, § 70; *Safarov v. Azerbaijan*, 2022, § 30; *Korotyuk v. Ukraine*, 2023, § 33), 음악 작품 및 역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에도 이 조항을 적용한다(*SIA AKKA/LAA v. Latvia*, 2016, § 55).

## vii. 부동산 임대차 및 주거권

56. 재판소는 일부 사건에서 임대차 계약을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소유권으로 보았다(*Stretch v. the United Kingdom*, 2003, §§ 32–35; *Bruncrona v. Finland*, 2004, § 79;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40). *Di Marco v. Italy*, 2011, §§ 48–53 사건에서 재판소는 토지 사용 및 그에 따른 상업

활동 같은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구성할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57. 그러나 청구인이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누릴 뿐 취득할 권리가 아니라는 국내 판결에 따라 공공 임대차(프랑스어: “bail social”)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는 그 성격상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소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Tchokontio Happi v. France*, 2015, § 60).

58. 주택 분야에서는 핵심 질문이 제 1 의정서 제 1 조 적용 여부인 경우가 더러 있다.

59. 위원회 사건인 *S. v. the United Kingdom* (dec.), 1986 사건에서 청구인은 지방 당국이 소유한 주택 세입자인 여성과 수년간 동성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청구인 자신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 또는 그 외 법적 권리가 없었다. 파트너 사망 후 지방 당국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았다. 위원회는 청구인과 지방 당국 사이에 계약상의 연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법적인 권원 없이 해당 주택에 한동안 거주했다는 사실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60. “소유물”的 존재와 관련하여, *Durini v. Italy*, 2014 사건에서 위원회 결정은 1918년 고인이 된 남편이자 아버지의 선조들이 가족의 성(재단 소유)에 거주할 권리를 장남인 후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한 유언에도 불구하고 해당 권리를 주장한 어머니와 딸들에 대한 것이다. 위원회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성에 거주할 권리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61. 국내 이재민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등록된 부동산 권원이 없더라도 청구인이 한 오두막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것은 그 선의의 성격뿐만 아니라 당국이 주택 부문에서 국내 이재민의 권리를 확인하고 확실한 보호를 보장하는 다양한 법적 행위를 명백히 용인하고 채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상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Saghinadze and Others v. Georgia*, 2010, §§ 104–108).

62. *Hamer v. Belgium*, 2007, § 76 사건에서 논란이 된 건물은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으며 27년간 존재한 후에야 국내 당국이 위반 사실을 기록하였다. 당국은 10년 이상 용인하다가 철거를 명했다. 재판소는 청구인과 청구인 이전에 아버지가 세금을 납부했던 별장을 향유할 청구인의 소유권이 충분히 성립되었고 실체적 이익에 해당할 만큼 종대하여 “소유물”이라고 보았다.

63. 마찬가지로, *Keriman Tekin and Others v. Turkey*, 2016, §§ 40–43 사건에서 재판소는 허가 없이 건축된 주택을 청구인이 그 불법성을 신경 쓰지 않고 일정 기간 향유하였다는 점에서 “소유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64. *Elif Kizil v. Turkey*, 2020, §§ 67–6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 부동산에 대한 권원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후 부동산이 국고로 이전되었는데도 청구인의 권원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았으며, 이후 28년간 소유물을 향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당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용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은 “소유물”에 해당한다.

65. *Valle Pierimpiè Società Agricola S.P.A. v. Italy*, 2014, §§ 47–51 사건에서 베네치아 지방의 석호에 위치한 어업 생산 시설과 관련하여, 청구사는 공증인이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한 부동산에 대해 공식적인 권원이 있었다. 이는 15세기부터 이어진, 개인에게 어업 유역에 대한 권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점유와 사용을 용인하는 관행에 입각하여 정당한 기대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발레 피에림피에(Valle Pierimpiè)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고,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소유자로서 행동하였다. 그곳은 회사의 활동 기반이었으며, 거기에서 얻은 이익은 회사의 주요 수입원이었고, 그 재산이 공공 해양 영역에 편입되기 전까지 회사는 해당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사에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실체적인 이익에 대한 권원을 부여한다고 판결하였다.

66. 나아가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거용 주택과 토지 “사용권”은 일시적이든 무기한이든 상관없이 실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는 강력하고 보호받은 권리이므로 “소유물”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147). 이는 특히 건물이 지어진 필지에 대한 권원이 건물 자체에 대한 권원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소비에트 이후의 맥락과 관련되어 있다(*Maharramov v. Azerbaijan*, 2017, § 53). 소비에트 법제에서 시민은 주거용 주택을 소유할 권리는 있었지만,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없는 대신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보았다(*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146; 또한, 기본 토지 및 인접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경우인 *Tkachenko v. Russia*, 2018, § 7 참조). 따라서 “사용권”은 개인이 토지에 대해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원이었다. 이후 부동산 개혁이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청구인들의 재산권 유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67. 적절한 권원이 없는 경우, 청구인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외의 문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Maharramov v. Azerbaijan*, 2017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물이 지어진 필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증명하여 청구인의 가게가 지어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의 토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향후 해당 토지를 소유하게 될 가능성성이 있으므로 적어도 “합법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하였다(§ 54). 반면, *Arsimikov and Arsemikov v. Russia*, 2020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응하는 토지에 대한 청구권을 입증할 수 없었다(§ 49) (또한 “국내외 무력 분쟁 상황에서 재산 파괴” 참조).

68. 나아가, 공무원을 위한 주택 지원도 정확한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더라도 해당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한 “소유물”을 구성한다(*Nechayeva v. Russia*, 2020, §§ 40–41). 재판소는 예산상의 이유로 러시아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러한 가능성성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낮아진 금액을 수용한 것은 유효할 수 없다고도 판결하였다(*ibid.*, § 48).

69. 마지막으로 *Brazauskienė v. Lithuania* (dec.), 2024, §§ 122–127 및 135 사건에서 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과 입법적 개입을 무효로 하자, 전직 대통령 타계 후 아내가 관저를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viii. 사회 보장 혜택/연금

70. 협약 기구의 이전 판례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의무적 기여는 납부한 기여금 수준과 지급되는 급여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권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았다(*Müller v. Austria*, 위원회 결정, 1975, p. 49).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청구인은 언제라도 사회보험 기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이 없었다(*G. v. Austria*, 1984, 위원회 결정, p. 86; *Kleine Staarman v. the Netherlands*, 위원회 결정, 1985, p. 166).

71. 그러나 이후 다수의 판례에서 재판소는 비기여 방식의 복지 혜택도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상 소유물을 구성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였다(*Bucheň v. the Czech Republic*, 2002, § 46; *Koua Poirrez v. France*, 2003, § 37; *Wessels-Bergervoet v. the Netherlands* (dec.), 2000; *Van den Bouwhuijsen and Schuring v. the Netherlands* (dec.), 2003).

72. 사회 보험 혜택에 이 조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은 궁극적으로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47–56 사건에서 명확해졌다. 재판소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권리로서 발생하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고안된 광범위한 사회 보장 혜택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혜택의 재원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되는데, 어느 특정한 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충당하거나 실업 수당 청구자의 납입 기록에 의지하기도 하지만 다수는 법으로 정의된 신분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과세에서 가져온다.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과 대부분의 복지 제도 하에서 급여의 상호 연동성을 고려할

때, 어떤 구체적인 기금에 대한 기여금으로 조달된 혜택만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는 것은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다. 더욱이 일반 과세에서 지급되는 혜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제도 하에서 다수의 청구권자가 납세로 재원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협약 제 8 조의 범위에 속하는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50–65 참조).

73.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다수의 개인이 생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 보장 및 복지 혜택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다수의 국내 법제는 이러한 개인에게 확실성과 안정성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격 조건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혜택 수령을 당연한 권리로 규정한다. 개인이 국내법에 따라 복지 혜택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적용되도록 하여 해당 이익의 중요성을 반영해야 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1; *Moskal v. Poland*, 2009, § 39; *Andrejeva v. Latvia* [GC], 2009, § 77).

74.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체약국이 어떤 형태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지 결정하거나 그러한 제도에 따라 제공할 혜택의 종류 또는 액수를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Sukhanov and Ilchenko v. Ukraine*, 2014, § 36; *Kolesnyk v. Ukraine* (dec.), 2014, §§ 89 및 91; *Fakas v. Ukraine* (dec.), 2014, §§ 34, 37–43, 48; *Fedulov v. Russia*, 2019, § 66). 그러나 체약국이 기여금 사전 납부가 조건이든 아니든 간에 복지 혜택을 권리로써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을 시행 중인 경우, 그 법률은 요건을 지키는 자를 위해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2005, § 54).

75. 노령 연금 지급을 규정하는 입법은 기여금이 그 조건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위해 이 조항의 범위에 속하는 소유권을 발생시킨다(*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64).

76. 해당인이 특정 형태의 혜택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해 국내법에 규정된 법정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Bellet, Huertas and Vialatte v. France* (dec.) 1999, § 5) 지키지 않게 된 경우, 청구인이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기 전에 그 조건이 변했다면(*Richardson v. the United Kingdom* (dec.), 2012, § 17),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권리에 대한 개입이 아니다(*Rasmussen v. Poland*, 2009, § 71; *P.C. v. Ireland*, 2022, §§ 46–47). 연금의 종단 또는 축소가 청구인 자신의 사정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률 또는 법률 시행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면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권리에 대한 개입이라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86; 또한, 전 대통령 탄핵 후 아내에게 국가 연금 지급을 거부한 *Brazauskienė v. Lithuania* (dec.), 2024, §§ 107–112 참조). 나아가,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청구인이 당국의 실수로 행해진 행정 결정에 의거하여 선의로 수령한 혜택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Čakarević v. Croatia*, 2018, §§ 54–65).

77. *Gaygusuz v. Austria*, 1996, § 41 사건에서 재판소는 실업 보험 기금에 대한 기여금 납부와 관련된 사회 혜택인 긴급 지원에 대한 권리가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한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에 따른 금전적 권리라고 판단하였다. *Klein v. Austria*, 2011, § 57 사건에서 재판소는 변호사 연금 제도에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한 자격은 기여금 납부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된 경우 해당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과 국내법에 따라 연금 기금에 기여금을 내면 재산권을 창출할 수 있다(*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 39; *Apostolakis v. Greece*, 2009, §§ 28 및 35; *Bellet, Huertas and Vialatte v. France* (dec.), 1999; *Skórkiewicz v. Poland* (dec.), 1999).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회 복지 사건에 관한 장 참조.

78. *Fedulov v. Russia*, 2019, §§ 70–72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장애인이 무료 의약품(항암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정당한 기대”에 해당하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79. *P.C. v. Ireland*, 2022, § 50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수감되어 연금 수령 자격이 법적으로 박탈된 상태에서 원천 징수된 연금은 “소유물”로 볼 수 없으며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80. 마지막으로 *Petrescu and Others v. Romania* (dec.), 2023, §§ 69–72 사건에서 상반된 판례에 대한 불만의 맥락에서 청구인들은 국내 법원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특별한 조건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권리를 박탈당했고, 이는 정년 및 연금 권리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는 후자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 없으며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 ix. 국내외 무력 충돌 상황에서 재산의 파괴 – 필요한 증거 수준

81. 청구인들이 무력 충돌이라는 전후 관계에서 주택이 파괴되자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의 원인이 된 공격 이후 타운 행정부가 발급한 주택 목록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준으로 소유권 주장을 수용하였다(*Kerimova and Others v. Russia*, 2011, § 293). *Damayev v. Russia*, 2012, §§ 108–111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거 파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는 청구인은 적어도 문제의 재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부동산 소유권 또는 거주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예를 들어 토지 또는 부동산 권원, 토지 등기부 또는 세금 대장 발췌본, 지방 행정부 문서, 설계도, 사진과 유지보수 영수증, 우편배달 증명, 증인의 진술 또는 그 외 관련 증거와 같은 문서를 수용하였다(*Prokopovich v. Russia*, 2004, § 37; *Elsanova v. Russia* (dec.), 2005). 또한 “기술–재산 문서”라는 이론바 기술 여권(technical passport)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권원의 간접적인 증거를 구성한다고 보았다(*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140–141).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부동산 권원 또는 거주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재산이 파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재산이 존재하고 청구인의 “소유물”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재판소가 납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다(*Sargsyan v. Azerbaijan* [GC], 2015, § 183; *Lisnyy and Others v. Ukraine and Russia* (dec.), 2016, §§ 26–27)(또한 위의 부동산 임대차 및 주거권에 관한 장의 하위 항목 참조).

82. 튀르키예 남동부 국가비상사태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을 강제 퇴거하고 수년간 귀환을 거부한 *Doğan and Others v. Turkey*, 2004 사건에서 피청구국 정부는 청구인 중 일부가 마을에 소유 재산이 있다는 권원 증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권원 증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에게 국내법상 재산권이 있는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오히려 청구인들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제 1 의정서 제 1 조 범위에 있는 “소유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 재판소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청구인들 모두 1994년까지 보이다쉬(Boydış) 마을에 거주했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부동산 등기는 없어도 선조의 땅에 지은 자택이 있거나 선조가 소유한 주택에 살면서 그곳에 속한 토지를 경작하였고 목초지, 방목지, 임야 등 마을 공유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권리가 있으며, 목축과 벌목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모든 경제적 자원과 이로부터 청구인들이 얻은 수익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상 “소유물”로 인정된다(*ibid.*, § 139).

83. 요약하면, 청구인들은 무력분쟁이라는 전후 관계에서 재산 파괴에 대해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제기한 청구를 뒷받침하는 일응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 x. 인간 배아

84.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경제적 및 금전적 범위를 고려할 때, 인간 배아는 해당 조항이 의미하는 “소유물”로 귀결될 수 없다(*Parrillo v. Italy* [GC], 2015, § 215).

## B. 평화로운 재산 향유권에 대한 개입

### 1. “3 대 규칙” 접근법

85. 재판소는 일단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사건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청구가 제기된 상황의 실체적 분석에 나선다.

86. 제 1 의정서 제 1 조에는 세 가지 별개의 규칙이 있다. 제 1 항 전문에 명시된 제 1 규칙은 일반적인 성격을 띠며 평화로운 재산 향유 원칙을 명시한다. 제 2 규칙은 제 1 항 후문에 있으며 “소유물”的 박탈만을 취급하고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 제 3 규칙은 제 2 항에 있으며, 공동의 이익에 따라 재산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는 체약국에 있음을 인정한다(*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1; *latridis v. Greece* [GC], 1999, § 55; *J.A. Pye (Oxford) Ltd and J.A. Pye (Oxford) Land Ltd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52;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2;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98; *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44;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34; 및 *Vistiņš and Perepalkins v. Latvia* [GC], 2012, § 93).

87. 3대 규칙이 별개의 규칙이라고 해서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제 2 규칙과 제 3 규칙은 평화로운 재산 향유권에 개입하는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제 1 규칙에 명시된 일반 원칙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GC], 2000, § 50; *Bruncrona v. Finland*, 2004, § 65;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62)(자세한 내용은 재산 박탈, 사용 제한 또는 일반 규칙에 관한 하위 항목 참조).

88.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양립할 수 있는 개입으로 간주하려면 적법성 원칙을 준수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합리적으로 비례하는 수단으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Beyeler v. Italy* [GC], 2000, §§ 108–114).

89. 이 접근법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심리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다(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장 참조). 다수의 연속된 단계를 밟아 나가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결하게 된다. 먼저, 평화롭게 소유물을 향유할 청구인의 권리에 개입하였는가? 개입하였다면 재산의 박탈에 해당하는 개입인가? 침해가 아니라면, 해당 재산 사용이 제한되었는가? 청구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 조치가 재산의 박탈 또는 재산 사용의 제한까지는 아니라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재판소가 “소유물”的 평화로운 향유 존중이라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90.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을 따르지 않은 개입이었거나 공익 또는 정당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된 재판소는 그 이유만으로도 협약 위반을 인정하고 청구가 제기된 조치의 비례성 분석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Simonyan v. Armenia*, 2016, §§ 25–26; *Vijatović v. Croatia*, 2016, § 58; *Gubihev v. Russia*, 2011, § 83; *Dimitrovi v. Bulgaria*, 2015, §§ 52–56; 및 *Bock and Palade v. Romania*, 2007, §§ 58–65; *Kasilov v. Russia*, 2021, § 52) (자세한 내용은 적법성 원칙과 공공 또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부분 참조).

91. 다만,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재판소가 이러한 질문 중 하나에 답하지 않은 채 비례성 영역 하에서 사건 심리를 계속하는 사건도 있다(*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67 및 *Ünsped Paket Servisi SaN. Ve TiC. A.Ş. v. Bulgaria*, 2015, § 43) (자세한 내용은 비례성 및 관련 사안(공정한 균형, 보상, 재량)에 관한 하위 항목 참조).

92. 재판소는 청구인의 권리에 개입하였다는 판단이 서면 청구가 제기된 개입이 각 사건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심리한다. 청구인의 소유권이 국내법 규정에 따라

소멸되었다면 제 1 항 후문에 따라, 즉 “소유물” 박탈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국내법상의 자격 요건과 관계없이 개인 권리의 실체가 소멸된 다양한 사건이 “소유물” 박탈에 속한다.

93. 수용(收用)보다 침해의 정도가 덜한 조치는 재판소가 “재산의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건에 따라 재산의 사용 제한으로 인정되는 조치와 재산 박탈에 해당하는 조치를 구분하는 선은 아주 미묘하다. 재산의 사용 제한과 재판소가 “소유물”的 평화로운 향유라는 제 1 일반 원칙하에 심리하는 조치 간의 차이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침해가 덜한 조치일수록 사용 제한에 따른 분석보다 제 1 일반 원칙에 따른 분석에 더 적합하다.

94. 유사한 조치라도 재판소가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2–64 사건에서는 상당 기간 공사 금지와 결합된 수용(收用) 명령이 재산의 사용 제한으로 분석되었고, *Phocas v. France*, 1996, § 52; *Iatridis v. Greece* [GC], 1999, § 55; *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1994, § 40; *Pialopoulos and Others v. Greece*, 2001, § 53 사건에서는 유사한 조치를 일반 원칙하에 심리). 마찬가지로 *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1995, § 34 사건에서는 입법적 침해로 보상 청구권이 소멸되자 재산 박탈로 심리되었지만, *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1994 사건에서 재판소는 같은 종류의 조치를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규칙하에 심리하였다.

95. 사건에 따라 한 가지 또는 일련의 조치를 재판소가 재산 박탈 또는 사용 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본질적으로 기존 판례법에서 인정하는 조치와 일치시키는 것이 쉽지 않거나 일련의 조치가 국내법의 여러 분야에 속하는 이질적인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건이라면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항 전문의 일반 원칙하에 사건의 정황을 분석하게 된다. 이는 특히 하나의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조치/결정이 합쳐져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적용된다(*Dok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10, §§ 55–56 – 법적으로 유효한 아파트 구매계약으로,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되었지만 아파트를 돌려받을 수 없는 사건 및 *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996, § 85 – 공식적인 수용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 처분 능력 축소와 수용 여부를 심사숙고했다는 사실로 인해 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졌지만, 청구인들은 계속해서 토지 경작). 동일한 재산에 대해 보상금 결정 목적인지 상속세 목적인지에 따라 수용 재산의 시가 평가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이 권리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수용과 과세를 별도로 심리한 결과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조치의 결합 효과를 제 1 규칙에 따라 심리한 결과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Jokela v. Finland*, 2002, §§ 61–65).

96. 이러한 사건에서는 그 조치의 법적 효력이 모두 동일하지 않고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소유물”的 평화로운 향유를 존중한다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996, §§ 84–85).

97. 조치를 사용 제한 또는 일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이러한 어려움은 재판소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어느 부분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뚜렷이 밝히지 않거나(*Papamichalopoulos v. Greece*, 1993, § 46)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일부러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Lavrechov v. the Czech Republic*, 2013, § 43; *Denisova and Moiseyeva v. Russia*, 2010, § 55; *Ünsped Paket Servisi SaN. Ve TiC. A.Ş. v. Bulgaria*, 2015, §§ 39–40).

98. 어떤 경우에도 재판소는 해당 개입의 분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사건에서 공익에 부합해야 하며(아래 공익을 위한 개입을 다룬 장 참조), 법에 의해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고(아래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개입을 다룬 장 참조) 공정한 균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아래 비례성 및 관련 사안을 다룬 장 참조).

99. 사적 당사자 간 민사법 분쟁에 관한 절차는 그 자체로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다(*Ruiz Mateo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8,

pp. 268 및 275; *Gustafsson v. Sweden* [GC], 1996, § 60; *Skowroński v. Poland* (dec.), 2001; *Kranz v. Poland* (dec.), 2002; *Eskelinne v. Finland* (dec.), 2004; *Tormala v. Finland* (dec.), 2004;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2019, § 310). 국가가 사법제도를 통해 민사법 분쟁의 판단을 위한 장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재산권에 국가가 개입한다고 할 수 없으며(*Kuchař and Štis v. the Czech Republic*, 위원회 결정, 1998), 이는 비록 사법부 판결의 실체적 결과가 특정 “소유물”的 상실을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에 따르면 적어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실효적으로 주장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장을 포함한 최소한의 입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국가는 법의 지배 보호 및 자의성 방지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게 된다(*Kotov v. Russia* [GC], 2012, § 117).

100. 국내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재판소의 관할권은 제한적이며 국내 법원을 대신하는 것은 재판소의 기능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내 법원의 결정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재판소의 역할이다(*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83). 국가는 법원 결정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거나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위반하는 자의성 또는 명백한 불합리성으로 인한 결함이 있는 경우 또는 타방에게 유리하도록 일방이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재산을 박탈당한 경우에만 그러한 결정이 초래한 손실을 책임질 수 있다(*Bramelid and Malmström v. Sweden*, 위원회 결정, 1982, pp. 82–83; *Dabić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01; *Vulakh and Others v. Russia*, 2012, § 44).

101. 재판소가 민사법원의 판결을 개입으로 간주한다면, 이는 그 집행 방식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정도로 경직된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다(*Milhau v. France*, 2014, §§ 48–53). 이 사건도 청구인이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들였다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구입한 아파트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앗아간 경우로, 재판소는 분쟁의 쟁점과 적용된 실체적 조항에 공법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으며 국가의 규제 권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Gladyshew v. Russia*, 2011, §§ 52–59). 마찬가지로, *Zhidov and Others v. Russia*, 2018, §§ 94–95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적 당사자 간 소송에서 선고된 법원 명령이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개입”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SIA AKKA/LAA v. Latvia*, 2016, §§ 58–59 사건에서는 청구인 단체에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한 저작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소송 판결이 청구인 단체가 음악 방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의 제한하므로 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a. 재산 박탈

102. 청구인의 권리가 법의 운용으로 소멸된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의 진정 사항을 제 2 규칙에 따라, 즉 재산권 박탈로 심리할 것이다.

103. *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1994, §§ 60–61 사건에서 재판소는 지정된 재산의 사용과 소유를 국가에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률 조항에는 문제의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으며 “소유물” 박탈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104. “소유물”的 박탈은 개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공식적인 결정이 없더라도, 공공 당국이 적용한 다양한 조치들이 청구인의 “소유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깊어서 이를 수용(收用)에 준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소유물”的 박탈이 있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단순히 소유권 박탈이나 공식적인 수용(收用)이 있었는지 심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진정이 제기된 상황의 실질을 조사해야 한다. 협약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하므로, 관련 상황이 사실상 수용(收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그 외 여러 당국 중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3; *Vasilescu v. Romania*, 1998, § 51; *Schembri and Others v. Malta*, 2009, § 29; *Brumărescu v. Romania* [GC],

1999, § 76; *Depalle v. France* [GC], 2010, § 78). 실제로 다양한 협약 조항 하에서 재판소의 판례는 외관과 사용된 언어를 넘어 상황의 실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예를 들어 *Apap Bologna v. Malta*, 2016, § 83).

105. 예를 들어, 해군이 청구인들의 토지를 점유하고 해군기지를 건설한 이후 청구인들이 자신의 재산에 접근하거나 매각, 유증, 저당 또는 증여할 수 없게 된 사건에서 상황을 시정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점유한 토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된 것은 공식 수용(收用) 결정이 없더라도 재판소가 보기에 수용일 정도로 사실상의 심각한 결과를 청구인들에게 초래하였다(*Papamichalopoulos v. Greece*, 1993, §§ 44–46).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의 토지가 군사 구역에 편입된 *Sarica and Dilaver v. Turkey*, 2021, § 43 사건에서도 튀르키예 당국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용도를 비가역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 사실상의 수용(收用) 인관행이 인정되어 결국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 행위 없이 국유 재산으로 보게 되었다(또한 *Yavuz Özden v. Turkey*, 2021, §§ 79–80 참조).

106. 제 1 의정서 제 1 조 발효 이전에 몰수된 금화를 계속 보관한 사건으로 의정서 발효 이후 청구인에게 금화 반환을 명령한 판결이 뒤이어 취소된 경우, 재판소는 실질적인 방해도 법적 장애와 마찬가지로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황을 구제하려는 시도가 실패하면서 압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몰수로 간주할 만큼 심각한 결과를 수반하였다(*Vasilescu v. Romania*, 1998, §§ 51–54).

107.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사의 토지에 대해 신속 절차에 따라 점유 명령을 내려 물리적으로 점유한 후 도로 건설 공사를 시작한 사건에서는 후속 판결이 공공 당국의 불법 점유를 소급하여 승인함으로써 청구사가 토지를 원상회복할 가능성을 박탈하였다. 이 판결의 효과는 “소유물” 박탈에 해당한다(*Belvedere Alberghiera S.r.l. v. Italy*, 2000, § 54). *Bagirova and Others v. Azerbaijan*, 2023, §§ 46 및 53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유재산 수용(收用)을 위한 국내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나아가, 댐 건설로 필지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이 부분적으로 상실된 것과 더불어 토지 가치의 40% 및 100%가 손실된 것도 사실상 수용(收用)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Aygun v. Turkey*, 2011, § 39). 건물의 불법 철거에도 비슷한 결론이 도출되었다(*Zammit and Vassallo v. Malta*, 2019, § 54).

108. 재판소가 하나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를 수용(收用)으로 간주한다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해당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할 의무를 수반한다(공정한 균형의 요소로서 재산에 대한 개입에 따른 배상에 관한 하위 항목 참조).

## b. 사용 제한

109. 제 3 규칙에 따라 재판소가 사용 제한으로 인정한 조치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으며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허가 조건의 취소·변경(*Tre Traktörer Aktiebolag v. Sweden*, 1989, § 55; *Rosenzweig and Bonded Warehouses Ltd. v. Poland*, 2005, § 49; *Bimer S.A. v. Moldova*, 2007, §§ 49 및 51; *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65;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86; *NIT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2022, § 247; *Pařízek v. the Czech Republic*, 2023, § 41), 도로 광고 활동(*Pannon Plakát Kft and Others v. Hungary*, 2022 § 46), 교과서 시장에 대한 국가 독점권 도입(*Könyv-Tár Kft and Others v. Hungary*, 2018, §§ 43 및 59), 임대료 통제 체계(*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89, § 44; *Hutten-Czapska v. Poland* [GC], 2005, § 160; *Anthony Aquilina v. Malta*, 2014, § 54; *Bittó and Others v. Slovakia*, 2014, § 101), 임대료 납부를 중단한 임차인에 대한 회수 명령 집행의 법적 정지(*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46),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 체결 시 자유롭게 동의한 동일 조건으로 임대료를 계속 받고 토지에 딸린 임대차 계약에 따라 토지를 자유롭게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 및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무기한 연장하는 것에 법이 부과한 제한(*Lindheim and Others v. Norway*, 2012, § 75–78),

토지에 대한 특정 독점권 상실(*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74 – 청구인들의 토지에서 사냥을 용인할 의무; *Herrmann v. Germany* [GC], 2012, § 72), 자동차 공식 등록 거부(*Yaroslavtsev v. Russia*, 2004, § 32; *Sildedzis v. Poland*, 2005, § 45), 은행 계좌 동결(*Uzan and Others v. Turkey*, 2019, § 194;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66), 토지 소유자에게 적극적 의무 부과(예: 재식림 – *Denev v. Sweden*, 위원회 결정, 1989) 또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수적인 의무와 더불어 임야라는 법적 자격 부여(*Ansay and Others v. Turkey* (dec.), 2006)가 있다.

110. 불법 건축물 철거는 일반적으로 재산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2016, § 69). *Saliba v. Malta*, 2005, § 46 사건에서 재판소는 전적으로 불법인 건축물의 철거 명령은 그 효과가 법적 요건을 지키는 범위 내로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건에서 철거 조치는 제재에 해당하므로 형사 유죄판결은 없다고 해도 제 6 조 형사 책임에 해당한다(*Hamer v. Belgium*, 2007, §§ 59–60). 마찬가지로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dec.), 2007 사건에서 재판소는 불법으로 개발된 토지를 몰수한 후 이미 세워진 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제 7 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111. 물건과 수익의 몰수는, “소유물” 박탈을 수반한다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2 항에 따라 고려되는 재산의 사용 제한으로 간주된다(*AGOSI v. the United Kingdom*, 1986, § 51; *Raimondo v. Italy*, 1994, § 29; *Honecker and Others v. Germany* (dec.), 2001; *Riela and Others v. Italy* (dec.), 2001; *Imeri v. Croatia*, 2021, § 66). 따라서 몰수 조치는 재산의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소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다(*Air Canada v. the United Kingdom*, 1995, § 34; *Silickiené v. Lithuania*, 2012, § 62; *Aktiva DOO v. Serbia*, 2021, § 78). *S.A. Bio d’Ardennes v. Belgium*, 2019, §§ 47–49 사건에서 여러 동물 보건 규정 위반 때문에 브루셀라병에 걸린 다수의 동물을 강제 도살한 행위는 사용 제한에 해당한다.

112. 그러나 범죄 도구 몰수가 제 3 자의 재산과 관련이 있고 영구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소는 그러한 개입을 소유물 박탈로 분석하였다(*Andono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5, § 36 사건에서 제 3 자가 이주민 밀입국에 사용한 자동차 영구 몰수; *B.K.M. Lojistik Tasimacilik Ticaret Limited Sirketi v. Slovenia*, 2017, § 48 사건에서 제 3 자가 마약 밀매에 사용한 회사 트럭 영구 몰수; *Yaşar v. Romania*, 2019, § 49 사건에서 제 3 자가 불법 어업에 사용한 청구인의 선박 영구 몰수). *Aktiva DOO v. Serbia*, 2021, § 78 사건에서 재판소는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답하지 않기로 한 다음 청구사가 합법적이지만 기록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한 물품의 몰수가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다.

113. 형사 유죄판결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과되는 예방적 몰수 조치라도 그 자체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관련 절차를 통해 당국에 자신의 주장을 펼칠 합리적인 기회가 있는 경우, 특히 법원이 단순한 의심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범죄 조직 소속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의 재산을 불법 활동의 수익금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하지는 않는다(*Arcuri and Others v. Italy* (dec.), 2001).

114. 나아가, 청구인의 서버가 제 3 자에 대한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약 7 개월 반 동안 보관되었고 청구인이 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던 것이라면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무질서 또는 범죄 예방 및 타인의 권리 보호)과 청구인의 재산권 사이에 필요한 공정한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Pendov v. Bulgaria*, 2020, §§ 44–51 및 63). 재판소는 또한 당국이 관련 정보를 복사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환할 수도 있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115. 마지막으로, 법원 수수료 납부 의무 및 이에 상응하는 규정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후단에 속한다. 계쟁 중인 당사자에게 법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법 제도 재정 조달 및 공공 수입 증대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한다(*Perdigão v. Portugal* [GC], 2010, § 61). 그러나 *Perdigão* 사건 이후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타방에게 비용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항 전문에 규정된 일반 규칙에 속하는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에 개입한 것으로 심리하였다. *Cindrić and Bešlić v. Croatia*, 2016, § 92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 제도와 관련된 비용을 승소한 당사자 때문에 발생하고 “패소자부담” 규칙에 따라 치러야 하는 비용과 구분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후단이 의미하는 “기여금” 개념에는 전자만 포함된다고 하였다(*National Movement Ekoglasnost v. Bulgaria*, 2020, §§ 69–71) (또한 “제 6 조”에서도 참조).

### c. 일반 규칙

116. 제 1 규칙은 일반적인 성격이다. 재산권에 대한 개입을 제 2 규칙 또는 제 3 규칙에 따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바 포괄(catch-all) 공식이라는 제 1 규칙을 적용한다.

117.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4–65 사건에서 재판소는 수용(收用) 허가를 “소유물” 박탈로 이어지는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판결하고 제 1 항의 전문에 따라 심리하였다.

118. *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1994, §§ 62 및 68 사건에서 재판소는 중재 판정이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입법부의 개입을 일반 원칙에 따라 심리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BTS Holding, a.s. v. Slovakia*, 2022, §§ 64 및 71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중재 판정 집행 거부를 일반 원칙에 따라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의거한 근거 미제시 및/또는 국내법과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규정이 허용하는 외국 중재판정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보고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119. *Loizidou v. Turkey*, 1996, §§ 61–64 사건은 청구인이 북사이프러스 내 자기 재산에 접근하는 문제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동할 자유에 대한 권리에 국한되지 않으며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변함없이 해당 토지의 법적 소유자였다. 튀르키예군의 지속적인 접근 거부는 개입으로 간주되어 일반 규칙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권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120. 토지 통합 절차(*Prötsch v. Austria*, 1996, § 42), 도시 계획 정책(*Phocas v. France*, 1996, § 52), 행정적 퇴거(*Iatridis v. Greece* [GC], 1999, § 55), 토지 이용 계획 승인(*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1994, § 40) 및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계획 조치(건축 동결)(*Pialopoulos and Others v. Greece*, 2001, § 56) 등은 일반 원칙에 따라 심리되었다. 청구인의 조달 계약 무효로 인한 재산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소가 정확한 범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일반 원칙에 비추어 유사한 방식으로 심리되었다(*Kurban v. Turkey*, 2020, §§ 74–75).

121. *Zaklan v. Croatia*, 2021, § 90 사건은 1991년 크로아티아가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의 일부였던 시절 유고슬라비아 당국이 압수한 외화를 청구인이 환수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장기(30년 이상) 자금 환수 불능이 일반 원칙에 비추어 심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위의 b) 사용 제한하에서 물건과 수익의 몰수와 비교).

## 2. 적법성 원칙

122.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권리에 개입하려면 적법성 요건을 지켜야 한다(*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95; *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112). “소유물”의 평화로운 향유권에 대한 개입이라면 모두 관련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라는 문구는 이 조항이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개입에 관한 제 8 조의 “법에 따라” 또는 협약 제 9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가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개입에 관한 “법에 규정된”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

123. 적법성 원칙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에서 최우선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제 1 항 후문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소유물”的 박탈을 승인하고, 제 2 항은 국가가 “법률”을 집행하여 재산의 사용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또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인 법의 지배는 협약의 모든 조항에 내재되어 있다(*Lekić v. Slovenia*, 2018, § 94; *Iatridis v. Greece* [GC], 1999, § 58; *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GC], 2000, § 79;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47; *Kurban v. Turkey*, 2020, § 76).

124. 국내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적법성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 또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춰야 하며 즉, 법의 지배와 양립하고 자의성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자의성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East West Alliance Limited v. Ukraine*, 2014, § 167; *Ünsped Paket Servisi SaN. Ve TiC. A.Ş. v. Bulgaria*, 2015, § 37;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96; *Yel and Others v. Turkey*, 2021, § 89).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서 말하는 “법”이란 협약이 다른 곳에서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개념, 즉 성문법과 판례가 포함된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Špaček, s.r.o., v. the Czech Republic*, 1999, § 54; *Bežanić and Baškarad v. Croatia*, 2022, § 62; 과세 문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과세 관련 하위 항목 참조). 판례에 차이가 있으면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지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53; *N.M. and Others v. France*, 2022, § 59).

125. 적법성 원칙은 또한 국내법의 준거 조항이 접근할 수 있고 명확하며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Lekić v. Slovenia*, 2018, § 95; *Beyeler v. Italy* [GC], 2000, § 109; *Hentrich v. France*, 1994, § 42; *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110;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3;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2012, § 187; *Hutten-Czapska v. Poland* [GC], 2005, § 163;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96–97; *Imeri v. Croatia*, 2021, § 69;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67; *Godlevskaya v. Russia*, 2021, §§ 50 및 61–63; *Taganrog LRO and Others v. Russia*, 2022, §§ 281–282).

126. 법의 접근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이라는 용어는 형식적 의미가 아닌 실체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권리 행사와 관련된 어떤 규정을 시민과 법인을 대체로 구속하는 입법·규제 수단 공포를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형식의 관보에 게재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일반에 알렸다고 재판소가 납득한다면 해당 규정은 법으로 볼 수 있다(*Špaček, s.r.o., v. the Czech Republic*, 1999, §§ 57–60).

127. “법에 의하여 규정된”이라는 표현에서 도출되는 또 다른 요건은 예측가능성이다. 관련 법은 주어진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자신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경직성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결과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가능할 필요는 없다(*Centro Europa 7 S.r.1. and Di Stefano v. Italy* [GC], § 141). 따라서 다수의 법률이 다소 모호하며 그 해석과 적용은 실무의 문제이다(*ibid.*, § 141).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대비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 법률에 요구하는 명확성의 정도는 해당 법률의 내용, 다루고자 하는 분야, 그 법률이 적용되는 대상의 수와 지위에 달려 있다(*ibid.*, § 142).

128. 어떤 행동이 수반하는 결과를 심사하기 위해 해당인이 적절한 법률 조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법률은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직업 또는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직업을 수행할 때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데 익숙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그러한 활동이 수반하는 위험을 평가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Lekić v. Slovenia* [GC], 2018, § 97).

129. 재판소는 법령의 적용 또는 해석이 예상을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자의적이라고 할 만한 경우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Lelas v. Croatia*, 2010 사건에서 크로아티아 국방부에 고용된 군인인 청구인은 받을 수 있는 특별 수당 지급이 지연되자 진정을 제기하여 지휘관에게 수당 미지급의 이유를 문의하였다. 지휘관은 상관에게 문의하였고, 상관은 크로아티아군 총참모부에 연락하여 마침내 청구인의 수당 청구에 이견이 없으며 자금만 확보되면 지급된다고 알려 주었다. 하지만 수당이 계속 지급되지 않자, 청구인은 사법 절차를 시작하였다. 국내 법원은 법정 출소 기한이 지나 소권을 상실했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국내 법원의 주장에 따르면 법정 출소 기한을 종단할 수 있는 채무 인정은 오직 국방부 중앙 재정부서장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법 조항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청구에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자금만 할당되면 지급될 것이라는 상관의 발언이 법정 출소 기간이 흐르지 않게 하는 채무 승인이 되리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청구인에게 국내 법원이 관련 국내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방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ibid.*, §§ 77–78).

130. *Nešić v. Montenegro*, 2020, §§ 52–53 사건에서 재판소는 연안 토지 수용(收用)에 관한 입법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불법 점유와 국가의 보상금 미지급이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맥락에서 수용(收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였다. 청구인은 해안가에 있는 두 필지에 대한 권원을 법에 따라 상실하였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수용(收用)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국가의 권원을 공식화하고 보상을 결정하려면 추가 절차가 필요했다. 유관 국내법에는 토지를 수용(收用)해야 할 때와 만약 수용해야 한다면 형식적인 수용 절차가의무인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없었다. 심지어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용(收用)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위배되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131. 재판소는 행정 집행을 위해 개시된 절차가 2002년 최종 배상 명령을 취소하는 결과를 낳아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를 깨고 정당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재산의 소유권을 얻을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한 *Naskov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3, §§ 77–78 사건에서 원상회복 절차의 맥락에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재산상 이익에 간섭한 것은 적법성 원칙을 어겼으며, 협약 원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132. 예측가능성 요건은 자의성 부재 및 절차적 보호조치 요건과 얹혀 있기도 한다. 따라서 법적 규범이 “예측가능”하려면 공공 당국의 자의적 개입에 대한 보호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소유물의 평화로운 향유에 개입하려면 해당 조항이 보장하는 권리의 방해하는 조치에 실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개인 또는 단체가 책임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기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보장이 따라와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때는 적용 가능한 사법 및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Lekić v. Slovenia* [GC], 2018, § 95; *Jokela v. Finland*, 2002, § 45; *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134 및 *Stolyarova v. Russia*, 2015, § 43;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82; *Dănoiu and Others v. Romania*, 2022, §§ 69–72).

133. *Markus v. Latvia*, 2020, § 75 사건에서 재판소는 논란이 된 국내 규정은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필요한 절차적 보호조치를 동반하지 않으며 자의성에 맞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몰수라는 처벌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재산 몰수라는 부수적인 형벌에 관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국내 법원은 몰수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대신 청구인이 소유한 재산 전부에 이 조치를 적용하였다. 또한 몰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제 1 심법원의

권한과 관련하여 불확실성과 다양한 판례가 있었다. 재판소는 제 1 심법원의 권한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있는 규정이라면, 예측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없으며 자의에 맞서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법원에 실효적으로 사건을 청구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몰수 처벌의 강제적 성격은 해당 청구인들이 사건에 관하여 변론할 기회와 그 성공 가능성을 모두 박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목적으로 설계된 결정에 의해 처벌의 정확한 범위가 절차의 단계 중에서도 재판 전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은 개인에게 관할 당국에 사건을 제기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없다(*ibid.*, § 73).

134. *Kemal Bayram v. Turkey*, 2021, §§ 52–73 사건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청구를 제기한 두 개의 필지는 청구인이 1977년 구입한 후 1985년 토지 대장 개편 결과 1986년 재무부 소유로 재등기되었다. 해당 필지가 재무부 소유로 재등록될 당시 독일에 거주하던 청구인은 해당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등기에 대한 이의 제기 기한이 만료된 2004년에 이 조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가가 서로 상충하는 이익 간 공정한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135. 협약 제 6 조의 맥락에서 법의 지배 원칙과 공정한 재판 개념은,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입법부가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사법 행정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1994, § 49; *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1997, § 112; *Zielinski and Pradal and Gonzalez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57; *Azienda Agricola Silverfunghi S.a.s. and Others v. Italy*, 2014, § 76). 그렇지만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심리한 결과, 입법적 개입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된 소급효 있는 법률은 여전히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법성 요건을 준수하였다(*Maggio and Others v. Italy*, 2011, § 60, *Arras and Others v. Italy*, 2012, § 81; *Azienda Agricola Silverfunghi S.a.s. and Others v. Italy*, 2014, § 104; *Tokel v. Turkey*, 2021, § 76). 개입한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발생한 이후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발효된 사용 제한 조치는, 개별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별히 제정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Saliba v. Malta*, 2005, §§ 39–40). 협약 또는 그 의정서는 기존 계약에 대해 소급효 있는 입법부의 간섭을 가로막지 않는다(*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89, § 50; *Bäck v. Finland*, 2004, § 68).

136. 그러나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소유물”을 구성하던 기준의 “자산”을 박탈하는 효과가 있는 법률을 소급 적용하면,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것과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 보호 사이에 존재하는 공정한 균형을 무너뜨리는 개입에 해당할 수 있다(*Maurice v. France* [GC], 2005, §§ 90 및 93). 이는 사인 간의 분쟁이고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건에도 적용된다(*Kamoy Radyo Televizyon Yayincilik ve Organizasyon A.S. v. Turkey*, 2019, § 40).

137. 나아가, *Associations of Communally-owned Forestry Proprietors Porcenii Pleșa and Piciorul Bătrân Banciu v. Romania*, 2023, §§ 76–7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부여에 필요한 방법론적 기준의 채택과 발표를 장기간 미룬 국내 당국을 살펴보았다. 이 사건은 문제가 된 삼림이 유럽의 나투라 2000(Natura 2000) 네트워크를 위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데도 보상도 받지 못한 두 곳의 삼림 소유자 협회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나투라 2000 지정 지역 내 임야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지 1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국가 보상 조치의 방법론을 규정하는 결정 초안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고 청구인 협회에 지급하지도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관련 임야가 자연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 삼림 사용 법정 금지 대상이 되었지만, 청구인 협회는 삼림 유지 의무를 자비로 준수하였다. 재판소는 논란이 된 개입이 적법하지 않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138. 적법성 원칙은 국가 또는 그 외 공공 당국이 사법 명령 또는 결정을 준수할 의무도 수반한다(*Belvedere Alberghiera S.r.l. v. Italy*, 2000, § 56; 아래의 집행 절차에 관한 장 참조).

139.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특히 최고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명백히 상충하는 결정이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에 개입하고 왜 상충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러한 개입은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때 필요한 명확성이 결여된 일관성 없는 판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상 적법하게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Aliyeva and Others v. Azerbaijan*, 2021, §§ 130–135).

### 3. 공공의 또는 일반의 이익

140. 공공 당국이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에 개입한다면, 정당한 공공의 또는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113; *Lekić v. Slovenia* [GC], 2018, § 105).

141. 재판소가 판단하기에, 이 조항이 의미하는 공익 개념에 해당하는 목적은 주택 부문에서 사회적 불공정 제거(*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45; *Grozdanić and Gršković-Grozdanić v. Croatia*, 2021, §§ 102–103; 또한 국가의 경제·계획 정책 맥락에서 주거 제공 *Maria Azzopardi v. Malta*, 2022, §§ 53 및 60 참조), 특히 대량 무주택자 발생 방지 맥락에서 외화 대출 위기의 영향에 대한 대처(*Béla Németh v. Hungary*, 2020, §§ 42–45), 특정 산업의 국유화(*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9 및 109), 에너지 부문 규제(*Salento Energy S.r.l. and Nuovo Sole S.r.l. v. Italy* (dec.), 2024, § 37), 토지·도시 개발 계획 채택(*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9; *Cooperativa La Laurentina v. Italy*, 2001, § 94), 현지 토지 개발 계획 이행과 관련된 토지 확보(*Skibińscy v. Poland*, 2006, § 86), 조세포탈 방지(*Henrich v. France*, 1994, § 39), 도로 교통 안전(*Pannon Plakát Kft and Others v. Hungary*, 2022, § 48), 마약 밀매·밀수 방지 대책(*Butl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범죄 피해자 이익 보호(*Šeiko v. Lithuania*, 2020, § 31), 알코올 소비 제한 조치(*Tre Traktörer AB v. Sweden*, 1989, § 62), 도덕 보호(*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1976, § 62), 유통되는 자동차의 적법한 원산지 관리(*Sildedzis v. Poland*, 2005, § 50), 불법으로 취득한 금전 몰수(*Honecker and Others v. Germany* (dec.), 2001), 담합 행위 방지, 국고 보호 및 공정 경쟁 촉진(*Kurban v. Turkey*, 2020, § 78),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유 시장 경제로 전환(*Lekić v. Slovenia* [GC], 2018, §§ 103 및 105), 원활한 사법 제도 운용 및 추가로 사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자연 없는 사법 행정의 중요성(*Konstantin Stefanov v. Bulgaria*, 2015, § 64)이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청구인들과 채무자 간 계약 관계는 순전히 상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정황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정당한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Katona and Závorský v. Slovakia*, 2023, § 59).

142. 환경 보호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2018, § 295; *Bahia Nova S.A. v. Spain* (dec.), 2000; *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82; *Associations of Communally-owned Forestry Proprietors Porceni Pleşa and Piciorul Bătrân Banciu v. Romania*, 2023, § 77; 또한, 산지의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Sàrl Couttolenc Frères v. France*, 2023, § 62 참조). *Hamer v. Belgium*, 2007, § 79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의 어느 조항도 전반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지는 않았지만(*Kyrtatos v. Greece*, 2003, § 52), “오늘날 사회에서 환경 보호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고려 사항”이며 “경제적 고려 사항뿐만 아니라 재산권 같은 특정한 기본권조차도, 특히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한 경우, 환경 보호와 관련된 고려 사항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적인 상업 목적 및 공익 목적의 주택

개발은 환경 보호만큼 강력하게 공익을 수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Svitlana Ilchenko v. Ukraine*, 2019, § 70).

143. 브루셀라병에 걸린 수많은 동물의 강제 도축에 관한 *S.A. Bio d'Ardennes v. Belgium*, 2019, §§ 55–57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물 질병 예방의 중요성 및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남겨진 재량을 강조하였다.

144.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맥락에서 국가에 의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도 공익의 개념에 해당하며(*Albergas and Arlauskas v. Lithuania*, 2014, § 57; *Pyrantienė v. Lithuania*, 2013, §§ 44–48; *Bečvář and Bečvářová v. the Czech Republic*, 2004, § 67), 개인의 결정을 근거로 사회보험 혜택을 정당하게 취득하였으나 나중에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상황도 여기에 포함된다(*Moskal v. Poland*, 2009, § 63). 폭을 넓혀보면, 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목적으로, 보증이 없거나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 혜택을 입법적 개입으로 끝내는 것도 공익 추구로 판단하였다(*Cichopek and Others v. Poland* (dec.), 2013, § 144).

145. 법적 확실성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은 대체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Grobelny v. Poland*, 2020, § 66).

146. 임대료 통제, 임대차 보호 등 주택 분야에서 국가가 적용하는 다양한 규제 조치는 대체로 재판소가 임차인의 사회적 보호라는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수용하였다(*Anthony Aquilina v. Malta*, 2014, § 57; *Velosa Barreto v. Portugal*, 1995, § 25; *Hutten-Czapska v. Poland* [GC], 2005, § 178; *Amato Gauci v. Malta*, 2009, § 55; *Kasmi v. Albania*, 2020, § 76). 주택 분야에서, 지역난방과 연결되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청구인에게 부과된 고정 난방 요금 납부 의무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열 공급을 보장하는 정당한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0, § 75).

147. 문화유산 보전 및 적절한 경우 지속가능한 사용은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지역과 주민의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뿐만 아니라 보존을 목표로 한다. 그 자체로 필수적인 가치이며, 이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공공 당국의 의무이다(*Beyeler v. Italy* [GC], 2000, § 112; *SCEA Ferme de Fresnoy v. France* (dec.), 2005; *Debelianovi v. Bulgaria*, 2007, § 54; *Kozacioglu v. Turkey* [GC], 2009, § 54).

148. 개입이 공익 개념에 부합하게 만드는 목적의 목록은 광범위하며, 다양한 사실적 맥락에서 공공 정책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새로운 목적으로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다. 특히 재산을 수용(收用)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GC], 2000, § 87;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106) 사회보험 혜택에 관한 결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재판소는 무엇이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지만 없지만 않다면 이를 존중한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113).

149. 협약으로 성립된 보호 제도 하에서, 재산 박탈 또는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에 개입하는 조치를 해야 할 공공의 관심사가 존재하는지 처음 심사해야 할 곳은 국가 당국이다. 협약의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국가 당국은 광범위한 재량을 누린다. 예를 들어, 입법부가 사회·경제 정책을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은 넓으며, 재판소는 무엇이 “공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명백히 없지 않은 한 이를 존중한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113;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56). 나아가, “공익”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광범위해야 한다(*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106; *R.Sz. v. Hungary*, 2013, § 44; *Grudić v. Serbia*, 2012, § 75). 재판소는 심리에 따른 개입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체약국의 주장을 존중하며, 이와 관련된 심사의 강도는 낮다. 따라서, 재판소에 제기된 주어진 사건의 맥락에서 특정 조치가 실제로는 피소된 협약당사국이

의거하는 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했다는 청구인의 변론이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여하튼 재판소에서는 해당 개입이 재판소 절차에서 정부가 명시적으로 의거한 것과 다르더라도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심지어 재판소가 직권으로 목적을 밝히는 경우도 있었다(*Ambruosi v. Italy*, 2000, § 28; *Marija Božić v. Croatia*, 2014, § 58).

150. 재량은 예를 들어 정치·경제 체제 변화라는 맥락에서 법률이 채택된 경우(*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91), 국고 보호 정책 채택(*N.K.M. v. Hungary*, 2013, §§ 49 및 61) 또는 자금 재분배(*Savickas and Others v. Lithuania* (dec.), 2013) 또는 중대 경제 위기로 인한 긴축 조치 맥락에서(*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 37 및 39; 및 *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2013, § 22;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37) 특히 넓어진다.

151. 이러한 국내 당국의 평가를 존중한 결과, 재판소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공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는 드물다(*S.A. Dangerville v. France*, 2002, §§ 47 및 53–58 – 과오납 세금 환수 불이행; *Rosenzweig and Bonded Warehouses Ltd. v. Poland*, 2005, § 56 – 관련 결정에서 당국이 의거한 공익적 사유 없이 청구인의 사업 운영 면허 취소; *Vassallo v. Malta*, 2011, § 43 – 재산이 수용된 후 28년이 지났음에도 초기 수용 요건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익 요건과 관련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79 – 청구인 회사 면허를 무효로 할 때 당국이 진정성 있고 일관된 정책적 고려 사항을 따랐다는 것이 재판소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입증되지 않음).

#### 4. 비례성 및 관련 사안(공정한 균형, 보상, 재량)

152.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항 전문에 명시된 일반 원칙과 양립하려면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외에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에 대한 개입이 공동체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건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Beyeler v. Italy* [GC], 2000, § 107;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8).

153. 즉,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해당인이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요건의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재판소는 협약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쟁점이 되는 다양한 이익에 대해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판소는 입법적, 행정적 또는 당국의 관행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국가의 행위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임을 강조해야 한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51).

154. 이러한 균형 추구는 협약 전체에 내재되어 있고,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구조에도 반영되어 있다(*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9; *Brumărescu v. Romania* [GC], 1999, § 78; *Saliba v. Malta*, 2005, § 36; *Bistrović v. Croatia*, 2007, § 34).

155. 공정한 균형 성립 사안은 해당 개입이 공익에 부합하고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며 자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Iatridis v. Greece* [GC], 1999, § 58; *Beyeler v. Italy* [GC], 2000, § 107).

156. 공정한 균형 성립 사안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판단할 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판소는 보통 공익을 추구한 개입 여부에 대한 제한된 심사가 아니라 비례성 요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한다(위의 공익에서 개입에 관한 장 참조).

157. 비례성 심사의 목적은 먼저 청구인이 진정을 제기한 개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권리 행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그러한 제한이 청구인의 상황에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후, 이러한 영향을 공익이 그 개입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중요성과 비교한다.

158. 재판소는 이 심리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를 담은 고정 목록은 없다. 사건의 사실관계, 관련된 개입의 성격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진다.

159. 예를 들어 *Kurban v. Turkey*, 2020, §§ 81 및 86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공 조달 후보에 대한 평가 및 후보의 의무적 또는 재량적 배제에 관한 정책 선택에 대해 체약국이 누릴 수 있는 재량은 상당하지만 그래도 공정한 균형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60. 일반적으로 공익 사안이 걸려 있는 경우, 공공 당국은 늦지 않게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Fener Rum Erkek Lisesi Vakfi v. Turkey*, 2007, § 46; *Novoseletskiy v. Ukraine*, 2005, § 102). 재판소는 국가가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소송 당사자의 행위를 총체적으로 고려한다(*Beyeler v. Italy* [GC], 2000, § 114; *Bistrović v. Croatia*, 2007, § 35).

161.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맥락에서 공정한 균형 심사를 심리할 때 몇 가지 전형적인 요소는 다음과 같다.

### a. 절차적 요소

162. 제 1 의정서 제 1 조에는 명백하게 절차적인 요건은 없지만, “소유물”을 간섭하는 조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해당 조치에 실효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사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법하거나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위라고 호소할 합리적인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G.I.E.M. S.R.L. and Others v. Italy* (본안) [GC], 2018, § 302; *Yıldırım v. Italy* (dec.), 2003; *AGOSI v. the United Kingdom*, 1986, §§ 55 및 58–60; *Air Canada v. the United Kingdom*, 1995, § 46; *Arcuri and Others v. Italy* (dec.), 2001; *Riela and Others v. Italy* (dec.), 2001; *Kemal Bayram v. Turkey*, 2021, § 54; *Shorazova v. Malta*, 2022, § 302; *Arnavutkoy Greek Orthodox Taksiarhis Church Foundation v. Türkiye*, 2022, §§ 50–56). 이러한 절차적 보장 사항은 적법성 원칙에 내재되어 있다(*Lekić v. Slovenia* [GC], 2018, § 95)(위의 적법성 원칙에 관한 부분 참조).

163. 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때 재판소는 해당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AGOSI v. the United Kingdom*, 1986, § 55; *Bowler International Unit v. France*, 2009, §§ 44–45; *Jokela v. Finland*, 2002, § 45; *Denisova and Moiseyeva v. Russia*, 2010, § 59; *Microintelect OOD v. Bulgaria*, 2014, § 44). 나아가, 개별적인 절차적 결함 자체가 몰수 조치의 비례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재판소는 그 누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관련 요소를 종합하면 불확실성과 부정확성을 초래하는 경우, 몰수는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에 대한 비례성을 상실한다(*Todorov and Others v. Bulgaria*, 2021, § 211).

164. 청구인이 해당 조치에 실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Hentrich v. France*, 1994, § 49; *Könyv-Tár Kft and Others v. Hungary*, 2018, § 59; 및 *Uzan and Others v. Turkey*, 2019, § 215). 재판소는 적용된 절차를 이용하면 청구인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공정한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Bäck v. Finland*, 2004, § 63). 신용조합이 재정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이사들이 입증할 수 있도록 조합의 회계 문서에 접근하려 하자 법정관리인이 거부한 것은 위반이라고 판단되었다(*Družstevní Záložna Pri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08, §§ 94–95). 청구인이 제기한 주요 변론을 당국이 면밀히 심리하였는지도 중요하다(*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74; *Novoseletskiy v. Ukraine*, 2005, § 111; *Bistrović v. Croatia*, 2007, § 37). 수용(收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추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Papachelas v. Greece* [GC], 1999, §§ 53–54) 및 수용 보상 산정과 관련하여 적용한

추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Katikaridis and Others v. Greece*, 1996, § 49; *Efstathiou and Michailidis & Co. Motel Amerika v. Greece*, 2003, § 33) 모두 정부에 불리하게 판결되었다.

165. 개인의 재산이 수용(收用) 대상이 되는 경우, 수용되는 재산의 가치와 관련된 보상 부여, 보상받을 권리 소유자 결정 및 수용과 관련된 그 외 문제와 절차 비용 등 수용의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심사를 보장하는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Alfa Glass Anonymi Emboriki Etairia Yalopinakon v. Greece*, 2021, § 36; *Pál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22, §§ 62–50). 후자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행정부가 발표한 표와 요율에 따른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시행되던 체코 법률은 “수용(收用)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보장하는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의 필지가 군사 보안 구역으로 지정된 *Yavuz Özden v. Turkey*, 2021, §§ 78–87 사건에서 당시 시행된 법제는 청구인의 권리를 적절히 존중하게 되어 있지도 않았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166. 국가 당국이 사건과 관련된 사익과 공익 간 이익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청구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74). 위조 여권으로 취업한 사람이 모은 노후 자금을 모두 몰수한 사례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법원은 몰수 명령이 재산권과 공익 간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였는지 심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 법원이 비례성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위반할 수 있다(*Paulet v. the United Kingdom*, 2014, §§ 68–69).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기간의 자동적이고 일반적이며 비탄력적인 보호 조치도 위반이 될 수 있다(*Uzan and Others v. Turkey*, 2019, § 193).

167.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걸린 시간도 고려 대상이다. *Luordo v. Italy*, 2003, § 70 사건에서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내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 원칙적으로는 파산 절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산자에게 “소유물”을 관리할 권리를 박탈할 필요가 있다지만, 시간이 지나고 파산 절차가 과도하게 길어지면 그 필요성은 축소될 것이다. *Uzan and Others v. Turkey*, 2019, § 207 사건에서 재판소가 보기에 관련성이 있는 요소는 청구인들의 재산에 대한 제한이 약 10 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이었다. 마지막으로 *Kasilov v. Russia*, 2021, § 52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당한 목적이 없다면, 청구인이 구금된 후에도 11 개월간 보석금을 보관한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 b. 조치 선택

168. 공정한 균형 심사 요소 중 하나는 공공 당국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취할 수 있었던 침해성이 덜한 조치의 존재 여부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툼이 발생한 법률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입법부가 인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판소는 해당 입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이었는지 또는 입법부의 재량이 다른 방식으로 행사되어야 했는지 따질 수 없다(*James and Others v. United Kingdom*, 1986, § 51; *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 48).

169. 청구인의 권리를 덜 침해하는 개입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와 당국이 침해가 덜 한 해결책의 적용가능성을 심리했는지도 관련이 있다(*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2011, §§ 651–654; *Vaskrsić v. Slovenia*, 2017, § 83).

170. 재판소는 정부가 문제의 조치가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유일한 조치였다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다른 수단을 진지하게 고려하였거나,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조치의 비례성을 심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조치를 선택한 이유가 처음부터 암묵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Zelenchuk and Tsytsyura v. Ukraine*, 2018, § 122). 또한 유럽평의회 회원국

중에서도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해도 비슷한 조치를 선택한 국가가 없다는 사실도 고려하였다(*ibid.*, § 127).

### c. 공정한 균형 심사와 관련된 실체적 사안

171. 사건에 따라 공정한 균형 심사를 할 때 재산의 일부 수용(收用)이 청구인 소유 중 미수용된 부분의 가치 또는 편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 사건의 특수한 정황을 국가가 충분히 고려하였는지 살펴보기도 한다(*Azas v. Greece*, 2002, §§ 51–53; *Interoliva ABEE v. Greece*, 2003, §§ 31–33).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재산 인근에서 발생한 공사의 성격상 직접적으로 잔여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게 한 것이 명백한 경우(예: 공공 도로 또는 그 외 건축물이 남아있는 토지와 가까운 곳에 자리하는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위반일 수 있다(*Ouzounoglou v. Greece*, 2005, § 30; *Bistrović v. Croatia*, 2007, §§ 42–44). 수용(收用)의 결과로 청구인의 잔여 재산 가치가 증가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추정을 적용하면 비례성 심리의 맥락에서 피청구국에 불리하였다(*Papachelas v. Greece* [GC], 1999, §§ 53–54).

172. 관세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 물품의 가치에 상응하는 벌금을 강제로 부과하여 국내법원이 문제가 된 이해관계와 개별 사정 간 균형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이어졌다(*Krayeva v. Ukraine*, 2022, §§ 29–32).

173. 청구인의 “소유물”을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에 대한 개입의 비례성을 면밀히 검토할 때, 당국의 자연으로 청구인이 처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태는 그러한 소송에서 국가의 행위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2000, § 54;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51 및 185; *Barcza and Others v. Hungary*, 2016, § 47; *Frendo Randon and Others v. Malta*, 2011, § 55; *Hunguest Zrt v. Hungary*, 2016, §§ 25 및 27; *Zelenchuk and Tsytsyura v. Ukraine*, 2018, §§ 91 및 106).

174. 개입이 수용(收用)을 구성하지 않는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정 기간 지속된 제한에 대해 법률이 어떤 형태의 구제를 허용하는지(*Skibińscy v. Poland*, 2006, §§ 93–95 대조), 개입이 금지하거나 억압하는지(*Allianz-Slovenska-Poistovna, A.S., and Others v. Slovakia* (dec.), 2010; *Konstantin Stefanov v. Bulgaria*, 2015, § 67), 민사 절차의 맥락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불리한 특혜를 받지는 않았는지(*Zouboulidis v. Greece (no. 2)*, 2009, §§ 32 및 35) – 국가에 유리하도록 취득 시효 기간을 단축하여 위반), 재산의 가치가 과세 목적과 국가가 지급할 수용 보상의 목적에 대해 동일한 규칙에 따라 설정되었는지(*Jokela v. Finland*, 2002, §§ 62 및 65 –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높게 설정되었다는 이유로 위반) 등도 심리한다.

175. 청구가 제기된 조치의 임시적 성격은 일반적으로 국가에 유리하다(*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2013, § 29; *Savickas and Others v. Lithuania* (dec.), 2013, § 92).

176. 공권력이 행한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개인의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할 권리에 개입한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에 부합한다면, 선량한 관리(good governance) 원칙에 따라 당국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하되(*Moskal v. Poland*, 2009, § 69; *Paplaukienė v. Lithuania*, 2014, § 49) 적절한 방식으로 최대한 일관성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Beyeler v. Italy* [GC], 2000, § 120; *Romeva v. North Macedonia*, 2019, § 58; *Grobelny v. Poland*, 2020, § 68; *Belova v. Russia*, 2020, § 37; *Seregin and Others v. Russia*, 2021, § 94;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74; *Semenov v. Russia*, 2021, § 59; *Casarín v. Italy*, 2021, § 68; *Muharrem Güneş and Others v. Turkey*, 2020, § 74), 특히 상충하는 사익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 관련 개인의 비용으로 그러한 오류를 시정해서는 안 된다(*Gashi v. Croatia*, 2007, § 40; *Gladysheva v. Russia*, 2011, § 80; *Pyrantienė v. Lithuania*, 2013, § 70; *Moskal v. Poland*, 2009, § 73; *Albergas and*

*Arlauskas v. Lithuania*, 2014, § 74; *S.C. Antares Transport S.A. and S.C. Transroby S.R.L. v. Romania*, 2015, § 48; *Seregin and Others v. Russia*, 2021, § 94;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74; 및 *Semenov v. Russia*, 2021, § 59). 당국은 실수하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하는 개인이 과도한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어야 한다(*Belova v. Russia*, 2020, § 37; *Kurban v. Turkey*, 2020, § 82; *Muharrem Güneş and Others v. Turkey*, 2020, § 74).

177. *Belova v. Russia*, 2020, §§ 40–45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경우 잘못 관리하여 재산을 상실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재산 취득자라면 몰수 청구 가능성을 피하고자 재산의 출처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매수하려는 재산이 분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국가에는 올림픽 개최 및 자연 보호를 위해 분쟁 재산에 대해 합법적이고 중대한 공공의 이익이 있던 상황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178.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사건(*Seregin and Others v. Russia*, 2021,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및 *Semenov v. Russia*, 2021)은 아무 잘못 없는 매수인이 국내 제도, 당국의 오류 또는 부작위에 전적으로 기인한 상황의 결과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재산 양도를 조정하는 일반적인 사안에 관한 사건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안은 최초 재산 이전(사유화 형태)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사유재산 증서 무효화(*Seregin and Others v. Russia*, 2021, § 4), 당국의 오류로 인해 “임업 자원”으로 분류된 필지에 대한 권원 증서의 소급 무효화(*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1),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필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원을 지자체에 유리하도록 무효로(*Semenov v. Russia*, 2021, § 1) 하는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각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공익 요건과 청구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성 사이의 공정한 균형이 깨져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Seregin and Others v. Russia*, 2021, § 111;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87; *Semenov v. Russia*, 2021, § 72; 또한, 원 소유자 사망 후 당국의 부동산 등기 거부가 여러 지방 및 연방 당국 간 조정이 부적절하고 지연된 것과 관련된 *Lidiya Nikitina v. Russia*, 2022, §§ 47–50).

179. *Kanevska v. Ukraine* (dec.), 2020, §§ 46–52 사건은 아파트 한 채를 둘러싼 사적 당사자 간 재산 분쟁에 관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해당 아파트를 선의로 구매하였지만, 이 아파트는 최초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 또는 동의 없이 여러 차례 매각된 적이 있었다. 사기 혐의로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다. 국내 법원은 결국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가 유리하게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라면 본질적으로 분쟁이 있는 재산에 대해 상충하는 사적 이익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 자의성이나 명백한 불합리함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결국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한 사실이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부동산 거래 등록 과정에서 모든 사기 행위를 방지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할 의무가 없었으며, 대신 사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포함되었다. 청구인에게는 국내 수준에서 자신의 권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가 있었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위반되지 않았다.

180. *Korshunova v. Russia*, 2022, §§ 36–42 사건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보상 없이 몰수하고 판매한 사건이다. 이 아파트는 청구인의 남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 수익으로 민사 당사자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았다. 국내 당국이 그 선의를 의심하지 않은 청구인은 판매 명령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피해자/민사 당사자의 이익과 매수인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요건을 강조하면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181. 나아가, *Sak and Giebutowicz v. Poland* (dec.), 2023 사건은 “부당이득” 원칙에 따라 국가가 10년 전 잘못 산정한 보상을 청구인이 국가에 돌려줄 의무에 관한 사건이었다.

재판소는 특히 맥락을 넓혀 국가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전환하는 상황에서, 공공 당국이 자연인과 국가 간 재산 거래를 규제하는 도중 부당한 손실로부터 국가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명백한 판단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마지막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청구인들에 대한 국내 법원의 결정은 자의성을 띠지 않았다(§§ 66–67).

182. 마지막으로 제재의 경우 재판소는 비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재의 심각성은 실제로 입증되지 않고 추정된 침해의 심각성보다는 처벌하고자 하는 위반의 심각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Imeri v. Croatia*, 2021, § 71).

#### d. 청구인 관련 사안

183.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균형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 청구인이 제도의 약점이나 허점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는지 살펴본다(*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1997, § 109; *OGIS-Institut Stanislas, OGEC Saint-Pie X and Blanche de Castille and Others v. France*, 2004, §§ 69 및 71). 마찬가지로, *G.I.E.M. S.R.L. and Others v. Italy* (merits) [GC], 2018, § 301 사건에서 재판소는 몰수의 비례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의 유죄성이나 과실의 정도 또는 최소한 청구인들의 행위와 해당 범죄 간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회계사로서의 자격은 초과 기여금의 무이자 환수가 비례성을 지킨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였다(*Taşkaya v. Turkey* (dec.), 2018, §§ 49–50). *Pyrantiené v. Lithuania*, 2013, § 62(청구인이 연금 수급 연령이고 오랫동안 장애가 있는 경우) 사건처럼 청구인 개인의 취약성을 고려하는 사건도 있다. 청구인의 건강과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선의로 행정 결정에 의거하여 이미 수령한 급여에 당국의 실수가 있는 경우, 청구인에게 부과된 반환 의무는 비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Čakarević v. Croatia*, 2018, §§ 82–90; 또한 *Casarin v. Italy*, 2021, § 74 참조).

184. 재판소는 진정이 제기된 조치가 특정한 개인의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지 심리할 수 있다(*Hentrich v. France*, 1994, § 47; *R.Sz. v. Hungary*, 2013, § 60).

185. 또한 청구인이 자기 재산에 또 다른 집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소유물”을 상실한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에 부과된 법적 제한사항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Allan Jacobsson v. Sweden* (no. 1), 1989, §§ 60–61; *Z.A.N.T.E. – Marathonisi A.E. v. Greece*, 2007, § 53; 및 *Depalle v. France* [GC], 2010, § 86 – 청구인의 권리 보호 여부를 판단할 목적), 특히 해당 재산을 구입할 때 이러한 제한사항을 알고 있었는지도 관련이 있다.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유자가 향후 제한이 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때 보상의 전면적 부재를 수용하였다. *Fredin v. Sweden* (no. 1); 1991, §§ 12, 16 및 54 사건에서 환경법은 10년이 지나면 보상 없이 광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청구인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몇 년째 이 법이 시행 중이었다. *Łącz v. Poland* (dec.), 2009 사건에서는 도로 건설 관련 지역 개발 계획에서 유관 부분을 발췌하여 매매 계약에 첨부하였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해당 재산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였으며, 상황이 이렇다면 국가는 재산 매각의 어려움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회 보험 맥락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Mauriello v. Italy* (dec.), 2016).

186. *Uzan and Others v. Turkey*, 2019, § 21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사기 연루를 시사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 e. 공정한 균형의 요소인 재산 개입에 따른 보상

187. 보상 조건은 공정한 균형 심사에 중요하며, 특히 청구가 제기된 조치로 청구인들이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안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다(*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1994,

§ 71; *Platakou v. Greece*, 2001, § 55). 다만, 보상의 중요성은 재판소 심사에서 쟁점이 되는 규칙에 따라 달라진다.

188.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1 항 후문에 따라 그 가치에 합리적으로 타당한 금액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수용하는 것은 대체로 비례성을 상실한 개입에 해당하며, 보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 사정이 예외적일 때밖에 없다(*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정당한 배상) [GC], 2002, § 89; 또한 *Katona and Závorský v. Slovakia*, 2023, § 63 참조). 그러나 재산 사용 제한 조치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상 부재는 공정한 균형 달성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이다(*Depalle v. France* [GC], 2010, § 91). 일반 조항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도 유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9; 이 하위 항목의 끝부분 참조).

189. 재산 박탈과 관련하여 무엇이 합리적인지는 주어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자르지만, 보상액 결정에 인정되는 재량은 넓은 편이다. 재판소의 심사 권한은 보상 조건의 선택이 영역에서 국가의 넓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제한된다(*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54). 재판소는 수용(收用)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가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존중한다(*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122).

190. 적법한 수용(收用)에 관한 다수의 사건에서 전액 보상만이 재산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규칙에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정당한 보상) [GC], 2002, § 78; *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96). 따라서 이 조항이 모든 상황에서 전액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공익”에 따른 정당한 목적(예: 경제 개혁 조치에서 추구하거나 사회 정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안된 목적)이 있으면 금액은 전체 시장 가치를 반영한 보상액보다 적을 수 있다(*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54; *Papachelas v. Greece* [GC], 1999, § 48; *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1994, §§ 70–71; *J.A. Pye (Oxford) Ltd and J.A. Pye (Oxford) Land Ltd v. the United Kingdom* [GC], 2007, § 54; *Urbárska Obec Trenčianske Biskupice v. Slovakia*, 2007, § 115; *Pál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22, § 49; *Maria Azzopardi v. Malta*, 2022, § 54).

191. 공동체에서 공동의 이익과 위에서 언급한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건 사이의 균형은 대체로 재산을 수용(收用)당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이 수용 시점에 결정된 “시장”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이루어진다(*Pincová and Pinc v. Czech Republic*, 2002, § 53, *Gashi v. Croatia*, 2007, § 41;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111; *Guiso-Gallisay v. Italy* (정당한 배상) [GC], 2009, § 103; *Moreno Diaz Peña and Others v. Portugal*, 2015, § 76). 접근 방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또는 자의성을 허용할지도 모른다(*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2012, § 111).

192. 수용(收用)된 재산의 가치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에서 일어나는 채석장 등의 사업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등 그 가치를 키운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보상의 적정성은 떨어지게 된다(*Werra Naturstein GmbH & Co Kg v. Germany*, 2017, § 46; *Azas v. Greece*, 2002, §§ 52–53;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2006, § 24). 수용(收用)으로 인해 주 수입원을 잃게 되면, 당국이 지급한 보상이 생계 수단의 박탈과 관련된 실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는지 또는 적어도 청구인이 거주하던 지역 내에서 동등한 토지를 취득할 만한지 다루지 않았다면 청구인에게 지운 개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Osmanyan and Amiraghyan v. Armenia*, 2018, § 70).

193. 보상금 지급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도 관련 요소이다(*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2000, § 54; *Czajkowska and Others v. Poland*, 2010, § 60). 재판소는 보상액을 결정한 공공 기관이 이미 20 년이 흘렀고 청구인에게 보상하기 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건에서 국가에 불리하게

판단하였다(*Schembri and Others v. Malta*, 2009, § 43). 배상금 지급을 75년간 미룬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었다(*Malama v. Greece*, 2001, § 51).

194. 초인플레이션 맥락에서 수용(收用) 보상금 지급이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지연되면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의 재정적 손실이 증가하여 불확실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Akkus v. Turkey*, 1997, § 29; *Aka v. Turkey*, 1998, § 49). 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할 당시 이미 보상금의 일부가 지급되었더라도 보상금 전액 지급이 지연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Czajkowska and Others v. Poland*, 2010, § 62).

195. 보상금을 결정할 때 청구인 개인과 사회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Pyrantienė v. Lithuania*, 2013, § 62). 청구인이 수용된 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국가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ibid.*, § 60).

196. 앞으로 수용(收用) 조치 대상일 사람들이 지급 보상액 결정 절차 도중에도 그 재산을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여 국가가 그 가치와 합리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상을 정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Yetiş and Others v. Turkey*, 2010, § 52).

197.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Azas v. Greece*, 2002, §§ 52–53;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2006, § 24). 예를 들어, 부분 수용(收用)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택 근처에 고속도로가 건설된 경우, 이러한 개입은 주택 사용 제한을 사유로 한 추가 보상이 있어야 한다. 건설의 성격이 잔여 재산 가치의 실질적 감가상각에 더욱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분명하다(*Bistrović v. Croatia*, 2007, §§ 40–42; *Ouzounoglou v. Greece*, 2005, § 30).

198. 광범위한 경제 개혁이나 사회 정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의 결과로 수용(收用)이 발생한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할 보상액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에 부여되는 재량의 폭은 넓어진다. 전체 산업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대체로 민주 사회 내에서 의견이 합리적으로 크게 다를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고려가 수반된다. 국가 당국은 사회 및 사회의 필요와 자원에 대한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 판사보다 이 분야에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유자의 재산 박탈 여부와 보상 조건을 결정할 때 재량이 더 넓어야 한다(*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121–22; 또한 *Maria Azzopardi v. Malta*, 2022, § 55 참조). 마찬가지로,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68–9 사건에서는, 장기 임대 개혁법의 맥락에서, 장기 임차인들이 임대 재산을 취득할 조건이 공정한 균형을 이루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소는 이해 당사자가 받은 금액이 부동산의 전체 시장 가치보다 작더라도, 상시 상황은 부동산 자유보유권자의 부담이 불합리하지 않은 사회·경제 개혁의 맥락에서 공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국가의 경제 및 계획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토지 수용(收用)의 목표가 거주지 공급이었던 *Maria Azzopardi v. Malta*, 2022, §§ 63 및 65–68 사건에서 재판소는 보상 목적으로 토지를 농지로 지정한 국내 결정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지 않다고 인정하고 절차적 및 그 외 보호 조치의 존재를 중시하였다.

199. 하물며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전환 같은 국가 헌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적으로 재산을 수용하는 경우라면, 보상액이 전액보다 적을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GC], 2000, § 87). 국가는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 넓은 재량이 있다(*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 이 원칙은 폴란드가 민주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82 사건에서 재확인되었다. 재판소는 국내 소유권 관계를 규제하는 규칙이 “전국에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입법 체계를 포함”하는 경우 재산의 수용에 대한 보상 또는 원상회복을 시장 가치 이하로 제한하는 결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상술하였다(*Scordino v. Italy (no. 1)* [GC], 2006, § 98).

200. 재판소는 또한 “독일 통일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률이 제정된 경우(*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2005, § 77 및 111–12) 및 비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에서 통과된 두 정권 사이의 과도기에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이 이루어진 경우(*Jahn and Others v. Germany* [GC], 2005, §§ 113 및 117)에도 이러한 원칙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후자의 경우, 독일 통일의 일반적인 정치적, 법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보상의 총체적 부족이 정당할 수 있었다. *Jahn and Others*, 2005 사건 및 *Vistiņš and Perepjolkins* 사건은 서로 구별되는데, 후자는 국적 상실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히 부당한 상황을 사회 정의 회복을 위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입법부가 사후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었다. 따라서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2012, §§ 123, 127–130 사건에서는 충분한 보상 부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01. 또한, 재산이 불법적으로 수용된 경우에도 보상은 피청구국에 대해 응징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Guiso-Gallisay v. Italy* (정당한 배상) [GC], 2009, § 103). 이 사건에서 대재판부가 접근한 방식에 따르면, 시간의 경과를 반영하기 위해 수용 당시 재산의 시장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고 (단순 법정) 이자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재산을 박탈당한 기간을 상쇄해야 한다(*ibid.*, § 105). 또한, 대재판부는 수용(收用)에 따라 청구인들이 입은 기회의 상실을 평가하였다(*ibid.*, § 107).

202. 나아가, 재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문제가 되는 경우, 보상의 부족은 공정한 균형의 달성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구성할 정도는 아니다(*Anonymous Touristiki Etairia Xenodocheia Kritis v. Greece*, 2008, §§ 44 및 45). 청구인들이 해양 공물 범주에 속하는 토지 위에 지어진 주택을 점유한 *Depalle v. France* [GC], 2010, § 91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물에 관한 규칙을 고려하고, 청구인이 모든 결정에 명시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알지 못했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하지 않은 것이 일반의 이익을 추구하여 수행된 청구인의 재산 사용 제한에 비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03. 브루셀라병에 걸린 수많은 동물의 강제 도축이 사용 제한에 해당한 *S.A. Bio d'Ardennes v. Belgium*, 2019, §§ 47–49 및 5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회사가 소 도축에 대한 보상 거부를 이유로 개별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204. 마지막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일반 조항에 따라 분석된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개입으로 두고 재판소는 “사용 제한” 사건 범주와 다소 유사하게 접근하였다(*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1994, §§ 42 및 47–48; *Pialopoulos and Others v. Greece*, 2001, §§ 57–61).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1982, § 69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개별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시간제한의 단축을 요청하거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C.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

205.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재산권 존중 의무에는 소극적 의무도 적극적 의무도 있다.

206.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이 “소유물”을 평화롭게 향유하는 데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다(소극적 의무). 그러나 협약 제 1 조에 따라 각 협약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협약]에 정의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 의무의 이행에는 협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효과적인 행사를 보장하는 데 내재된 적극적 의무가 수반될 수 있다.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맥락에서,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국가가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43; *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96; *Keegan v. Ireland*, 1994, § 49;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1994, § 31;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0; *Likvidējamā p/s Selga and Vasīlevska v. Latvia* (dec.), 2013, §§ 94–113).

207.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권리를 실효적으로 실제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개입 금지 의무에만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당국으로부터 정당하게 기대할 수 있는 조치와 청구인의 “소유물”을 실효적으로 향유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Öneryildiz v. Turkey* [GC], 2004, § 134; *Dabić v. Croatia*, 2021, § 51), 사인 또는 기업 간 소송이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96; *Antonopoulou v. Greece* (dec.), 2021, § 55).

208. 불법 정착촌에서 국가의 위험한 활동(쓰레기 매립지에 쌓여 있던 메탄가스 폭발)으로 인해 많은 주택이 파괴되고 여러 명이 사망한 *Öneryildiz v. Turkey* [GC], 2004, §§ 135–13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했을 위험에 비추어 청구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Kurşun v. Turkey*, 2018, § 115). 특히, 당국은 수년 전에 전문가 보고서에서 확인된 제보로 인한 위험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스 추출 시스템을 적시에 설치하는 등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

209. 그러나 협약 제 2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와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생명권의 근본적인 중요성 때문에 제 2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의 범위에는 그 권리 보호를 위해 재난 구호 영역에서 당국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처를 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닌 재산의 평화로운 향유권을 보호할 의무는 상황상 합리적인 범위 이상으로 확장될 수 없다(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우인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75; 부상/사망과 관련 없는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경우인 *Kurşun v. Turkey*, 2018, § 121). 또한, 산사태와 같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의 특수성과 기업가로서의 청구인 자신의 책임을 고려할 때, 국가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Vladimirov v. Bulgaria* (dec.), 2018, §§ 37 및 39–41).

210. 재산 파괴에 대한 조사 의무 및 인명 손실에 대한 조사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구분해야 한다. 특히, 재판소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와 같이 심각성이 덜한 범죄, 특히 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의 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사 의무의 엄격성이 덜하다고 판결하였다. 심각성이 덜한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국가는 범죄 수사 또는 기소에서 명백하고 심각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Blumberga v. Latvia*, 2008, § 67; *Abukauskai v. Lithuania*, 2020, § 56; *Adzhigitova and Others v. Russia*, 2021, § 255; *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2022, § 107).

211. *Blumberga*,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재산권에 대한 개입이 청구인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지만(*ibid.*, §§ 68–73), *Abukauskai*, 2020 사건에서 국내 당국은 청구인들의 재산 피해가 “위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지만, 청구인들은 국내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도 재판소에 최초로 제출한 자료에서도 방화 공격의 위험한 특성으로 인해 다쳤다거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ibid.*, §§ 58–61). 이 두 사건에서 공통으로 재판소는 범죄 수사에 명백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가가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비롯된 형사 사건의 수사에서 심각하고 명백한 결함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민사 소송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질 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Blumberga v. Latvia*, 2008, § 68).

212. 반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Korotyuk v. Ukraine*, 2023, §§ 36–37 및 55–56 사건에서 재판소는 범죄 수사를 특정 지은 명백하고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국가가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Nikolay Kostadinov v. Bulgaria*, §§ 72–75 사건에서 국가가 특히 범죄 집단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심각한 의혹을 조사하지 않아서 그러한 범죄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적 당사자가 회사, 주식, 자산을 부정 인수한 것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213. *Antonopoulou v. Greece* (dec.), 2021 사건에서 청구인은 환율을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스위스 프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계약서에는 대출받은 시점이 아닌 상환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라는 조항이 있었다. 청구인은 이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유로화에 대한 스위스 프랑이 강세를 보이자 대출 금액이 약 60% 증가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내 법원에 상환 조항이 남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국내법에 따라 민사 법원에 계약상 의무의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민법에 근거하여 계약의 재협상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하여 재산의 향유와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절차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bid.*, § 82). 나아가, 청구인은 언제든지 은행에 대출 통화를 유로화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월 상환액 증가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ibid.*). 재판소는 국가가 마련한 법제에 따라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청구인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는 이 조항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다하였다고 결론지었다(*ibid.*, § 84).

214.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가르는 경계를 한치도 틀림없이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적용 가능한 원칙은 비슷하다. 사건을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기준으로 분석하든, 정당해야 하는 공공 당국의 개입을 기준으로 분석하든 적용해야 할 기준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두 맥락에서 공통으로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 언급된 목적은, 관련된 공익에 따른 요구 사항과 청구인의 기본적인 재산권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지 심사할 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두 가지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국가는 협약 준수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때 어느 정도 인정 범위를 누린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44; *Keegan v. Ireland*, 1994, § 49;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3, §§ 98;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1; *Kotov v. Russia* [GC], 2012, § 110; *Saraç and Others v. Turkey*, 2021, § 71).

215. 따라서, 다수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고유의 사정에 유념하면서도 사건의 심리를 피청구국의 적극적 의무 또는 소극적 의무로 엄격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피청구국의 행위를 개입 또는 부작위 또는 이 둘의 조합으로 특징짓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적법성 원칙, 정당한 목적 및 “공정한 균형”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결정한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1; *Kotov v. Russia* [GC], 2012, § 102;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46; *Skórits v. Hungary*, 2014, §§ 37–38).

216. 이는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1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청구인들은 은행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진정을 제기하였고, 인출이 불가능하게 된 요인으로는 관련된 은행의 자금 부족, 법에 의한 계좌 동결 조치, 청구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예금 보유자들이 예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국가 당국이 조처하지 않은 것 등이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서 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피청구국의 적극적 의무 또는 소극적 의무로 엄격하게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 곳은

슬로베니아와 세르비아였다. 과거 유고슬라비아 당국의 외화 몰수에 관한 사건으로, 독립 선언 후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인수한 크로아티아에 위반이 귀속된다고 재판소가 결정한 *Zaklan v. Croatia*, 2021, §§ 85 및 91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동일하게 접근하였다.

217.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발생하는 적극적 의무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선량한 관리(good governance)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원칙은 공익이 달린 문제, 특히 재산권을 포함한 기본적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공공 당국이 신속하고 적절하며 무엇보다도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Beyeler v. Italy* [GC], 2000, § 120; *Megadat.com SRL v. Moldova*, 2008, § 72; *Rysovskyy v. Ukraine*, 2011, § 71; *Moskal v. Poland*, 2009, § 72; *Maria Mihalache v. Romania*, 2020, § 70; *Muharrem Güneş and Others v. Turkey*, 2020, § 74). 이 의무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국가에 부과하는 소극적 의무의 맥락에도 적극적 의무의 맥락에도 모두 관련이 있다. 선량한 관리 원칙은 원칙적으로 당국이 가끔 발생하는 실수(당국의 과실로 인한 실수 포함)를 바로잡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래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개인이 공공 당국 행위의 적법성에 선의로 의거하여 취득한 새로운 권리에 비례성을 상실한 채 개입해서는 안 된다 (*Beinarović and Others v. Lithuania*, 2018, § 140; *Muharrem Güneş and Others v. Turkey*, 2020, § 75). 잘못 부여된 재산 권원을 취소하는 맥락에서, 선량한 관리 원칙에 따라 오랫동안 선의로 권원을 보유하던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그 외 적절히 구제해야 할 수도 있다(*Muharrem Güneş and Others v. Turkey*, 2020, §§ 75–81).

## 1. 수평적 효과 – 사인의 개입

218. 재판소가 말하는 “적극적 보호 조치”란 국가에 의한 개입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에 의한 개입도 포함하며,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성격을 띸 수 있다.

219. 실제로, 재판소는 수평적 관계에서도 국가에 어느 정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공익적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Zolotas v. Greece (no. 2)*, 2013, § 39; *Saraç and Others v. Turkey*, 2021, § 70). 따라서 개인 또는 기업 간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산권을 보호할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96; *Saraç and Others v. Turkey*, 2021, § 72; *Kanevska v. Ukraine* (dec.), 2020, § 45).

220. 그러나 사적 당사자 간 일반적인 경제 관계에 관한 사건인 경우 그러한 적극적 의무는 훨씬 더 제한적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체약국의 사기업 채무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Kotov v. Russia* [GC], 2012, § 111; *Anokhin v. Russia* (dec.), 2007).

221. 특히, 사인이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에 개입하는 경우, 국가는 국내법 체계에서 재산권이 법으로 충분히 보호되고 개입의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구제절차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Kotov v. Russia* [GC], 2012, § 113; *Blumberga v. Latvia*, 2008, § 67;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54; *Saraç and Others v. Turkey*, 2021, § 73; *Dabić v. Croatia*, 2021, § 52; *Kanevska v. Ukraine* (dec.), 2020, § 45). 여기에는 적절하다면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Kotov v. Russia* [GC], 2012, § 113; *Blumberga v. Latvia*, 2008, § 67; *Dabić v. Croatia*, 2021, § 52, *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2022, § 105).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예방 또는 구제를 위한 것일 수 있다(*Kotov v. Russia* [GC], 2012, § 113; *Saraç and Others v. Turkey*, 2021, § 73, *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2022, § 106).

222. 예를 들어, 청구인이 20년간 거래에 사용하지 않아서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 *Zolotas v. Greece (no. 2)*, 2013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에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가 있으며, 기간을 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휴면 계좌 보유자에게 주어진 기간이 만료될 예정임을 알리고 만료 전 종지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은행에

요구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공동체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건이 이루는 공정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223. 재판소는 또한 수도회의 청구권이 개인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국가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Liamberi and Others v. Greece*, 2020, §§ 86–88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망한 승려의 재산에 대해 수도원에 자동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로 부여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중요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유관 요소는 수도원이 소유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분쟁이 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들의 선조들은 수십 년 동안 재산세와 지방세 및 상속세 납부 등 수많은 소유 행위를 한 것이었다(*ibid.*).

224. 마지막으로, *Dabić v. Croatia*, 2021, §§ 53–59 사건에서 청구인의 주택은 난민과 이재민이 귀환하는 맥락에서 손상을 입고 약탈당하였으며, 이 경우 국가는 분쟁 중이거나 버려진 재산의 파괴 또는 약탈을 방지한다는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할지도 모른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택에 발생한 피해와 약탈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 가해자뿐만 아니라 애초 재산을 압류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법원이 이러한 손실에 대해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고 청구인의 배상 청구를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2. 구제 조치

225. 특히 정황에 따라 국가가 제공해야 할 수도 있는 구제 조치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런 구제 조치에는 권리를 침해당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 장치가 포함된다고 판결하였다. 제 1 의정서 제 1 조에는 절차적 요건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는 않지만, 이 조항에 따른 절차적 성격의 적극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 당국과 관련된 사건(*Jokela v. Finland*, 2002, § 45; *Zehentner v. Austria*, 2009, § 73) 및 오직 사적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재판소가 공통으로 인정하였다.

226. 따라서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사건에서 재판소는 필요한 절차를 제공하는 사법 절차를 국가가 마련하여 국내 법원과 심판소가 사인 간의 분쟁에 실효적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Kotov v. Russia* [GC], 2012, § 114; *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2002, § 96;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2007, § 83; *Freitag v. Germany*, 2007, § 54; *Shesti Mai Engineering OOD and Others v. Bulgaria*, 2011, § 79; *Plechanow v. Poland*, 2009, § 100; *Ukraine–Tyumen v. Ukraine*, 2007, § 51; *Antonopoulou v. Greece* (dec.), 2021, § 57; *Nikolay Kostadinov v. Bulgaria*, § 54). 사인이 위험하게 활동하여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Kurşun v. Turkey*, 2018, §§ 123–124).

227. 이 원칙은 국가가 개인과 분쟁 중인 경우 더욱 강력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처리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Plechanow v. Poland*, 2009, § 100). 예를 들어, *Dabić v. Croatia*, 2021, § 55 사건에서 재판소는 당국이 재산을 압수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주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에 발생하는 손상 및/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부합하려면 실제 입은 손해의 범위가 불가피한 손해보다 넓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당국이 재산 보존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면 조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28. 판결 채무 집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은 재산 원상회복(*Păduraru v. Romania*, 2005, § 112), 수용(收用)에 대한 보상 지급(*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2000, §§ 109–111), 세입자 퇴거

및 주택 소유권 회복에 대한 법원 명령 집행(*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43–59; *Matheus v. France*, 2005, §§ 69–71; *Lo Tufo v. Italy*, 2005, § 53; *Prodan v. Moldova*, 2004, § 61) 같은 맥락에 있었다. 그리스 정부는 법원의 반대 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의 호텔을 점거한 이주자 등을 퇴거시키지 않은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2020, §§ 57–58 및 62–64 사건에서도 국가 책임이 제기되었다.

### 3. 집행 절차

229.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국가와 사적 채무자 모두를 상대로 한 집행 절차의 맥락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특히 국가에는 법률과 실무에서 모두 실효적인 판결 집행 체계를 구성하고 최종 판결 집행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가 부당한 지체 없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다(*Fuklev v. Ukraine*, 2005, § 91).

230.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액 집행 불능에 대해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 의무가 닿는 범위는 채무자가 국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다르다(*Anokhin v. Russia* (dec.), 2007; *Liseytseva and Maslov v. Russia*, 2014, § 183).

231.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개 국가는 해당 법원 결정을 시간에 맞춰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Anokhin v. Russia* (dec.), 2007; *Burdov v. Russia*, 2002, §§ 33–42). 국가에 불리한 판결 준수를 보장해야 할 부담은 판결의 구속력과 집행력이 발생한 날부터 주로 국가 당국이 져야 한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9).

232. 금전 청구권에 관한 사건에서 국가가 최종 사법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협약 제 6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모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제 6 조제 1 항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청구를 법원 또는 심판소에 제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구현하며, 이 중 한 가지 측면을 구성하는 것이 민사 문제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인 재판청구권이다. 그러나 체약국의 국내법 체계로 인해 구속력 있는 최종 사법 결정의 미집행 상태가 계속되어 일방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러한 권리는 그저 환상으로 그칠 것이다. 제 6 조제 1 항이 소송당사자에 보장되는 절차적 권리, 즉 공정하고 공개적이며 신속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도 사법 결정의 집행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제 6 조를 재판청구권과 소송 절차에만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면 협약을 비준할 때 체약국이 존중하기로 한 법의 지배 원칙과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법원이 선고한 판결의 집행은 협약 제 6 조의 목적상 “재판”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Hornsby v. Greece*, 1997, § 40; *Burdov v. Russia*, 2002, § 34).

233. 그러므로 구속력 있는 판결의 집행이 부당하게 오래 지연되는 것은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63; *Hornsby v. Greece, Hornsby*, 1997, § 40; *De Luca v. Italy*, 2013, § 66; *Burdov v. Russia* (no. 2), 2009, § 65). 예를 들어, 국영기업이라는 맥락에서 금전적 사법 결정액 지급이 1 년 미만으로 지연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협약에 부합하나 그 이상 지연되면 일정 불합리한 것이다(*Kuzhelev and Others v. Russia*, 2019, §§ 109–110).

234. 국가 당국이 자금 부족을 판결 채무 불이행의 핑계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사정에 따라 판결 집행 지연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지연이 제 6 조제 1 항으로 보호하는 권리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74). 마찬가지로, 국내 집행 절차 또는 국가 예산 체계가 복잡하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구속력 있고 집행 가능한 사법 결정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집행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70; *Süzer and Eksen Holding A.Ş. v. Turkey*, 2012, § 116).

235. 국가를 상대로 최종 판결이 선고된 사람이 별도의 집행 절차를 제기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Metaxas v. Greece*, 2004, § 19 및 *Lizanets v. Ukraine*, 2007, § 43; *Ivanov v. Ukraine*, 2006, § 46). 이러한 사건에서 판결 통지를 정식으로 받은 피고 국가 기관은 판결을 준수하거나 집행을 위해 다른 관할 기관에 이송할 때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Burdov v. Russia (no. 2)*, 2009, § 69). 승소한 소송 당사자는 국가가 판결을 자발적으로 집행하거나 강제 수단을 통해 집행하는 동안 판결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 특정한 절차적 단계를 수행해야 할 수도 있다(*Shvedov v. Russia*, 2005, § 32). 따라서 당국이 판결 집행을 허용하거나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은행 세부 정보 같은 추가 문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Kosmidis and Kosmidou v. Greece*, 2007, § 24). 그러나 채권자 협조 요구는 전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어떤 상황에도 당국이 자체적으로 적시에 조처해야 한다는 협약상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236. 예를 들어, *Skóríts v. Hungary, Skóríts*, 2014, §§ 43–44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유권 환수에 관한 결정을 집행 가능하게 하고 토지 대장의 오류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당국이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하고, 결정 후 10년이 지나야 마침내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므로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Vitiello v. Italy*, 2006, § 37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법한 건물을 철거하라는 국내 법원의 명령을 국가 당국이 집행하지 않자, 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하였다.

237. 재산의 원상회복이라는 맥락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기한 내에 집행하는 데 필요하다면 전부 조처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여기에는 토지에서 교회 철거가 포함된다(*Orlov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68–71; 아래 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장 참조).

238. *De Luca v. Italy*, 2013, §§ 49–56 사건에서, 청구인이 손해배상 판결 채무를 환수하기 위해 지방 당국을 상대로 집행 절차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공공 당국이 채무를 지불할 법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협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239. 기업을 “정부 조직”으로 보아야 할지 심사할 때, 그 기업의 국내법상 법적 지위는 기업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유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로 기업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기업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협약상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기업의 법적 지위(공법 또는 사법), 기업 활동의 성격(공적 기능 또는 일반 상업 활동), 기업이 운영되는 맥락(독점, 엄격한 규제 대상 사업 등), 기업의 제도적 독립성(국가가 소유한 정도)이다(*Liseytseva and Maslov v. Russia*, 2014, §§ 186–188 및 사건 내 인용된 참고 문헌)(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영 기업에 관한 장 참조).

240. 채무자가 사적 행위자인 경우, 대체로 국가는 사적 행위자의 채무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협약 조항에 따른 국가의 의무는 집행 서비스 또는 파산 절차 등을 통해 채권자에게 각 법원 판결액의 집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므로 입장이 다르다(*Anokhin v. Russia* (dec.), 2007; *Shestakov v. Russia* (dec.), 2002; *Krivenogova v. Russia* (dec.), 2004; *Kesyan v. Russia*, 2006, § 80).

241. 따라서 당국에 판결 집행을 위해 조처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정에 따라 협약 제 6 조제 1 항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Scollo v. Italy*, 1995, § 4; *Fuklev v. Ukraine*, 2005, § 84).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의 임무는 당국이 적용한 조치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채권자가 판결을 집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였는지 심리하는 것이다(*Anokhin v. Russia* (dec.), 2007; *Fuklev v. Ukraine*, 2005, § 84).

242. 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집행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다(*Kotov v. Russia* [GC], 2012, § 90; *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2019, § 171). 예를 들어, *Fuklev v. Ukraine*, 2005, § 92 사건에서 재판소는 집행관이 4년 훨씬 넘게 파산 집행 절차를 실효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집행이 최대 12년까지 지연된 *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2019, §§ 181–195 사건에서 재판소는 집행 절차의 복잡성, 청구권자의 수, 환수 대상 채무 총액, 채무회사의 태도 및 집행관 활동에 대한 가용 정보를 고려할 때, 집행관이 선택한 조치가 전 세계적으로 미친 효과는 협약 제 6 조제 1 항 및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국가에 부과된 요건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내 도산 법제에 따라 도산 절차 개시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 관련 청구권을 우선 청구권으로 보고 1년 기준을 벗어난 청구권은 우선순위에 없다면, 재판소는 ILO 입법을 참조하여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Acar and Others v. Turkey* (dec.), 2017, § 34).

243. 채무자의 빈곤으로 인해 개인 채무자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 집행 절차의 오류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해 국내 당국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한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Omasta v. Slovakia* (dec.), 2002; *Vrtar v. Croatia*, 2016, § 96).

244. 반면, 국내 당국이 집행 절차 비용 회수를 위해 채무가 전액 정산된 후 청구인의 재산 지분 매각을 진행한 경우 (*Mindek v. Croatia*, 2016, §§ 79–87) 또는 집행 절차에서 주택이 그 가치의 1/3에 매각된 경우(*Ljaskaj v. Croatia*, 2016, §§ 62–70)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마찬가지로, 미납 세금이 주택 가치의 일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한 명령 집행을 목표로 하는 절차의 여러 부분에 관련된 복수의 과세 당국 간 소통이 부족한 맥락에서, 세금 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주택을 매각하고 청구인을 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Rousk v. Sweden*, 2013, §§ 119–127).

## D.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그 외 협약 조항 간 관계

245. 한 사람이 “소유물”을 향유하는 것과 연계하여 제기되는 사안은 협약 내 다른 조항과도 관련될 수 있다.

### 1. 제 2 조<sup>1</sup>

246. 쓰레기 매립장에서 메탄 가스 폭발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집을 덮치는 바람에 청구인의 가까운 친척 9명이 사망한 *Öneryildiz v. Turkey* [GC], 2004, §§ 136–137 사건에서, 재판소는 예방 및 구제 조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협약 제 2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회원국의 적극적 의무를 구분하지 않았다.

247.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174, 214, 220 사건에서 재판소는 남오세티아 영역과 “완충지대”에 대한 적대 행위가 중단된 이후 재판소 판례가 의미하는 “실효적 지배”를 행사한 시점부터 러시아 연방은 해당 영역에서 일련의 비정규 민병대가 포함된 남오세티아 군의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행동별로 “상세히 통제”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재판소는 남오세티아 조지아 마을과 “완충지대”에서 민간인 살해, 주택 방화, 약탈과 관련하여 제 2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위배되는 행정 관행이 있었다는 결론이 합리적 의심에 그치지 않을 정도의 증거를 보유하고 있었다.

---

1. 제 2 조에 대한 해설서(생명권) 참조.

## 2. 제 3 조

248. 청구인이 자신의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청구를 제기한 *Pančenko v. Latvia* (dec.), 1999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이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생활 조건이 최소 수준의 심각성 요건에 도달하면 제 3 조에 위배되는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249. 연금이 너무 적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청구를 제기한 *Budina v. Russia* (dec.), 2009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청구인이 심각한 박탈 또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결핍을 겪는 상황에 국가가 무관심한 경우 제 3 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진정이 그 자체로 협약 조항의 물적 관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제 3 조에 따라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국가가 지급한 퇴직 연금액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심리하여 굴욕적인 대우 금지에 해당하는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50. *Georgia v. Russia (II)* [GC], 2021, § 2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2 조와 결합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판단한 외에도(위 참조), 피해자들이 심지어 하나의 민족 집단으로 표적이 되어 겪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 때문에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로 분류될 수 있는 학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정 관행이 협약 제 3 조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 3. 제 4 조<sup>2</sup>

251. 수형자에게 감형 조건으로 유급 노동과 무급 노동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협약 제 4 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Floroiu v. Romania* (dec.), 2013, §§ 35–38). 노령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수형자의 의무 노동은 협약 제 4 조제 3 항제(a)호가 의미하는 “구금 중 통상적인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노동”으로 간주되어야 한다(*Stummer v. Austria* [GC], 2011, § 132).

252. 마찬가지로, 수형자의 무급 노동은 “통상적인 구금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Zhelyazkov v. Bulgaria*, 2012, § 36). 다만, 재판소는 수형자의 무급 노동에 대한 태도, 특히 수형자의 노동에 공평하게 보상하라는 1987년 및 2006년 유럽교정시설규칙(2006년 규칙은 “모든 경우에”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변화하는 추세 반영)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노동은 2006년 규칙 채택 전이며 단기간이었다(*ibid.*, § 36).

## 4. 제 6 조<sup>3</sup>

253. 재산권 간섭 또는 보호와 관련된 국내 소송은 때때로 제 6 조제 1 항에 따른 사안을 제기한다. 실제로 재산권은 금전적 성격의 권리임이 명백하므로 사유 재산의 수용, 사용 규제 또는 그 외 금전이나 기타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결정은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Ltd v. the Netherlands*, 1995, § 67 – 특히 출원; *Raimondo v. Italy*, 1994, § 43 – 몰수). 나아가, 사법 결정 집행은 제 6 조의 목적상 “재판”的 필수적인 부분이다(위의 집행 절차에 관한 하위 항목 참조).

254. 그러나 재산권에 관한 민사 절차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되면 재판소는 협약 제 6 조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절차 기간 자체가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소송 기간에 대한 진정을 심리할 필요가 없거나(*Zanghi v. Italy*, 1991, § 23) 해당 사안이 시기상조라고 판결하였다(*Beller v. Poland*,

2. 제 4 조에 대한 해설서(노에제도 및 강제노동의 금지) 참조.

3. 제 6 조에 대한 해설서(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민사 영역](#) 및 [형사 영역](#) 참조.

2005, § 74). “공공 임대차”(프랑스어: “bail social”)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프랑스 당국이 청구인이 거주할 대안을 마련하라는(re-housing) 결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년 동안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제 6 조제 1 항의 모든 유용한 효과를 박탈했다고 판단하였다(*Tchokontio Happi v. France*, 2015, § 52).

255. 그러나 과도하게 장기화된 절차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절차의 지연(*Kunić v. Croatia*, 2007, § 67; *Machard v. France*, 2006, § 15) 또는 지연에 기여한 그 외 조치(*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59) 역시 청구인들의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후자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회사가 임차인과의 분쟁을 법원이 결정하게 할 수 있는 제 6 조에 따른 권리 또한 박탈당했다고 판단하였다(*ibid.*, § 74).

256. 재판소가 실효적 재판청구권 부재를 이유로 제 6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청구인은 제 1 의정서 제 1 조 하에서도 사건의 실제적 결과에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라면 재판소는 대개 청구인이 실효적인 재판청구권이 있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지 추측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이 청구인에게 있는지 및 그에 따라 해당 조항에 근거한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소가 판결할 필요는 없다(*Canea Catholic Church v. Greece*, 1997, § 50; *Glod v. Romania*, 2003, § 46; *Albina v. Romania*, 2005, § 43; *Lungoci v. Romania*, 2006, § 48; *Yanakiev v. Bulgaria*, 2006, § 82). 그러나 청구인 아파트를 법원 감독 하에 매각한 *Zehentner v. Austria*, 2009, § 82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법절차상 행위 능력(judicial capacity)이 결여된 청구인을 위한 절차적 보호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제 6 조에 따른 별도의 사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257. 청구인의 소유권에 관한 절차의 계류 도중 논란이 된 상황을 규제하는 새로운 소급법이 채택된다면, 그 법의 채택이 공익이라는 설득력 있는 사유로 정당화되지 않고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 제 6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Caligiuri and Others v. Italy*, 2014, § 33).

258.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최종 법원 결정액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제 6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의무가 모두 적용된다. 당국이 판결 집행을 위해 조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국의 부작위는 상황에 따라 제 6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근거하여 국가의 책임이 되기도 한다(*Fuklev v. Ukraine*, 2005, §§ 86 및 92–93; *Anokhin v. Russia* (dec.), 2007; *Liseytseva and Maslov v. Russia*, 2014, § 183).

259. 청구인에게 보상하라는 구속력 있고 집행가능한 판결을 감독 심사를 거쳐 취소하면, 그 사정이 아주 예외적이고 설득력 있지 않는 한, 판결의 최종성 원칙에 위배되며 제 6 조제 1 항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위반한다(*Davydov v. Russia*, 2014, §§ 37–39). 그러나 “법적 확실성”을 고려하는 바람에 사법 행정에서 발생한 대단히 심각한 오류를 국가가 시정하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Lenskaya v. Russia*, 2009, § 41). 예외적인 사정이란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국내 법원이 제 3 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선고한 경우와 같이 원 소송이 근본부터 불공정해질 정도로 심각한 결함으로 손상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일 때는 최종 결정을 취소하여도 협약을 위반하지 않는다(*Protsenko v. Russia*, 2008, §§ 30–34).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에서 심각한 오심을 바로잡기 위해 확정판결을 파기하는 경우(*Giuran v. Romania*, 2011, § 41) 또는 여러 사람이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전체 재산을 모두 원상회복하라고 판결한 경우(*Vikentijevik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4, § 70) 최종성과 정의의 이익이 상충하는 가운데 올바른 균형을 이룬 것으로 판단하였다.

260. 사법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사안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재판소가 심리하기도 하였다. 민사 절차 맥락에서 “패소자 부담” 규칙은, 그 목적이 잠재적 원고가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를 부담하지 않도록 설득함으로써 부당한 소송과 터무니없이 높은 소송 비용을 피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Klauz v. Croatia*, 2013, §§ 82 및 84) 이러한 견해는 해당 규칙이 국가가 당사자인 민사 절차에도 적용되어도 바뀌지 않는다는(법원 비용 부과가 청구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지 심사할 때 관련된 판례법 기준에 관한 *Cindrić and Bešlić v. Croatia*, 2016, §§ 96 및 107–109; 전쟁 범죄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Bursać and Others v. Croatia*, 2022, §§ 81, 95 및 100–101).

261. 청구인들이 수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지만 받은 보상금 전액을 타방에게 지급하여 그 비용을 충당해야 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행위나 절차적 행위가 수용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정도로 높은 법정 수임료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즉, 청구인들의 부담은 과도하였다(*Perdigão v. Portugal* [GC], 2010, § 78). 수용 절차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아 보상액이 크게 줄어든 *Musa Tarhan v. Turkey*, 2018, § 86 사건에서 청구인의 부담 역시 과도하다는 판단이었다. 마찬가지로 *National Movement Ekoglasnost v. Bulgaria*, 2020, § 83 사건에서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국내법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로 공정하고 정당한지 확인할 충분하고 타당한 이유 제시 없이 비용을 재정(裁定)한 국내 법원의 결정은 걸려 있는 다양한 이익 간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을 구성하였다. 검사가 제 3 자를 위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상환 거부도 협약 제 6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Stankiewicz v. Poland*, 2006, §§ 65–76). *Čolić v. Croatia*, 2021, §§ 67–69 사건에서 청구인은 신체를 폭행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피고의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개입이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다(사적 당사자에 대한 비용 상환 명령이 제 6 조 또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본 *Derbuc and Svečak v. Croatia* (dec.), 2022, §§ 36–391 사건과 비교).

262. 나아가, 재판소는 또한,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법원 소송 참가자가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규칙은 그 자체로 제 6 조제 1 항과 양립 불가능하다고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문제의 규칙을 적용한 효과는 제 6 조제 1 항과 양립 가능해야 한다(취약한 개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소송 관련 *Dragan Kovačević v. Croatia*, 2022, § 69).

263.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 없이 건축되었지만 그렇게 용인된 주택을 이후 30년간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린 사건에는 제 6 조 형사 영역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철거 조치는 협약의 목적상 “형벌”로 간주된다(*Hamer v. Belgium*, 2007, § 60).

## 5. 제 7 조<sup>4</sup>

264. 불법 부지 개발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몰수는, 청구인 회사 또는 그 대표자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해도, 협약 제 7 조가 의미하는 “형벌”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문제의 몰수가 일반 법률에 근거한 “형사 범죄”와 연결된 점, 형사 법원이 개발의 중대한 불법성을 확인한 점, 이탈리아 법률이 규정하는 제재가 주로 처벌을 통해 추가적인 법정 조건 위반 억제를 추구한다는 점, 법률이 불법 부지 개발에 대한 몰수를 형사 제재로 분류했다는 점, 그러한 제재는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점에 의거하였다(*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dec.), 2007). *G.I.E.M. S.R.L. and Others v. Italy*(본안) [GC], 2018, §§ 212–234 사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제 7 조가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265.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2009 사건에서 국내 법원은 청구인 회사들의 대표들이 받은 건축 허가를 해석할 때 일으킨 오류가 불가피하고 변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4. 제 7 조에 대한 해설서(죄형법정주의) 참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제 7 조의 목적상, 적용할 수 있는 입법 체계로 피고인이 형법의 의미와 범위를 알게 할 수 없으므로 불충분하였다. 결론적으로 형사법원이 명령한 재산 몰수는 제 7 조의 목적상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자의적 형벌에 해당한다. 같은 이유로, 몰수는 제 1 의정서 제 1 조도 위반하였다(*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2009, §§ 111–118 및 136–142). 소유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시효로 종단되었지만, 재산과 건물이 몰수된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였다(*Varvara v. Italy*, 2013, § 72).

266. *G.I.E.M. S.R.L. and Others v. Italy*(본안) [GC], 2018 사건에서는 이탈리아 법률에 규정된 대로 불법 부지 개발 사건에는 자동으로 몰수가 적용되었다. 재판소는 유죄성이나 과실의 정도 또는 최소한 청구인의 행위와 문제의 범죄 간 관계를 포함하여 여러 요소를 고려하며 개입의 비례성을 심사하였다.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에 관한 사법 절차에서 절차적 보장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으며,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효과적으로 다투기 위하여 개인이 자신의 사건을 소관 당국에 제기할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ibid.*, §§ 301–303).

267. *Ulemelek v. Serbia* (dec.), 2021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가지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범죄 수익 압수 및 몰수에 관한 2008년 법에 따라 1998년 불법 자금으로 구입한 주택이 몰수되어야 했다. 국내 법원은 범죄 자산 몰수가 본질적으로 형사 제재나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법 소급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추론하였다. 재판소는 “적법성” 요건이 일반적으로 입법부가 계속되는 사실 상황 또는 법률관계를 새롭게 규제하는 신규 소급 조항을 통해 재산 사용을 규제하거나 금전적 권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 몰수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있는 “적법성”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였다(*ibid.*, § 64).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에 대한 몰수 명령이 협약 제 7 조제 1 항 후문이 의미하는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제 7 조는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ibid.*, §§ 56–57).

## 6. 제 8 조<sup>5</sup>

268. 협약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관련된 다수의 사건은 주택과 관련이 있다. “주거”的 개념과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재산”的 개념은 상당히 중복될 수 있지만, “주거”的 존재는 재산 관련 권리 또는 이익의 존재와 무관하다(*Surugiu v. Romania*, 2004, § 63). 개인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상 특정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제 8 조가 의미하는 자신의 “주거”를 구성할 정도의 관계는 없을 수 있다(*Khamidov v. Russia*, 2007, § 128).

269. 청구인이 주택을 점유할 권리에 개입하면 제 8 조를 위반할 수도 있다. 재판소는 주거라는 관념을 폭넓게 해석한다(*Gillow v. the United Kingdom*, 1986, § 46; *Larkos v. Cyprus* [GC], 1999, §§ 30–32; *Akdivar and Others v. Turkey* [GC], 1996, § 88). 사업장 및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Niemietz v. Germany*, 1992, §§ 29–33).

270. *Larkos v. Cyprus* [GC], 1999, §§ 30–32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14 조와 결합한 제 8 조에 따라 사이프러스 국가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취소에 대한 청구인의 진정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전형적인 부동산 임대 계약의 특징이 다수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공무원인 청구인이 개인 임차인과 비교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청구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었다.

271. *Karner v. Austria*, 2003 사건은 협약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른 주거권에 관한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동성애 관계의 맥락에서 임대차 계약 상속인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 정당해지려면 그 사유가 특히 중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5. 제 8 조(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해설서 참조.

전통적인 가족 단위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성 부부를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위반으로 판단하였다(*ibid.*, §§ 38–42). 동거하는 동성 파트너에 관한 *Kozak v. Poland*, 2010, §§ 98–99 사건에서도 결론은 유사하였다(판례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986 비교; “부동산 임대” 참조).

272. *Rousk v. Sweden*, 2013, §§ 115–127 사건에서는 국세 확보를 위해 청구인의 주택을 법원 감독 하에 매각하고 그에 따라 퇴거시킨 것이 소유자의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보호하지 않았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협약 제 8 조를 모두 위반한 것에 해당하였다. 반면, *Vaskrsić v. Slovenia*, 2017, § 87에서는 124 유로의 최초 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해 청구인의 주택을 공매로 매각한 것이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에 해당하였다. 더 일반적으로, 채무 상황을 목적으로 한 주택의 강제 매각과 주거를 존중받을 권리의 조화는 *Vrzić v. Croatia*, 2016, §§ 63–68 참조.

273. *Gladysheva v. Russia*, 2011, § 93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전 소유자가 사기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선의를 구매자를 퇴거시킬 때 국내 당국이 문제된 조치의 비례성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한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개인의 정체성, 자기결정권, 신체적·도덕적 완전성, 타인과의 관계 유지, 지역사회에 자리 잡은 안전한 장소에 대해 제 8 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택 문제에서 국가의 인정 범위가 제 1 의정서 제 1 조로 보호되는 권리에 비해 제 8 조가 보호하는 권리에 대해 더 좁다는 점도 명시하였다(*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81–84; *Orlić v. Croatia*, 2011, §§ 63–70). 국내법에 따라 청구인의 점유권이 종료되었음에도 청구인의 주택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Cosić v. Croatia*, 2009, §§ 21–23) 및 주택이 계획 규정 위반을 알면서도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이 내려져 주택 상실이 임박한 경우에도 개별화된 비례성 심사가 필요하다(*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2016, § 53).

274. *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2014, §§ 205–211 및 272–275 사건에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주택 개혁과 그로 인해 박탈된 청구인들의 보호된 임차권이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심리되었다. 재판소는 보호된 임차권의 박탈이 주거 존중권에 대한 개입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제 8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동일한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마찬가지로, *Sorić v. Croatia* (dec.), 2000 사건에서 재판소는 주택 개혁하에서 임차인이라는 청구인의 위치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재산 매수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재산의 평화로운 소유만을 보장한다. *Galović v. Croatia*, (dec.), 2021, § 65 사건에서도 재판소는 소유주에 의해 주거에서 퇴거한 특별 보호 임차권자가 제기한 제 8 조에 따른 청구를 그를 위한 다른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Grozdanić and Gršković-Grozdanić v. Croatia*, 2021, §§ 109 및 115–1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별 보호 임차권 해지에 대한 실체법적 요건을 변경하지 않고 순전히 절차적으로 판례를 뒤집은 국내 법원의 매매 계약 무효 결정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제 3 자를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아파트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특히 이재민이 많은 전쟁 중에는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판결하였다.

275. 그 증거로, *Zrilić v. Croatia*, 2013, § 7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전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법원 감독 하에 매각하여 분할한 사법 명령이 제 8 조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관련하여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276. 청구인이 자신의 주거를 구성하는 아파트에서 전남편을 퇴거하지 못한 *Cvijetić v. Croatia*, 2004, § 51 사건에서는 장기화된 강제집행 절차를 이유로 제 6 조 및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었다.

277.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소유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제 8 조도 적용되는 공항 활주로 연장과 관련된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2012, § 184 참조). 나아가, 청구인들은 활주로 확장이 재산 가치에 미친 영향 유무와 그 정도를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따른 권리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ibid.*, §§ 188–190).

278. 주점의 야간 소란(*Uđovičić v. Croatia*, 2014, § 159) 또는 동네에 심한 소란이 반복되어 진정을 제기해도 당국의 실효적인 대응 부재를 이유로 제 8 조 위반을 판단한 사건에서(*Surugiu v. Romania*, 2004, §§ 67–69)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279.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주거지 파괴에 관한 사건에만 적용한다. *Selçuk and Asker v. Turkey*, 1998, § 77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주택이 보안군에 의해 고의로 파괴된 것을 고려하여 제 3 조, 제 8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임차 및 임대료 통제에 관한 장 참조.

280. 마지막으로, *Beeler v. Switzerland*, [GC], 2022, §§ 50–74 및 93–116 사건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홀로 자녀를 돌보는 남편은 막내가 성인이 되자 유족 연금이 중단되었지만, 아내인 경우 계속 수령하는 차별적 대우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사회복지 수당 수급권 차별 혐의에 관해 결정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제 8 조가 아니라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집중하여 분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Béláné Nagy v. Hungary* [GC] (§§ 74–70 및 86–89) 사건에 의거하여 재판소 판례가 제 1 의정서 제 1 조 적용 가능성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281. 재판소는 복지 혜택 영역에서 제 8 조에 따른 상황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현 사건에서 재판소는 첫째, 쟁점이 된 연금은 배우자 사망 후 일하지 않아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하여 가족생활을 촉진하는 연금이며, 둘째, 연금 수령이 해당 기간 내내 청구인의 가족생활이 정돈되는 방식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협약 제 8 조의 범위에 속하므로 협약 제 14 조를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어서 협약 제 8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7. 제 10 조

282.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1976, §§ 59 및 63 사건에서 청구인은 “10 대를 위한 빨간책(Little Red Schoolbook)”의 원판 및 수백 권의 복사본을 압수하고 국내 판결에 따라 몰수 및 후속 폐기한 것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압수의 취지가 관할 영국 당국이 재량권(power of appreciation)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해한 “도덕의 보호”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서적의 몰수와 파기로 청구인은 특정 “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후단이 승인하였으며, 이는 체약국에 공통된 법의 지배에 비추어 해석할 때, 불법적이고 공동의 이익에 위협하다고 적법하게 선고된 물품은 파기 목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켰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또는 협약 제 10 조는 위반되지 않았다.

283. *Öztürk v. Turkey* [GC], 1999, § 76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출판사가 출판한 책의 사본을 압수하고 파기한 것은 분리주의 선전물 유포에 따른 유죄판결의 일면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다(제 10 조에 따른 고려 사항). 따라서 몰수를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별도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284. 재판소는 *Ashby Donald and Others v. France*, 2013, § 40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에 개입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이 사안에서 논란이 된 조치가 평화로운 재산 향유권 같은 협약상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가 누리는 재량은 넓어진다고 판단하였다(*Neij and Sunde Kolmisoppi v. Sweden* (dec.), 2013).

## 8. 제 11 조<sup>6</sup>

285. 20 �ект아르 미만의 토지를 소유하고 수렵에 반대하는 청구인들이 자동으로 수렵 협회의 회원이 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수렵권이 협회로 이전된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85 및 117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협약 제 11 조가 모두 위반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9. 제 13 조

286. 협약 제 13 조를 적용하려면, 청구인들의 청구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청구에 관하여 결정하고 적절한 경우 손실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구제절차가 있어야 한다.

287. 당국이 청구인에게 영화관을 반환하지 않은 *Iatridis v. Greece* [GC], 1999, § 65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 13 조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이익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는데, 전자는 절차적 보호 조치, 즉 “실효적인 구제절차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후자에 내재하는 절차적 요건은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 존중이라는 더 넓은 목적에 부수적인 요건이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협약 제 13 조를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88. 마찬가지로, *Öneryıldız v. Turkey* [GC], 2004, §§ 156–157 사건에서 재판소는 쓰레기 처리장에서 메탄 가스가 폭발하여 파괴된 가재도구를 보상하는 행정 절차의 실효성과 관련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진정에서 제 13 조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한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2008, §§ 196–198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제기한 보상 청구를 관할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었고 국가가 긴급 구제의 일반 제도를 활용하여 조처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그 조와 결합한 제 13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289. 임대료 통제 사건인 경우, 재판소는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수준 상한과 관련된 *Marshall and Others v. Malta*, 2020, §§ 71–81 사건에서 퇴거 명령을 내리지 않거나 향후 임대료를 높여 책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적 구제 절차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3 조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Cauchi v. Malta*, 2021, §§ 52–55 및 58–64 사건에서 청구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건물을 계속 점유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한 주거 조례가 소유자인 자신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수 없게 하면서 사실상 무기한으로 일방적인 임대차 관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 구제 절차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국내 법원이 마련한 구제책이 청구인을 충분히 구제하지 못하여 협약 제 13 조를 단독으로도,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하여서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90. *Driza v. Albania*, 2007, §§ 115–120 사건에서 과거 소유자 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기구 및 절차 측면에서 적정한 원상회복 계획을 설정하지 못한 점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3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291. 마지막으로,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2015, §§ 213–215 및 *Sargsyan v. Azerbaijan* [GC], *Sargsyan*, 2015, §§ 269–274 사건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 중 손실된 주거와 재산에 대해 청구인들이 제기한 협약에 따른 진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구제 성공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구제 절차가 없는 점도 협약 제 13 조 위반이었다.

---

6. 제 11 조(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해설서 참조.

## 10. 제 14 조

292. 제 14 조에 따른 차별 금지를 발동하려면 협약이 보호하는 다른 실체적 권리와 연계되어야만 가능하다.

293.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비교 대상인 집단과 상당히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었는지 심리한다. 그러나 대우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전부 제 14 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유사한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인지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인정 범위를 누린다. 인정 범위는 정황, 쟁점, 배경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경제 또는 사회 전략에 따른 일반 조치라면 협약에 따라 허용되는 재량이 대체로 넓은 편이다(*Špoljar and Dječji Vrtić Pčelice v. Croatia* (dec.), 2020, §§ 33–36).

294.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권한은, 그 범위가 넓은 경우도 있겠지만, 차별적인 방식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청구인이 특정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14 조에 등장하는 차별적 사유로 거부당한 경우, 청구인이 청구를 제기한 차별적인 사유만 없었다면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국내법에 따라 집행가능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었을지 여부가 관련 판단 기준이 된다(*Fabris v. France* [GC], 2013, § 52; 또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Šaltinytė v. Lithuania*, 2021, § 59 참조).

295. *Marckx v. Belgium*, 1979, § 65 사건은 혼외 자녀 차별이 쟁점이 된 획기적인 사건이다. 재판소는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낳은 청구인은 혼인한 경우와 비교하여 자유로운 재산 처분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고 판결하였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단독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딸에 대해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96. 마찬가지로, *Mazurek v. France*, 2000, § 54 사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보호”는 국가가 추구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기는 하지만, 간통 관계로 생긴 자녀에게 지급하는 상속금을 감액하는 법률은 재산권 행사에서 해당 자녀를 부당하게 차별한다고 판결되었다(*Fabris v. France* [GC], 2013, §§ 68–72; 또한 상속인으로 지정될 권리와 관련하여, 동거 자매인 경우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65; 비거주자 연금 상향 조정에 관해서는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90; 및 종교적인 결혼에서 사별한 아내의 유족 연금 수급권과 관련하여서는 *Serife Yiğit v. Turkey* [GC], 2010, § 86 참조).

297. 무슬림인 유언자가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장의 수혜자인 청구인이 비무슬림 유언자가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장 수혜자와 비교하여 받은 대우의 차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았다(*Molla Sali v. Greece* [GC], 2018, § 161).

298. 이와는 반대로, *Stummer v. Austria* [GC], 2011, §§ 132–136 사건에서는 연금 수급권 산정 시 교도소에서 한 노역을 고려하지 않아도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된 제 14 조 위반을 일으키지 않았다(이 장에서 위 제 4 조 참조). 나아가, *P.C. v. Ireland*, §§ 53–54 및 93 사건에서는 수감 중인 청구인의 노령 연금 수령을 배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제 1 의정서 제 1 조만을 따른 청구인의 진정 사항이 심리적격인지에 관한 재판소의 판단은 위의 “사회복지 급여/연금” 참조), 해당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299. *Chabauty v. France* [GC], 2012, § 47 사건에서, 소규모 토지소유자는, 대규모 토지소유자와 달리,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승인된 수렵 협회의 관리 범위에서 자신의 토지를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된 제 14 조 위반은 아니다(*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1999, § 95 와 비교).

300. *Guberina v. Croatia*, 2016 사건은 중증 장애 아동의 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매각한 후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매각한 아파트가 해당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넓고 기반 시설(전기, 난방)도 갖추고 있었다는 이유로 세금 감면을 거부당한 사건이다. 세무 당국은 승강기가 없는 아파트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족의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자녀의 장애를 고려하여 세법을 가족의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기본적으로 당국이 장애 기반 고려 사항과 의무를 폭넓게 고려하지 않아 세법 해석에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기계적으로 접근하여 해당 가족의 실제하는 상황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 98).

301.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2019, §§ 97 및 101–105 사건은 사회주택 부문에서 “침실세”로 알려진 주수당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청구인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그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한 사건으로, 첫 번째 청구인은 장애가 있는 딸을 돌보고, 두 번째 청구인은 가정폭력 피해자로 “자택 피난처 제도(Sanctuary Scheme)” 아래에 보호받고 있었다. 이 조치의 취지는 입주자들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입주자의 자격보다 침실이 더 많은 경우 임대 보조금을 삭감하였다. 재판소는, 과거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고안된 과도기적 조치의 맥락을 벗어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통합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법적 대우를 다르게 설정하는 데 있어 누리는 인정 범위는 상당히 줄어든다고 강조하였다. 재판소는 차별 혐의가 장애와 성별에 근거한 것이고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선의로 행해진 과도기적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경우, 논란이 된 조치가 정당해지려면 그 사유가 대단히 종대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임대로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재량적 주거지원비(Discretionary Housing Payments, DHP)로 첫 번째 청구인 사건에서 대우의 차이가 정당화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두 번째 청구인은 그 경우가 달라서, 가정 폭력 피해자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 다른 제도에 속해 있었으며, DHP로는 이러한 목표와 이사를 장려하는 침실세의 목표 간 상충하는 점을 해결할 수 없었다.

302. 국적을 구분 기준으로 삼은 *Andrejeva v. Latvia* [GC], 2009, § 88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1991년 이전 라트비아 영역(領域)에서 구소련 당국에 고용된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라트비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라트비아 법원이 거부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인정되었다. 그 후, 이와 유사하게 청구인들이 “영주권이 있는 비시민권자”였던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2022, §§ 189–220 사건에서는 소련 시절 라트비아 이외의 다른 소련 공화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연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Andrejeva v. Latvia* [GC], 2009 사건 이후 청구인들은 연금 재산정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1년 라트비아 헌법재판소는 논란이 된 규칙이 라트비아 헌법 및 협약과 양립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안드레이예바(Andrejeva) 사건과 청구인들 간 분명한 선을 그었다. 안드레이예바는 분쟁 기간 라트비아 영역에 거주한 반면, 청구인들은 그 당시 라트비아와 법적 연고를 맺기 전에는 라트비아 영외에서 일하였다. 재판소는 수십 년간 불법 점령과 병합을 겪은 후 국가의 독립성 회복이라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국적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정당화하는 이유를 “매우 중대한” 것으로 인정하고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안드레이예바 사건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 재판소는 재정적 혜택에 관한 문제에서 법적 신분 또는 시민권에 관한 사적 선택의 중요성과 더불어 몇 가지 요소를 사용하여 재량의 범위를 적절하게 결정하였다.

303. *Fábián v. Hungary* [GC], 2017 사건에서 재판소는 급여의 출처, 국내법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고용을 별개로 취급한다는 사실, 청구인의 공공 부문 직업이 민간 부문 직업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의 고용주로서 고용 조건을 정하는 것과 연금 기금 관리자로서 연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라는 점 등 제도적, 기능적 이유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고용 사이에 상당한 법적, 사실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ibid.*, §§ 131–132; *Panfile v. Romania* (dec.), 2012, § 28). 또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공

부문 내에서도 고용된 범주가 다른 연금 수급자 간 대우 차이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Gellérthegyi and Others v. Hungary* (dec.), 2018, §§ 34–40).

304.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2020, §§ 75–76 및 78 사건에서 재판소는 두 집단이 “부분적으로 유사하거나 상당히 전적으로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먼저 심리하지 않은 채로, 민간인과 군인 간 장애 혜택 제공에 차이가 있는 것은 두 집단이 상처를 입은 방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판결하였다. 특히, 관련된 대우의 차이는 국가가 참전 용사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는 도덕적 부채의 결과였다. 군 복무 중 상처를 입은 참전 용사는 국가가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높아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참전 용사들의 부상은 또한 이러한 위험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고, 소송을 통해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 해도 비용 부담이 컸다. 반면에 민간인들은 그러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상황에서 상처를 입었으며, 대부분 사고, 질병 또는 제 3 자의 행위로 인한 부상이었다.

305. *Špoljar and Dječji Vrtić Pčelice v. Croatia* (dec.), 2020, §§ 38–46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청구인들의 진정에 대해, 사립 유치원과 공립 유치원은 부분적으로 유사하거나 상당히 전적으로 유사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공립 유치원은 지방 정부가 설립한 기관으로서 유아 교육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립 유치원은 사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유아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서비스를 대가로 한 일정한 수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306. *Jurčić v. Croatia*, 2021, §§ 55 및 77–85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외수정(IVF) 시술 열흘 후 고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서 청구인이 임신 관련 합병증을 이유로 병가를 내자 국내 관련 당국이 청구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IVF 직후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 상태와 관련된 금전적 이점만을 얻으려 했기에 해당 고용은 허구이며, 이에 따라 병가로 인한 급여 보상 요청과 함께 피보험자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보험 신청이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임신을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거나 고용 관련 혜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307. *Šaltinytė v. Lithuania*, 2021 사건에서 미성년 미혼모인 청구인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서 저소득 “저연령 가족” 대상 주택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법에 규정된 연령 상한을 넘었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재판소는 이민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상쇄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이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공공 정책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았다(*ibid.*, § 74). 재판소는 재판소의 역할은 보조적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배우자 또는 한부모가 35 세 미만인 가정에 추가 주거 지원을 제공하기로 할 때 국가에 주어진 폭넓은 재량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법적 규제는 비록 더 젊을 때 자녀를 갖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국가의 실제 인구학적 상황을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ibid.*, §§ 77–82).

308. 나아가, *Anderlecht Christian Assembly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Belgium*, 2022, §§ 36–40 및 50–55 사건은 여러 여호와의 증인 회중에 관한 사건이다. 이들은 브뤼셀 지역의 새로운 법안이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하지 않는 범주인 “공인된 종교”에 속해야만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차별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 9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와 결합한 제 14 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 협회를 종교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해당 법률로부터 받는 영향은 제 9 조 및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갈 정도라고 판결하였다.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차별에 대한 보호 조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규칙이 적용되는 “공인된 종교”라고 인정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09. 마지막으로, *Advisory Opinion P16-2021-002*, 2022, §§ 88–111 사건은 사유지에 대한 수렵권 행사 및 국내 환경법에서 그 설립에 근거한 토지 소유자 협회 간 대우 차이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유관 조치의 정당한 목적, 적법성 및 비례성 심사 기준을 요청하는 프랑스 국사원(Conseil d'Etat)에 지침을 제공하였다.

### III. 구체적 사안

#### E. 임대차 및 임대료 통제

310. 협약 및 그 의정서는 숙박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주거권과 관련된 다수의 사건은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관련된 협약 제 8 조에 따라 심리되었다(위의 제 8 조에 관한 하위 항목 참조). 제 1 의정서 제 1 조 하에서 협약 기구는 임대인의 권리와 국내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권리 간 균형,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정한 재판 보장 및 임차인의 퇴거에 대한 보장, 차별 금지 사안 등에 관한 여러 사건을 처리하였다.

311.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권 간 균형에 관한 첫 번째 사건은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사건이다. 이 사건은, 장기임대개혁법에 더하여, 20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지주 귀족의 일원이 남긴 유언장에 따라 상당한 부동산의 수탁자로 지명되었다. 문제가 된 일부 부동산의 세입자가 장기임대개혁법에 따라 취득권을 행사하여 수탁자의 재산권을 박탈하였다. 수탁자들은 부동산의 강제 이전과 이후 받은 보상 금액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312. 재판소는 입법부가 사회·경제 정책을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는 넓어야 하며, 무엇이 “공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법부의 판단에 합리적인 근거가 명백히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였다(*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 46). 재판소는 주택 관련 사회적 불공정 완화는 장기임대개혁법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표이며, 이는 입법부의 인정 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다. 국가가 시행한 조치의 비례성에 대해,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에게 취득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령이 이 권리를 입법부가 보기에 가장 심각한 어려움의 사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한, 가치가 덜한 재산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ibid.*, § 70; 협약 제 14 조는 § 77).

313. 마찬가지로, *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89 사건에서, 다수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거나 소유권이 있던 임대인들은 임대차법에 따른 법정 임대료 인하 도입이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위반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진정이 제기된 법률을 평가하면서 공공의 관심사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사회·경제 정책(이 경우 주택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였다. 재판소는 오스트리아 의회가 사회 정의를 위해 기존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합리적이며, 해당 법률에 따른 임대료 인하가 상당하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안는 부담이 비례성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ibid.*, § 57). 또한, 임대료 제한의 맥락이지만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밴드가 사용하는 건물인 경우, 재판소는 클럽의 문화적, 사회적 역할이 공익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다른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자유 시장 임대 가치에 비해 상당한 감액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Bradshaw and Others v. Malta*, 2018, § 58).

314. 반대로, 좀 더 최근 사건인 *Lindheim and Others v. Norway*, 2012 사건에서는 필지임대차법(Ground Lease Act)이 개정되어 주거 또는 별장으로 사용되는 토지의

임차인에게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로 인상 없이 이전 임대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다. 재판소는 2002년 임대료 규제 해제로 인해 다수의 무주택 임차인의 임대료가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치의 비례성에 대해 재판소는 소유주에게 부과된 필지 임대 계약 연장은 임대료가 유의미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없고 기간도 무기한이었으므로, 해당 임대 차에서 임대료 수준을 심사하는 데 있어 토지의 실제 가치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임차인만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제 3 자에게 임차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었으며, 임차인의 양도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임대료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임대료 수준에 대한 규제는 무기한 유효하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소유자는 공정한 시장 가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여 재산에 대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효적으로 박탈당하였다. 결과적으로, 재판소는 임대인에게만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부과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법률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다(*ibid.*, §§ 128–134).

315. *The Karibu Foundation v. Norway*, 2022, §§ 75–94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노르웨이 의회는 *Lindheim and Others v. Norway* 사건에서 재판소 판결에 대응하여 1996년 필지임대차법(2004년 개정)을 채택하여 임대인에게 연간 임대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청구인은 특정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필지 임대료를 인상하려고 하였다. 임차인들은 당시 필지 임대료가 위 법의 “임대료 상한액”을 이미 초과하였다고 언급하며 이 청구권에 반대하였고, 이 사건은 *Lindheim and Others*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Lindheim and Others* 사건에서 내린 구체적인 심사 결과는 해당 판결 이후 채택된 법률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입법부도 분명 법안을 확정할 때 협약 요건을 철저히 심사하여 재판소 판단을 완전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 후 협약 요건은 전반적으로뿐만 아니라 청구인 조직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서도 광범위한 사법 심사(세 단계)를 거쳤다.

316. *Edwards v. Malta*, 2006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유주의 권리 향유에 제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소유주의 연립주택 및 인접한 밭을 정부가 무주택자 거주용으로 강제 수용하였다. 소유주는 30년 가까이 재산을 박탈당하였으나 보상으로 받은 임대료는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국가의 강제 수용이 세입자 선정이나 임대차 계약의 기본 조건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소유자에게 비자발적인 임대인–세입자 관계를 강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보상으로 정해진 임대료 수준은 자기 재산에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소유자의 정당한 이익을 만족시킬 정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강제 수용은 타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데 드는 사회적, 재정적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유자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과도한 부담을 지웠다(*ibid.*, § 78).

317. *Immobiliare Saffi v. Italy* [GC], 1999, § 56 사건 및 수많은 후속 사건에서 재판소는 세입자의 퇴거 대기 기간이 대단히 길다는 이유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협약 제 6 조에 따라, *Edoardo Palumbo v. Italy*, 2000, §§ 45–46).

318. 비슷한 맥락에서, 적절한 공정 재판 보장 부재와 관련하여, *Amato Gauci v. Malta*, 2009, § 63 사건에서 재판소는 임대차 만료 시 소유자가 자택을 되찾을 수 없고 부동산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좌절되는 것과 관련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19. 퇴거에 대항하는 세입자 보장 사항과 관련하여, 로마족의 생활 방식이 위태로운 경우인 *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81–84 사건 및 *McCann v. the United Kingdom*, 2008, § 53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8 조에 따라 주거를 잃을 위험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독립적인 심판소에서 해당 조치의 비례성을 판단받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는 국내법상 점유권이 종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Connors v. the United Kingdom*, 2004, § 100 사건에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별도의 사안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20.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2016 사건에서 국내 당국은 고령의 미혼 부부인 청구인들이 수년간 거주한 주택이 건축 허가 없이 지어져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철거 명령을 내렸다. 재판소는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청구인들의 개인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그러한 심사 없이 철거 명령을 집행할 경우 제 8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 61–62). 그러나 해당 주택이 고의로 무허가 건축되어 국내 건축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ibid.*, § 75).

321. *Baykin and Others v. Russia*, 2020 사건은 지하 파이프라인 근처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고 거주자를 퇴거하라는 국내 법원의 명령에 관한 사건으로, 건물과 파이프라인 사이 안전거리 100 미터를 준수하지 않아 불법 건물이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러한 개입에 대한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ibid.*, §§ 70–74). 이에 반해 *Alif Ahmadov and Others v. Azerbaijan*, 2023, §§ 36–46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무단 건축물을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종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의 정황상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실체적 이익을 청구인에게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는 물적 심리부적격이라고 선언하였다.

322. 나아가, *Durini v. Italy*, 2014 사건에서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특정한 부동산에 거주할 권리는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확립한 일반 원칙은 정규군인 청구인이 임대 계약이 아닌 특별 행정 양식에 서명함으로써 마드리드에 있는 군 숙소를 사용하게 된 *J.L.S. v. Spain* (dec.), 1999 사건과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 국가로의 전환 및 변화와 관련된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도 따랐다(*Kozlovs v. Latvia* (dec.), 2000, *Kovalenok v. Latvia* (dec.), 2001; *H.F. v. Slovakia* (dec.), 2003; *Bunjevac v. Slovenia* (dec.), 2006).

323. 청구인들에게 국가 또는 사회 주거권을 부여하는 최종 판결의 미집행과 관련되어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된 다수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권”이 집행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구성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이른바 “사회적 임차 계약”에 따른 입주권을 부여하는 집행 가능한 판결을 내리거나 그 외 방식으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게 하여 청구인들이 금전적 자산을 취득할 “정당한 기대”가 확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Teteriny v. Russia*, 2005, §§ 48–50; *Malinovskiy v. Russia*, 2005, §§ 44–46; *Ilyushkin and Others v. Russia*, 2012, §§ 49 및 58, *Akimova v. Azerbaijan*, 2007, §§ 40–41;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2014, §§ 182–83; *Kukalo v. Russia*, 2005, § 61; *Sypchenko v. Russia*, 2007, § 45). 나아가, *Olaru and Others v. Moldova*, 2009, §§ 54–57 사건에서 재판소는 현지 공공 당국이 청구인들에게 사회주택을 제공하라고 명하는 최종 법원 판결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은 제도 때문에 발생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24. *Tchokontio Happi v. France*, 2015, §§ 59–61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앞서 언급한 *Teteriny v. Russia*, 2005 및 *Olaru and Others v. Moldova*, 2009 사건과 구별하였다. 재판소는 *Durini v. Italy* (dec.), 2014 및 *J.L.S. v. Spain* (dec.), 1999 사건에서 법리의 흐름에 의거하여(제 1 의정서 제 1 조 – “소유물” 적용가능성에 관한 장 참조) 최종 판결로 당국이 청구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특정 조건 하에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국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었다. 따라서, 금전적 자산을 취득할 정당한 기대가 없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청구는 (제 6 조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양립할 수 없는 물적 관할로 각하되었다.

325. 나아가, 구 유고슬라비아의 “특별 보호 임차권” 제도에서 비롯된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반 임대차와 비교하여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 상황을 처리하였다. 계승국들은 “특별 보호 임차권”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법적으로 변형하여 각자 그 정도가 다른 보호

임대차로 전환하였다. *Blečić v. Croatia* [GC], 2006, § 92 사건 및 *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2014, § 135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른 근거로 사건이 처분되었으므로 “특별 보호 임차권”이 “소유물”을 구성하는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26. *Gaćeša v. Croatia* (dec.), 2008 사건에서 재판소는 크로아티아에서 특별 보호 임차권은 크로아티아가 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폐지되었으므로 그러한 임차권 자체를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소유물”로 간주할 수 있는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Mag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2 사건에서 재판소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그러한 임차권 소유자라면 전쟁 이전의 아파트를 환수하고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자격이 있는 것이 규칙이므로 “특별 보호 임차권”이 “소유물”을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크로아티아가 협약 및 그 의정서를 비준하기 전에는 국내에서 특별 보호 임차권 소유자가 더 이상 아파트를 구매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재판소는 이 사건을 *Gaćeša v. Croatia* (dec.) 2008 사건과 구별하였다.

327. 획기적인 사건인 *Hutten-Czapska v. Poland* [GC], 2005 사건에서 재판소는 동전의 반대편에 있는 상황, 즉 이전 체제하에서 수용된 재산을 되찾았으며 임대료 통제 제도에 청구를 제기한 소유자들의 권리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이때부터 재판소는 *Bittó and Others v. Slovakia*, 2014 사건, *Statileo v. Croatia*, 2014 사건 및 *R & L, s.r.o.,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14 사건 등 여러 유사한 사건을 처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통제는 이전 정권이 몰락한 다음 회원국이 제정하였다. 특권적 임차권을 받은 해당 재산의 아파트 세입자들은 이전 정권이 붕괴된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며, 국가는 임대료가 보통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아지도록 규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건에서 재판소는 소유주들이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경제·사회적 사정이 다른 경우인 *James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1986 및 *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89 사건과 비교). 따라서 재판소는 *R & L, s.r.o.,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14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개인 임차인인 청구인이 국가 임대료 통제 제도에 따라 처음 임대한 아파트를 점유하려면 인상된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국내 법원의 명령이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또한 *Pařízek v. the Czech Republic*, 2023, §§ 51–60 참조).

328. 마찬가지로, *Radovici and Stănescu v. Romania*, 2006 사건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과거 주정부 임차권이 있던 세입자들에게 새로운 임차권을 제공하였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안한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이후 집주인은 퇴거 명령을 신청했지만, 법정 양식을 준수하지 않아 실패하였다. 또 다른 결과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었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다.

329. *Kasmi v. Albania*, 2020, §§ 76, 79 및 85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유화되었다가 가족에게 반환된 재산에서 세입자 퇴거를 위한 민사 소송을 시작하였다. 국내 법원은 세입자 네 명 중 세 명이 “법정 무주택자”로서 특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당시 국가의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퇴직자 등 사회의 취약한 부분과 형편이 좋지 않은 인구 구성원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하였다. 비례성 분석과 관련하여, 법으로 부과된 임대 계약, 그러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적정한 제도 부족, 법으로 정해진 낮은 임대료, 청구인이 처한 오랜 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30. 유효한 법정 권원 없이 아파트를 점유한 세입자가 퇴거 명령 이후 4 년 반 이상 청구인의 아파트에 거주한 *Wyszyński v. Poland*, 2022, §§ 36 및 40–41 사건에서, 재판소는 책임 심사 기준 및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국내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부과한 요건이 과도한 부담에 해당하여 본질적으로 청구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331. 마지막으로, 주거용 건물에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난방 시스템에 연결되지 않은 아파트 소유주에게도 민간 난방 공급업체에 내도록 국가가 부과하는 고정 요금이 *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0, §§ 82–88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재판소는 개인 사건별로 난방의 간접 사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고, 국내 법원은 절차적 보호 조치를 충분히 적용하여 서로 경쟁하는 이익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한 균형을 맞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 F. 사회 복지 사건

332. 위원회와 재판소는 연금 수급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보장/국가 혜택에 관한 여러 사건을 다루었다. 관련 판례를 종합적으로 요약한 내용은 *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80–89 및 *Yavaş and Others v. Turkey*, 2019, §§ 39–43 참조.

333.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사회 부조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재정적 혜택의 수준을 사정하거나 심사할 때 원칙적으로 국가 당국을 대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Larioshina v. Russia* (dec.), 2002; *Šeiko v. Lithuania*, 2020, § 32).

334. 연금 권리와 관련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특정 금액의 연금에 대한 권리(여러 당국 가운데 예를 들어, *Skórkiewicz v. Poland* (dec.), 1999; *Janković v. Croatia* (dec.), 2000; *Kuna v. Germany* (dec.), 2001; *Lenz v. Germany* (dec.), 2001; *Blanco Callejas v. Spain* (dec.), 2002;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 39; *Apostolakis v. Greece*, 2009, § 36; *Wieczorek v. Poland*, 2009, § 57; *Poulain v. France* (dec.), 2011; *Maggio and Others v. Italy*, 2011, § 55;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84), 피청구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행된 활동과 관련된 연금에 대한 권리 및 실제로 연금에 대한 어떤 권리(*Aunola v. Finland* (dec.), 2001;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30)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가 연금 제도 창설을 결정할 경우, 협약 제 14 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06, § 53, *Andrejeva v. Latvia* [GC], 2009, § 77;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2002, § 180).

335. 노령 연금 제도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Ackermann and Fuhrmann v. Germany* (dec.), 2013 사건에서 의무적 기여금이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인지 고려하여 이 사건은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재판소는 기여금이 총수입의 약 19%에 달하며, 청구인과 고용주가 동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였다.

336. 사회보험 혜택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고 해도 적어도 취소될 때까지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Moskal v. Poland*, 2009, § 40; 제 1 의정서 제 1 조 – “소유물” 적용가능성에 관한 장 참조). 재판소는 사정에 따라 사회보장 수급 자격의 축소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그러한 조치의 비례성을 결정할 때 재판소가 고려하는 요소로는 삭감한 목적, 당국이 사회 보장 제도에서 손실 제한을 추구했다는 사실, 청구인들이 노령 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었다는 점, 통상적인 제도에 따른 연금 수급자들과 비교하여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 조치가 소급 적용되지 않은 점, 청구인들의 근속 기간이 법정 기여 기간 계산에 산입되었다는 점 등이 있었다(*Yavaş and Others v. Turkey*, 2019, §§ 47–50). 강제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누군가가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하여 그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해당 제도의 납부 자격 조건 또는 혜택이나 연금의 액수를 바꿀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Richardson v. the United Kingdom* (dec.), 2012, § 17;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85–89).

337. 그러나 혜택 금액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공익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소유물”에 대한 개입을 구성한다(*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 39–40; *Rasmussen v. Poland*, 2009, § 71; *Moskal v. Poland*, 2009, §§ 51 및 64;

*Grudić v. Serbia*, 2012, § 72;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84; *Philippou v. Cyprus*, 2016, § 59).

338. 재판소의 입장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사회보험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가 연금 수급권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이다(*Domalewski v. Poland* (dec.), 1999;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 39; *Wieczorek v. Poland*, 2009, § 57; *Rasmussen v. Poland*, 2009, § 75;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91 및 97; *Maggio and Others v. Italy*, 2011, § 63; *Stefanetti and Others v. Italy*, 2014, § 55). 비례성 분석과 관련하여(*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42), 재판소는 보통 연금이 전부 박탈되면 제 1 의정서 제 1 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Stefanetti and Others v. Italy*, 2014, § 59; *Apostolakis v. Greece*, 2009, § 41), 반대로 합리적이고 비례성이 있다고 보는 감액 부과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았다(*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42; *Arras and Others v. Italy*, 2012, § 82; *Poulain v. France* (dec.), 2011; *Philippou v. Cyprus*, 2016, § 68; *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117).

339. 그러나 재판소가 실시하는 사회보험 맥락에서 공정한 균형 심사는 추상적인 손실의 금액이나 비율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재판소는 사건별 배경에 따라 유관 요소를 모두 심리한다(*Béláné Nagy v. Hungary* [GC], 2016, § 117 및 *Stefanetti and Others v. Italy*, 2014, § 59). 사회보험 영역에서 개입의 비례성 심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로는 자격 상실의 차별적 성격(*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2004, § 43), 조건의 자의성(*Klein v. Austria*, 2011, § 55), 청구인의 선의(*Moskal v. Poland*, 2009, § 44; *Čakarević v. Croatia*, 2018, §§ 60–65; *Casarini v. Italy*, 2021, § 74), 청구인의 유죄판결로 인해 매월 노령 연금이 지급되는데 생계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사실(*Šeiko v. Lithuania*, 2020, §§ 32–35) 등이 있다.

340. 사회보험권 맥락에서의 공정한 균형 심사에서 절차적 보호 조치의 중요성은 청구인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기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의 원본 서류 재심사를 근거로 번복된 사건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실로 알 수 있다(*Moskal v. Poland*, 2009, § 56).

341. 혜택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과도기의 존재 여부는 피청구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비례성 요소이다(*Lakićević and Others v. Montenegro and Serbia*, 2011, § 72; 청구인이 사실상 하루 아침에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조기 퇴직 연금을 완전히 상실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인 *Moskal v. Poland*, 2009, § 74).

342. 혜택 정지 또는 중단 결정에 소급효가 있는 경우, 이는 개입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가중치를 받는 요소가 될 것이다(*Lakićević and Others v. Montenegro and Serbia*, 2011, § 71;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Moskal v. Poland*, 2009, § 69).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을 소급하여 재산정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연금법을 한결같이 적용하면 국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이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선고한 사법 판결을 소급하여 재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재산정 후 소급은 청구인에게 개인적이고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부합하지 않는다(*Bulgakova v. Russia*, 2007, § 47). 혜택 지급 중단 또는 감액 결정 이전에 수령한 금액을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비례성 심사와 관련된다(*Iwaszkiewicz v. Poland*, 2011, § 60, 비교 및 대조, *Chroust v. the Czech Republic* (dec.), 2006; *Moskal v. Poland*, 2009, § 70). *Romeva v. North Macedonia*, 2019, §§ 78 및 88 사건에서 청구인은 연기금이 연금 수급 자격 최초 심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이유로 청구인이 7년간 수급한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박탈하고,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재판소는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정부에 미상환금에 대한 강제 집행 자체를 요청하였다.

343. 시간의 흐름은 사회보험 혜택의 법적 존재와 성격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 및 사회 부조가 필요한 사람의 범주에 대한 변화하는 견해에 대응하여 채택될 수 있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상황이 달라지는 것에도 적용된다(*Wieczorek v. Poland*, 2009, § 67).

344. 청구인의 형사 유죄 판결을 근거로 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어 청구인이 취득한 권리가 전부 박탈된 경우,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Apostolakis v. Greece*, 2009, § 39). 반대로,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를 65% 감액한 경우, 감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3 단계 사법 절차가 존재하고 청구인의 범죄가 예외적인 중범죄임을 고려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Banfield v. the United Kingdom* (dec.), 2005; *Philippou v. Cyprus*, 2016, §§ 70, 71 및 74).

345. 과거 공산주의 엘리트, 정치 경찰 또는 군대 출신이 누렸던 연금 수급권에 대한 특권적 지위 향유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재판소가 여러 차례 심리하였다(*Goretzky v. Germany* (dec.), 2000; *Lessing and Reichelt v. Germany* (dec.), 2012; *Schwengel v. Germany* (dec.), 2000; *Domalewski v. Poland* (dec.), 1999; *Janković v. Croatia* (dec.), 2000). 과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수급자들이 수행했던 역할을 이유로 한 급여 삭감은 많은 경우에, 특히 청구인들이 진정을 제기한 조치가 권리의 실제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고 삭감이 평균적으로 25%~30%를 초과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이 폴란드의 평균 연금 이상을 계속 수령했기 때문에,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Cichopek and Others v. Poland* (dec.), 2013, §§ 152 및 156).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탄압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보안부가 수행한 정치적 역할을 비난하려고 법률을 제정한 결과 청구인들이 사회 보험 혜택에 대한 특권적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재판소는 사회 보험 혜택이 비례성을 상실하거나 자의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러한 사건은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하였다(*Skórkiewicz v. Poland* (dec.), 1999; *Styk v. Poland*, 위원회 결정; *Bienkowski v. Poland*, 위원회 결정, 1998). 이러한 사건에서는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과거 특권층의 권리를 박탈하는 국내법 채택 사이에 거의 2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해당 조치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 것으로 인정되었다(*Cichopek and Others v. Poland* (dec.), 2013, § 118).

346. 나아가 청구권자의 건강 문제로 유급 고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하는 수당도 해당 유자격자에게 장기간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다. 노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건강 상태는 시간이 가면 악화되거나 나아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장애 연금 수급자들이 여전히 노동에 부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의 건강 상태를 재심사하는 조치를 국가가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러한 재심사는 법률에 부합하고 절차적 보장이 충분히 수반되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애 연금 수급자가 해당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 연금 수급 자격이 유지된다면 이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험제도에 기여금을 내는 사람들, 특히 유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할 것이다. 더욱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연금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공적 자금의 부적절한 배분도 제재할 수 있다(*Wieczorek v. Poland*, 2009, § 67; *Iwaszkiewicz v. Poland*, 2011, § 51).

347. 그러나 청구인의 노동 적합성을 잘못 심사하고 그에 따른 법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결과 장애 연금이 중단된 것은, 사회 정의와 공정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잘못된 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데도 (기판력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보상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준 것으로 간주되었다(*Grobelny v. Poland*, 2020, §§ 67–71).

348. 다른 유형의 사회 복지 혜택과 관련하여, 위태로운 입법 개혁에 더해 청구인의 대기 기간 수당을 금액이 훨씬 적은 장애 수당으로 대체한 경우인 *Krajnc v. Slovenia*, 2017, §§ 49–51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특히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장애 혜택의 상당

부분을 잊는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장애인의 무료 의약품 수급 자격에 관한 *Fedulov v. Russia*, 2019, §§ 76–79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입법 변경으로 인해 촉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모든 기준에 부합하였고, 자격이 중단되지 않는 것이 청구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자금 부족을 이유로 국가 당국이 거부한 것은 궁극적으로 법의 지배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비례성 심사는 필요하지 않았다.

349. 다양한 긴축 조치를 적용하여 특정 사회보험 및 급여 수급 자격이 감소한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재판소는 진정이 제기된 조치의 일반적인 맥락(경제 위기)과 그 범위를 고려하였다(연금 비율은 변경되지 않고 3년간 지급액이 감소함. 따라서 개입으로 인해 시간과 범위 모두 제한됨 – *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2013, §§ 28–29). 최근 그리스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예외적인 경제 위기의 존재로 정당화된 연금 삭감 등과 관련된 비슷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조치의 비례성이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사안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 46–49, 긴축 조치에 관한 장 참조).

350. 재판소는 일부 체약국이 연금의 목적에 따라 공무원과 민간 고용인을 구분하는 것을 인정하였다(유족 연금 관련 *Matheis v. Germany* (dec.), 2005; *Ackermann and Fuhrmann v. Germany* (dec.), 2013;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117; *Panfile v. Romania* (dec.), 2012, § 28 및 보다 최근 사건인 *Giavi v. Greece*, 2013, § 52; *Fábián v. Hungary* [GC], 2017, §§ 131–132). 이 접근 방식의 논리는 두 제도 간의 구조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서로 다른 규제를 정당화한다(*Matheis v. Germany* (dec.), 2005 및 더욱 일반적으로 다양한 피보험자 범주 간 차이에 관한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2010, § 84)(*Fábián v. Hungary* [GC], 2017 사건에 대해 제 14 조에 관한 하위 항목 참조).

351. 덜 유리한 신규 입법이 연금수급권 취득에 수반되는 조건을 소급하여 재심사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을 박탈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로 위반을 판단할 정도는 아니다. 법정 연금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법부가 현행 법률에서 파생된 연금 권리를 신규 소급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Khoniakina v. Georgia*, 2012, §§ 74 및 75; 및 또한 *Arras and Others v. Italy*, 2012, § 42; 제 6 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미지급된 연금액을 재정(裁定)하는 최종 판결의 집행 불능에 관한 *Sukhobokov v. Russia*, 2006, § 26; *Bakradze and Others v. Georgia* (dec.), 2013, § 19).

352. 건강 보험 제도에 가입하여 건강 보험 계약의 유지 또는 갱신을 기대하는 것은 소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Ramaer and Van Villingen v. the Netherlands* (dec.), 2012, § 81).

353. 지급액 감액과 관련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관한 사건에 통상 적용되는 원칙은 급여 또는 복지 혜택에 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Savickas and Others v. Lithuania* (dec.), 2013, § 91; *Stummer v. Austria* [GC], 2011, § 82).

354. 나아가, *Valverde Dígon v. Spain*, 2023, §§ 76–81 사건 및 *Domenech Aradilla and Rodríguez González v. Spain*, 2023, §§ 107–112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 당국이 신규 자격 요건의 예측불가능한 소급 적용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유족 연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다.

355. 마지막으로, *Bernotas v. Lithuania*, 2024, §§ 104–113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냥 도중 사고로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지급된 노동 능력 상실 관련 연금을 청구인이 사회보장 당국에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절차가 상충하는 이해관계 사이의 공정한 균형을 확립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권한 있는 당국에 자신의 사건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이해하였다. 비례성 심사에서는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 G. 은행 사건

356.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저축의 가치 감소 또는 저축 회수 불가능성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사건에서 발동되었다.

357. 예금 계좌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개혁의 결과 그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수 있다. 청구인들의 저축 가치 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재산취득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Grishchenko v. Russia* (dec.), 2004), 저축의 체계적인 지수화를 통해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의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 일반적인 국가 의무가 동 조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Gayduk and Others v. Ukraine* (dec.), 2002; *Appolonov v. Russia* (dec.), 2002; *Todorov v. Bulgaria* (dec.), 2008; *Poltorachenko v. Ukraine*, 2005, § 38; *Zbaranskaya v. Ukraine* (dec.), 2005; *Sherstyuk v. Ukraine* (dec.), 2006; *Boyajyan v. Armenia*, 2011, § 54; *Ryabykh v. Russia*, 2003, § 63; *Dolneanu v. Moldova*, 2007, § 31). 마찬가지로, 협약은 인플레이션 및 기타 경제 현상의 영향에 대처하는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입법 또는 사법 결정을 선고하여 그러한 상황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다(*O.N. v. Bulgaria* (dec.), 2000). 청구인들이 과도한 법정 소송 기간과 장기간에 걸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인해 청구권의 실질 가치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청구는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되었다(*Köksal v. Turkey* (dec.), 2013, § 38; *Grozeva v. Bulgaria* (dec.), 2005; *O.N. v. Bulgaria* (dec.), 2000).

358. 청구인의 주식 가치 감소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이 분야에서 체약국이 누리는 폭넓은 인정 범위를 고려할 때, 재판소는 폴란드 국립 은행이 택한 조치는 은행에 자산을 맡긴 은행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은행이 파산하면 고객에게 수반될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피하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하였다(*Olczak v. Poland* (dec.), 2002).

359. 나아가, 국가 당국이 민간 은행을 인수하는 것은 이전 은행 주주들의 재산권에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Süzer and Eksen Holding A.Ş. v. Turkey*, 2012, §§ 143–144). 이러한 개입은 적법성, 정당한 목적 추구 및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다. 은행 인수 결정이 해당 국가의 은행 부문 통제 조치임이 명백한 경우, 재산 박탈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2 항을 적용해야 한다(*Süzer and Eksen Holding A.Ş. v. Turkey*, 2012, §§ 146–147). 재산권에 그렇게 개입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재판소는 공동체 일반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와 관련 개인의 기본권 보호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Cingilli Holding A.Ş. and Cingillioğlu v. Turkey*, 2015, §§ 49–51).

360. 그러나 후자의 사건인 *Cingilli Holding A.Ş. and Cingillioğlu v. Turkey*, 2015, § 50 사건은 은행규제·감독위원회 결정으로 데미르방크(Demirbank, 당시 터키 5 대 민간 은행)의 양도 및 매각에 관한 것이었다. 재판소는 적법성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개입의 비례성 심리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어진 정당한 배상 판결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한 후 개정된 국내법에 따라 적절한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의 일부를 종료하였다(*Ibid.*, § 53).

361.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크로아티아 정부가 크로아티아 은행의 회생 및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여 은행 주주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회수 및 소각한 것이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크로아티아 은행의

주식 1,251 조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개입이 자의성을 방지하는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적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국가의 절차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의견에 동의하였다(*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80–88 및 110).

362. 은행 면허 취소와 관련된 절차에서 재판소는 “소유물”의 평화로운 향유에 개입하면 이 조항이 보장하는 권리를 방해하는 조치에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관련 개인 또는 단체가 책임 있는 당국에 사건을 제시할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적 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할 때는 해당하는 사법·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134 또한 *Project-Trade d.o.o. v. Croatia*, 2020, § 82 참조).

363. 은행 계좌 동결은 대체로 재산 사용 제한 수단으로 본다(범죄수익법상 몰수를 목적으로 한 자산가압류와 관련한 *Raimondo v. Italy*, 1994, § 27; *Luordo v. Italy*, 2003, § 67; 파산자의 재산 관리 및 처리 권한 박탈에 관한 *Valentin v. Denmark*, 2009, §§ 67–72; 과거 공적 은행이었던 두 개의 은행에서 임원 및 이사를 역임한 청구인의 자산을 장기간 동결하는 임시 금지 명령 및 제한사항 심사 요소에 관한 *Karahasanoğlu v. Turkey*, 2021, §§ 144 및 150–153; 은행 계좌 동결에 관한 *Trajk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01; 인권 옹호자와 그의 비정부기구 은행 계좌 동결에 관한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2021, § 66). 20년 이상 청구인들의 저축 인출 불능 및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은행 계좌 동결은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99 사건의 일반 규칙 하에 심리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364. 은행 청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 지급 불능에 빠진 은행의 관리인이 파산 전에 은행 운영 방식과 관련된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청구 가능성을 예상하여 자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한, 관리인의 은행 계좌 동결은 적법하고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International Bank for Commerce and Development AD and Others v. Bulgaria*, 2016, § 123).

365. 은행의 안정성과 예금자 및 채권자의 이익은 강화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국가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넓은 재량을 누린다(*Capital Bank AD v. Bulgaria*, 2005, § 136; *Karahasanoğlu v. Turkey*, 2021, § 150).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은행 관리자의 은행 계좌를 6개월이라는 엄격하게 제한된 기간 동안 동결하는 것은 그러한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는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International Bank for Commerce and Development AD and Others v. Bulgaria*, 2016, § 124).

366. 재판소에 제소된 여러 사건은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연방공화국(SFRY) 시절 예치된 후 동결된 “구(舊)” 외화 예금에 관한 것이었다. 독립 이후, 유고 연방을 승계한 국가들은 이전에 유고 연방 보장했던 저축을 규제하기 위하여 저마다 다른 법적 해결책을 찾았다(다른 피청구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의 개요는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24–52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외화 저축은 관련 은행의 자금 부족, 법에 의한 계좌 동결, 청구인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예금 보유자들이 저축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국가 당국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367. 재판소는 유고 연방이 해체되기 전에 상업 은행에 예치한 외화 저축으로 발생한 청구권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에 해당하며(*Suljag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09, §§ 34–36), 구소련이 발행한 국가 프리미엄 대출 채권에 대한 저축

투자와 관련하여 러시아 연방에 대한 청구권 (*Yuriy Lobanov v. Russia*, 2010, §§ 32–34) 또는 소련 저축 은행이 발행한 채권과 증서도 마찬가지라고 판결하였다(*Boyajyan v. Armenia*, 2011, § 57).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은 “소유물”로 간주될 수 있다(*Jasinskij and Others v. Lithuania*, 위원회 결정, 1998).

368. 그러나 라트비아 청구인들이 소련 시절 대외경제활동은행에 예치한 동결된 외화 청구권에 대해서 재판소는 그러한 청구권을 수락하거나 인정한 흔적이 전혀 없는 라트비아에 은행의 행위가 귀속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하였다(*Likvidējamā p/s Selga and Vasījevska v. Latvia* (dec.), 2013, §§ 94–113).

369. 입법 조치가 “구” 외화 저축을 국채로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 공익과 청구인의 재산권 및 동일한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재산권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이를 필요성을 고려한 재판소는 선택한 수단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 달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특히, *Trajk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2002).

370. 국가가 채택하기로 한 “구” 외화 저축의 지급에 관한 조치가 무엇이든, 법의 지배와 적법성 원칙에 따라 협약당사국은 각자 제정한 법률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존중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구” 외화 저축에 관한 국가 법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피청구국은 그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Suljag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09, § 57).

371. 공동체 일반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건 사이에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심사할 때 재판소는 협약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고 쟁점이 되는 다양한 이익을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법, 행정 또는 당국이 적용하는 관행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은 국가의 행위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실제로 공동의 이익이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공공 당국은 적절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적시에 조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 일부 지역이 정당화될 수도 있지만, 이 특정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슬로베니아와 세르비아 당국은 이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공동의 이익과 청구인들의 재산권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두 피청구국과 관련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8 및 124–125).

372. 지역은 재산권에 대한 개입의 합리성을 심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이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배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08).

373. 국가 당국이 채택한 조치가 청구인의 자금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재산 사용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의 재량도 제한된다. 예를 들어, 입법 조치가 수개월의 지역을 초래하는 경우 불충분하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Suljag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09, § 64).

374. 또한 청구인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거” 외화 저축의 맥락에서 “소유물”的 평화로운 향유권에 대한 개입을 구성하였다(*Jeličić v. Bosnia and Herzegovina*, 2006, § 48).

375. 마지막으로, *Pintar and Others v. Slovenia*, 2021 사건은 2013 년~2014 년 슬로베니아 중앙은행이 여러 주요 자국 은행에 대해 취한 특별 조치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모든 주식 또는 후순위 채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소각하는 결과를 낳았다(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의 “회사 주식 및 금융상품” 참조). 재판소는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각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소유물에 대한 개입이 자의성을 방지하는 충분한 절차적 보장을 수반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지 않았다. 나아가, 실효적인 구제절차 제공은 유럽연합법의 다양한 원칙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복잡한 질문과 얹혀 있었으며, 이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의 선결적 판결이라는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ibid.*, §§ 101 및 109–111).

## H. 과세

376. 과세는 해당인의 소유물, 즉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을 박탈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전단이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개입이다(*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2008, § 59; *Špaček, s.r.o., v. the Czech Republic*, 1999, § 39; *Bežanić and Baškarad v. Croatia*, 2022, § 60).

377. 납세 목적의 개입은 대체로 세금 또는 기타 기여금 납부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의 제 2 항에 따라 정당화된다(*Gasus Dosier- und Fördertechnik GmbH v. the Netherlands*, 1995, § 59; *Christian Religious Organization of Jehovah's Witnesses v. Armenia* (dec.), 2020, § 43). 수입품에 대한 관세 또는 부가 요금은 과세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는 공권력의 특권에서 핵심을 이루는 문제이다(*Krayeva v. Ukraine*, 2022, § 28).

378. 그렇지만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올바른 적용은 재판소의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Orion-Břeclav, S.R.O. v. the Czech Republic* (dec.), 2004).

379. 과세 분야에서 “법”이라는 말을 할 때,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협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 동일한 개념을 언급하는 것이며, 이는 판례법뿐만 아니라 성문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특히 접근가능성 및 예측가능성 같은 질적 요건을 의미한다(*Špaček, s.r.o., v. the Czech Republic*, 1999, § 54).

380. 조세 확보를 위한 조치가 포함된 개입 사례는 공동체 공동의 이익이 요구하는 바와 개인의 기본권 보호 요건 사이에 “공정한 균형”을 이루어어야 한다. 이러한 균형 달성을 있어 사용된 수단과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우려는 후문을 포함하여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구조 전체에 반영되어 있다(*“Bulves” AD v. Bulgaria*, 2009, § 62; *Waldner v. France*, 2023, § 42). 결론적으로, 세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책임이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재정 상태에 근본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소유권 보장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Ferretti v. Italy*, 위원회 결정, 1997; *Wasa Liv Ömsesidigt, Försäkringsbolaget Valands Pensionsstiftelse and a group of approximately 15,000 individuals v. Sweden*, 위원회 결정, 1988; *Buffalo S.r.l. in liquidation v. Italy*, 2003, § 32; *Iofil AE v. Greece* (dec.), 2021, § 34).

381. 국가는 경제·사회 전략의 일반적인 조치인 경우 협약에 따라 대체로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며(*Wallishauser v. Austria (no. 2)*, 2013, § 65), 조세 분야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Bulves” AD v. Bulgaria*, 2009, § 63; *Gasus Dosier- und Fördertechnik GmbH v. the Netherlands*, 1995, § 60; *Stere and Others v. Romania*, 2006, § 51). 재판소는 합리적인 근거가 결여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법부의 평가를 존중한다(*Gasus Dosier- und Fördertechnik GmbH v. the Netherlands*, 1995, § 60).

382. 나아가, 적법성 심사에 따라 국가가 재정적으로 기능할 때는 어느 정도의 존중과 재량 범위를 추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이다(*Christian Religious*

*Organization of Jehovah's Witnesses v. Armenia* (dec.), 2020, § 50; *Bežanić and Baškarad v. Croatia*, 2022, § 64).

383. 무엇보다도 국가 당국이 부과하고자 하는 세금 또는 기여금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분야의 결정에는 대체로 협약이 회원국의 권한에 맡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며, 이는 협약 기구보다 국내 당국이 심사하는 것이 더 나은 문제이기 때문이다(*Musa v. Austria*, 위원회 결정, 1998; *Baláž v. Slovakia* (dec.), 2003; *Azienda Agricola Silverfunghi S.a.s. and Others v. Italy*, 2014, § 103; *R.Sz. v. Hungary*, 2013, §§ 38 및 46; *Christian Religious Organization of Jehovah's Witnesses v. Armenia* (dec.), 2020, § 45). 또한 과세 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과 납세 의무를 집행할 구체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부의 몫이다(*Cacciato v. Italy* (dec.), 2018, § 25; *Guiso and Consiglio v. Italy* (dec.), 2018, § 44). 특히 부가가치세(VAT) 부과 같은 복잡한 영역에서는 피청구국에게 특히 넓은 재량 범위를 부여해야 한다(*Christian Religious Organization of Jehovah's Witnesses v. Armenia* (dec.), 2020, § 51).

384. 게다가, 국내법 준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재판소의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협약이 해당 법률의 규칙을 “통합”하는 분야에서도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은 먼저 국가 당국, 특히 법원이 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 당국이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재판소의 역할은 그러한 해석의 효과가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이 원칙은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법률 영역과 관련된 사건에 특히 적합하다(*Iofill AE v. Greece* (dec.), 2021, § 42; 또한, 판매 상품에 대한 영수증 미발급에 대해 세무 당국이 부과한 제재를 국내 법원이 심사한 경우인 *S.C. Zorina International S.R.L. v. Romania*, 2023, §§ 52 55 참조).

385. 과오납 세금의 환급 지연은 위반에 해당한다(*Buffalo S.r.l. in liquidation v. Italy*, 2003, § 39 – 재판소는 5년~10년에 이르는 지연이 청구사의 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그저 정산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할 수 없고, 납세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상황을 해결할 법적 수단 부재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함).

386.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 해당 실체법 위반이라고 국내 당국이 인정한 과오납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청구인 회사가 국가에 대해 제기한 청구권이 부정되고 청구인 회사의 평화로운 “소유물” 향유권을 보호할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국내 절차가 없다면 공정한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S.A. Dangeville v. France*, 2002, § 61).

387. 수용에 대한 보상과 상속세 계산을 위해 산정한 재산 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자의성을 이유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Jokela v. Finland*, 2002, § 65).

388. 조세 입법이 소급적 성격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예: 특정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소급입법, *M.A. and 34 Others v. Finland* (dec.), 2003).

389. 조세 절차의 맥락에서 채무자가 불복할 경우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 집행 조치는 국가의 넓은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용인할 수 있다고 본다지만, 개인이 불복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자신의 이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절차적 보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관련 공공 당국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정도로 합리적인 수준의 의사소통을 서로 주고받았는지 여부이다(*Rousk v. Sweden*, 2013, § 124).

390. 세율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로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판소는 청구인의 세율을 심리한다(*R.Sz. v. Hungary*, 2013, § 54). 문제가 된 수익이 발생할 당시 시행 중인 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기대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M.A. and 34 Others v. Finland* (dec.), 2003).

391. 해고된 공무원의 퇴직금에 대해 총 52%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세율이 다른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실직으로 인해 상당한 소득 손실을 본 점, 세금은 청구인의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사하지 않고 고용주가 퇴직금에서 직접 공제하였고 실질 과세 연도 이전에 발생한 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부과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N.K.M. v. Hungary*, 2013, §§ 66–74). 반면, 선적률의 관세 과세가격에 대한 최대 30%의 부가가치세는 양적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청구단체의 종교 서적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청구인의 권리 보호와 세금 확보라는 공익 간 균형을 깨뜨리지 않았다(*Christian Religious Organization of Jehovah's Witnesses v. Armenia* (dec.), 2020, §§ 53 및 55).

392. 청구인 회사가 자회사에 보유하던 주식 일부를 매도한 후 재매수한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국내 법원의 국내법 해석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징세라는 공익과 청구사의 평화로운 재산 향유권 간 공정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특히 유가증권의 매도/매수가 같은 날이 아닌 다른 영업일에 발생하였으며, 국내법은 이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ofil AE v. Greece* (dec.), 2021, §§ 43–48).

393. 또한 조세 소송의 맥락에서, 재판소는 관련 소송에서 절차적 보호 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중시한다(*Agosi v. the United Kingdom*, 1986, § 55 비교). 개인이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공급망에서 사기성 남용에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거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의 수급자로 법규를 완전히 준수한 자에게 그가 통제할 수도 없고, 관련하여 감시하거나 법규를 준수하게 할 수단도 전혀 없는 공급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지운 사건에서는 공정한 균형이훼손되었다(*"Bulves" AD v. Bulgaria*, 2009, §§ 67–71).

## I. 토지 계획

394. 도시 또는 지역 계획 문제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도시 및 지역 계획 정책은 특히 국가가 공동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규제하며 개입하는 전형적인 분야이다. 이처럼 공동체 일반의 이익이 우선하는 경우, 재판소는 오로지 민권만 문제되는 경우보다 국가의 재량이 더 넓다는 견해를 취한다(*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2004, § 70; *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89, § 55; *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2001, § 104).

395. 재판소는 공간 계획의 맥락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때로는 수년간 부과된 제한 사항에 관한 여러 사건을 심리하였다(*Skibińscy v. Poland*, 2006, § 98; *Skrzyński v. Poland*, 2007, § 92; *Rosiński v. Poland*, 2007, § 89; *Buczkiewicz v. Poland*, 2008, § 77; *Pietrzak v. Poland*, 2008, § 115; *Hakan Ari v. Turkey*, 2011, § 36; *Rossitto v. Italy*, 2009, § 37; *Maioli v. Italy*, 2011, § 52; *Hüseyin Kaplan v. Turkey*, 2013, § 38; *Ziya Çevik v. Turkey*, 2011, § 33). *Jahn and Others v. Germany* [GC], 2005, §§ 100–105 사건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영구적으로 부과되고 보상을 받을 권리도 없었지만, 사정이 예외적인 경우 이 조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자체에 대한 보상 청구 불능과 더불어 건축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에 관한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건축 의사를 보이지 않았거나 건축 금지로 재산의 용도를 변경해야 했다고 입증하지 못한 경우(*Scagliarini v. Italy* (dec.), 2015) 또는 용도 변경 없이 청구인이 건축 허가 신청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경우(*Galtieri v. Italy* (dec.), 2006) 청구 사건은 심리부적격으로 선언되었다. 다른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건축 사업이 없는 경우에도 입법부가 수용에 대한 보상 권리 to 규정하는 법률을 먼저 제정하였지만, 이후 해당 법률의 발효를 반복하여 연기했다는 이유로 위반으로 판단하였다(*Skibińscy v. Poland*, 2006, § 78).

396. 공공 당국이 개발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토지 소유자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는 구조를 만든 것은 “소유물”의 평화로운 향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Belvedere Alberghiera S.r.l. v. Italy*, 2000, § 59).

397. 재판소는 도시 계획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에 따르는 어려움은 사회주의 법질서와 재산 체제에서 법의 지배 및 시장 경제와 양립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및 전환과 관련된 모든 복잡한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입법자들이 막대한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해서 협약 및 그 의정서에서 도출된 의무에서 회원국을 면제할 수는 없다(*Schirmer v. Poland*, 2004, § 38; *Skibińscy v. Poland*, 2006, § 96).

## J. 범죄 수익 몰수

398. 다수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인한 불법적인 부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다양한 조치를 심리하였다.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에는 범죄를 물리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폭넓은 재량이 있으며, 여기에는 출처가 불법으로 추정되는 재산 몰수(*Raimondo v. Italy*, 1994, § 30; *Riela and Others v. Italy*(dec.), 2001; *Arcuri and Others v. Italy*(dec.), 2001;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2015, § 108), 불법 자금으로 구매한 재산(*Ulemejk v. Serbia*(dec.), 2021), 범죄 수익(범죄의 산물)(*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2001; *Sillickiené v. Lithuania*, 2012;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2015), 범죄의 목적물이었던 재산(범죄의 목적물)(*Agosi v. the United Kingdom*, 1986; *Sun v. Russia*; *Ismayilov v. Russia*, 2018) 또는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이 의도된 재산(범죄의 수단물)(*Andono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5; *B.K.M. Lojistik Tasimacılık Ticaret Limited Sirketi v. Slovenia*, 2017; *S.C. Service Benz Com S.R.L. v. Romania*, 2017; *Butler v. the United Kingdom*(dec.), 2002; *Markus v. Latvia*, 2020, § 69, 및 다양한 상황을 요약하는 *Todorov and Others v. Bulgaria*, 2021, §§ 189–199) 등이 포함된다.

399. 회원국의 법제에 따라 이러한 몰수는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조건으로 하는 형사 절차 또는 특정 조건을 지키는 경우 형사 절차 외의 절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다른 특별 절차는 가해자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범죄에서 비롯되었다는 단순한 추정에 근거하여 몰수하는 절차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확장 몰수라고 하며 일반 몰수의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형태로 본다. 나아가, 이탈리아는 특히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적 성격의 예방적 몰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과 같은 특정 관할권에서는 몰수에 대한 민법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몰수 모형은 가해자의 유죄 여부가 아니라 재산의 출처에 따라 몰수를 결정한다.

400. 재판소는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2015, § 105 사건에서 부패, 자금 세탁, 마약 범죄 등과 같은 종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몰수는 형사 유죄 판결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먼저 몰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유럽 공통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편적인 법적 기준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부당한 취득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적법한 출처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사 소송을 포함한 비형사적 몰수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전환될 수 있다.셋째, 직접적인 범죄 수익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범죄 수익을 전환 또는 변형하거나 다른 합법적인 자산과 혼합하여 얻은 소득 및 기타 간접 이익이 포함된 재산에 대해서도 몰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몰수 조치는 범죄 혐의가 직접적으로 의심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제의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 자신의 부당한 역할을 위장하기 위해 선의 없이 소유권을 가진 제 3 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401. 초국가적 범죄라는 맥락에서, 재판소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사기/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요청에 따라 몰타에 있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동결 명령한 *Shorazova v. Malta*, 2022, § 111 사건에서 조직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엔 국제범죄조직방지협약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재판소는 협약에 따른 상호 법률 지원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내 법원은 유럽 협약 권리 보호에 존재하는 명백한 결함에 대해 심각하고 증명된 청구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준용, *Avotijš v. Latvia* [GC], 2016, § 116).

402. 몰수 조치는 문제의 재산을 사용하여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며 이득을 보게 하지 않겠다는 일반의 이익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 허용할 수도 있다(*Ulemeč v. Serbia* (dec.), 2021, § 66).

403. 재판소는 또한 대량의 현금이 자금 세탁, 마약 밀매, 테러·조직범죄 자금 조달, 탈세, 기타 심각한 금융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다양한 국제 조약에 따라 국경을 넘는 현금 이동을 탐지하고 감시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할 정당한 이익과 의무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국경을 넘을 때 현금을 신고하지 않아서 몰수하는 것은 공동체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Karapetyan v. Georgia*, 2020, § 34).

404. 몰수는 그 본질상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지만, 재판소는 몰수를 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2 항이 의미하는 재산 사용 제한으로 취급한다(*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1976, § 63; *Agosi v. the United Kingdom*, 1986, § 51; *Karapetyan v. Georgia*, 2020, § 32; *Aktiva DOO v. Serbia*, 2021, § 78)

405. 실제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2 항은 특히 체약국이 벌금을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재산 사용 제한을 허용한다. 따라서,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 수익 몰수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2001, § 51; 또한 협약 제 7 조에 따른 *Welch v. the United Kingdom*, 1995, § 26; 협약 제 6 조에 따른 *Van Offeren v. Netherlands* (dec.), 2005 참조). 제 1 의정서 제 1 조 제 2 항은 제 1 항 전문에 있는 사용된 수단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 관계가 존재하기를 요구하는 일반 원칙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2001, §§ 51–52; *Balsamo v. San Marino*, 2019, § 81).

406. 해당 자산이 불법 취득으로 보이지 않거나, 적법한 출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형사 고발과 무관하게 몰수 조치한 경우에도 동일한 접근 방식을 적용하였다(*Raimondo v. Italy*, 1994, § 27; *Riela and Others v. Italy* (dec.), 2001; *Sun v. Russia*, 2009, § 25; *Arcuri and Others v. Italy* (dec.), 2001; *C.M. v. France* (dec.), 2001; *Air Canada v. the United Kingdom*, 1995, § 34; 민사 소송에서 적용되는 몰수에 관한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2015, §§ 94 및 97; 자금 세탁 절차 관련 *Balsamo v. San Marino*, 2019, § 81; 본질적으로 범죄로 보이지 않는 범죄 수익의 압수 및 몰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시된 후속 절차에 관한 *Ulemeč v. Serbia* (dec.), 2021, §§ 62–68).

407. 나아가, 재판소는 청구인의 재산이 몰수된 경우 해당 몰수도 그 취득 방식 및 범죄와의 관련성에 관계없이 형사 처벌로서 재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취급하였다(*Markus v. Latvia*, 2020, §§ 69–70; 자세한 내용은 위의 적법성 원칙에 관한 장 참조).

408. 예외적으로, 재판소는 범죄 도구 몰수가 제 3 자의 재산과 관련이 있고 영구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개입을 소유물 박탈로 분석하였다(또한 위의 사용 규제에 한 장 참조; *Andono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2015, § 36; *B.K.M. Lojistik Tasimacılık Ticaret Limited Sirketi v. Slovenia*, 2017, § 48; *Yaşar v. Romania*, 2019, § 49; 2021).

409. 때때로 재판소는 논쟁 중인 개입이 소유물 박탈인지 사용 –제한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만두기도 하였다. 대신 적법성, 정당한 목적, 비례성이라는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직접 진행하였다(*Denisova and Moiseyeva v. Russia*, 2010, § 55; *Aktiva DOO v. Serbia*, 2021, §§ 78 및 82).

410. 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다양한 중범죄 혐의와 관련된 재산 몰수에 대한 여러 절차에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비례성 심사를 적용하였다. 마약 밀매 범죄 수익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였거나(*Webb v. the United Kingdom* (dec.), 2004; *Butl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마약 밀매 관련 범죄 조직으로(*Arcuri and Others v. Italy* (dec.), 2001; *Morabito and Others v. Italy* (dec.), 2005) 또는 그 외 불법 마피아 유형의 활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과 관련하여(*Raimondo v. Italy*, 1994, § 30), 재판소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유죄판결이 없어도 몰수 조치가 비례성을 지켰다고 인정하였다(*Balsamo v. San Marino*, 2019, § 90).

411. 제 3 자에 대한 형사 소추와 무관하게 몰수를 부과한 경우, 재판소는 범죄 혐의로 직접 기소된 사람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를 대신하여 비공식적으로 부정 취득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 및 그 외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도 당국이 몰수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을 받아들였다(*Raimondo v. Italy*, 1994, § 30; *Arcuri and Others v. Italy* (dec.), 2001; *Morabito and Others v. Italy* (dec.), 2005; *Butl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Webb v. the United Kingdom* (dec.), 2004; 부패 공직자가 사망한 후 아내에게 몰수 조치를 부과한 경우인 *Saccoccia v. Austria*, 2008, § 88; *Silickiené v. Lithuania*, 2012, § 65; 아버지의 전과로 인해 자녀에게도 몰수 조치가 부과된 경우인 *Balsamo v. San Marino*, 2019, §§ 89 및 93; 자금 세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의 아들이 청구인이었던 경우 *Zaghini v. San Marino*, 2023, §§ 17 및 65). 나아가, *Yusifli and Others v. Azerbaijan* (dec.), 2022, §§ 88–93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전 보건부 장관의 지인 또는 친척이었다. 재판소는 전 보건부 장관이 국가로부터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들의 명의 또는 청구인들이 명목상 단독 소유주인 회사 명의로 이전된 다양한 재산에서 범죄 수익을 몰수한 것에 대한 청구인들의 청구는 명백히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12. 이러한 사건에서 몰수는 합법적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소유물”의 불법적인 사용, 특히 사회에 위험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소는 조직 범죄와의 전쟁에서 공공 당국이 마주하는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의심스러운 자본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몰수는 이러한 맥락에서 실효적이고 필요한 무기이다.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명령은 범죄 활동 가담을 억제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일반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Denisova and Moiseyeva v. Russia*, 2010, § 58; *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2001, § 52; 제 6 조 및 제 7 조에 따른 *Dassa Foundation and Others v. Liechtenstein* (dec.), 2007).

413. 협약 제 6 조는 국가가 추정에 의지하는 것을 막지 않는 편이다. 다양한 형태의 몰수 또는 재정적 억압에 관한 소송에서 공공 당국은 자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되었다는 추정에 따라 행동할지도 모른다(*Salabiaku v. France*, 1988, § 28). 이와 관련하여 추정한 것에 대한 진정이 제기된 맥락에서 동일한 접근 방법이 제 1 의정서 제 1 조 (*Cacucci and Sabatelli v. Italy* (dec.), 2014, § 43; *Yildrim v. Italy* (dec.), 2003) 또는 제 6 조(자기 자산의 합법적 취득에 관한 증명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환)에 따라 사용된다(*Grayson and Barnham v. the United Kingdom*, 2008, § 45; *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2001, § 43; 증인 심리에 관한 *Perre v. Italy* (dec.), 1999). 당사자에게 반박할 기회가 있었다면 추정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 반대로, 수익금의 출처로 추정되는 범죄의 형사 절차에서 소유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물품에 대한 몰수 명령이 선고된 경우 제 6 조제 2 항 위반으로 판단되었다(*Geerings v. Netherlands*, 2007, §§ 43–51).

414. 재판소는 관련 국내 당국이 피청구인들의 합법적인 소득은 문제의 재산을 취득할 정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증거의 우위를 근거로 피청구인들에게 몰수 명령을 내린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몰수 명령이 중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과 관련된 민사 소송의 결과일 때마다 재판소는 해당 소송에서 재산의 불법적 출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비례성 심사의 목적을 위해

소유자가 그 반대를 증명할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확률의 균형 또는 불법적 출처의 높은 확률에 대한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Balsamo v. San Marino*, 2019, § 91).

415. 재판소는 몰수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적 보장을 중요시하였고, 여기에는 당사자주의성(*Yildirim v. Italy* (dec.), 2003; *Perre v. Italy* (dec.), 1999), 기소 사건의 사전 공개(*Grayson and Barnham v. the United Kingdom*, 2008, § 45), 당사자가 문서 및 구두 증거를 제출할 기회(*Butl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Perre v. Italy* (dec.), 1999),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의 법정 대리 가능성(*Butler v. the United Kingdom* (dec.), 2002), 자산의 범죄적 성격에 대한 추정을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가능성(*Geerings v. Netherlands*, 2007, § 44), 가정을 적용할 경우 심각한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가정을 적용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 판사(*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2001, § 43),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몰수 대상이 될 재산에 대한 개별 평가 수행 여부(*Rummi v. Estonia*, 2015, § 108; *Silickienė v. Lithuania*, 2012, § 68),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국내 법원에서 변론할 기회가 청구인에게 있었는지 여부(*Veits v. Estonia*, 2015, §§ 72 및 74; *Jokela v. Finland*, 2002, § 45; *Balsamo v. San Marino*, 2019, § 93), 해당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 고려(*Denisova and Moiseyeva v. Russia*, 2010, § 59) 등이 있다.

416. 마지막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적 의무 외에도(*G.I.E.M. S.R.L. and Others v. Italy*(본안) [GC], 2018, § 302), 몰수 조치의 비례성 결정에 관련된 요소로는 특히, 결정적이나 않더라도, 그 기간(*OOO Avrora Maloetazhnoe Stroitelstvo v. Russia*, 2020, § 69; *Stotkowski v. Poland*, 2021, §§ 73–77; *Ipek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v. Turkey*, 2022, §§ 92–94),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과 이해당사자에 대한 결과를 고려하여 몰수조치를 유지할 필요성(*Lachikhina v. Russia*, 2017, § 59), 청구인 및 개입한 국가 당국의 행동(*Forminster Enterprises Limited v. the Czech Republic*, 2008, § 75) 및 청구인이 (계속되는) 압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포함하여 실효적인 구제 수단의 가능성(*Benet Czech, spol. s r.o. v. the Czech Republic*, 2010, § 49) 등이 있다.

## K. 재산의 원상회복

417. 중부유럽과 동유럽이 민주적 변화를 겪은 후 다수의 정부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수용(收用)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규정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기존 법제에서 원상회복을 처리하였다.

418. 협약 및 그 의정서를 비준하기 전의 재산 수용과 관련하여, 협약 기구는 소유권 또는 다른 물적 권리의 박탈은 원칙적으로 순간적인 행위이며 “권리 박탈”이라는 지속적인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였다(*Malhous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0; *Preußische Treuhand GmbH & Co. KG a.A. v. Poland* (dec.), 2008, § 57).

419. 나아가,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체약국이 협약을 비준하기 전에 이전된 재산 환수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를 체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Jantner v. Slovakia*, 2003, § 34).

420. 또한 제 1 의정서 제 1 조는 체약국이 재산 원상회복 범위를 결정하고 과거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에 동의하는 조건을 선택할 자유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는다(*Maria Atanasiu and Others v. Romania*, 2010, § 136). 특히, 체약국은 특정 범주의 과거 소유자를 그러한 자격 부여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넓은 재량을 누린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유자의 범주가 제외되는 경우, 이들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정당한 기대”的 근거가 될 수 없다(*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70–74; *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 *Smiljanić v. Slovenia* (dec.), 2006, § 29).

421. 따라서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재산권을 인정받는다는 희망은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로 볼 수 있으며, 조건을 불이행한 결과 소멸하는 조건부 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Malhous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0; *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 이전에 시행되었던 법률이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리라는 믿음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목적상 정당한 기대의 형태로 간주될 수 없다. 원상회복에 대한 단순한 희망은 그 희망이 아무리 이해할 만한 것이라도 정당한 기대와는 차이가 있으며, 정당한 기대는 단순한 희망보다 더 구체적이고 사법적 결정 같은 법률 조항이나 법률 행위에 근거해야 한다(*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GC], 2002, § 73; *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2005, § 112).

422. 한편, 제 1 의정서를 포함하여 협약을 비준한 체약국이 이전 체제 하에서 몰수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복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그러한 법률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보호하는 새로운 재산권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Maria Atanasiu and Others v. Romania*, 2010, § 136). 체약국이 제 1 의정서를 비준한 후에도 그러한 법률이 유효한 경우 비준 전 법률에 따라 수립된 원상회복 또는 보상 약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2005, § 74; *Kopecký v. Slovakia* [GC], 2004, § 35; *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25).

423. 따라서 재판소는 의정서 발효일 및 결정적으로 청구인이 협약 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한 날짜에 청구인에게 어떤 “소유물”이 있었는지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보았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25 및 132). 이 경우, 보상 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자격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부크강 너머에서 송환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권리의 부여하는 폴란드 법률에 의해 청구인에게 부여되었으며, 이는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폴란드에서 발효된 날에도 여전히 유효하였다.

424. 착수된 개혁의 이행과 관련하여, 협약의 근간이 되는 법의 지배와 제 1 의정서 제 1 조의 적법성 원칙에 따라 국가는 각자 제정한 법률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존중하고 적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무라면 필연적으로 그 이행에 필요한 법적 및 실질적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84).

425. 재산의 원상회복 분야에 속한 다수의 사건은 최종 사법(또는 행정) 결정을 국내 당국이 미집행한 사건이다. 재산권 원상회복에 관한 국내법에 따라 당국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보상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은 청구인에게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의미하는 “소유물”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집행 가능한 청구권을 제공한다(*Jasiūniene v. Lithuania*, 2003, § 44). 따라서 청구권자에게 유리한 최종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정당한 기대”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Driza v. Albania*, 2007, § 102).

426. 최종 판결 미집행은 루마니아의 재산 원상회복 제도의 다른 결함과 더불어 *Maria Atanasiu and Others v. Romania*, 2010 사건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 및 시범 판결 절차를 야기하였다(*ibid.*, §§ 215–218). 마찬가지로, *Manushaqe Puto and Others v. Albania*, 2012, §§ 110–118 사건 시범 판결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재산 원상회복 대신 배상을 결정한 최종 판결 미집행으로 협약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하였다.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2020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범 판결에 대응하여 알바니아에 도입된 새로운 국내 제도/구제절차를 심사하였다. 재판소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의 선택과 관련하여 국가의 폭넓은 재량을 지적하면서(*ibid.*, § 188), a) 구제책의 적절성(*ibid.*, § 188), b) 보상의 적정성 (*ibid.*, §§ 189–203) 및 c) 구제책의 접근 가능성 및 효율성(*ibid.*, §§ 204–214)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구제책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며 보상 금액의 최소 기준인 원래 재산의 현재 가치 10%가 알바니아의 구체적인 맥락에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ibid.*, §§ 194–196). 동시에 새로운 구제절차에 대한 심사는 해당

구제절차가 실제로 협약 요건을 계속 준수하는지에 따라 향후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였다(*ibid.*, § 222).

427. *Orlov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2019, §§ 55, 57 및 61 사건은 국내 결정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강제퇴거된 후 교회를 세운 부분을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환수할 권리를 부여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위반이라고 판단한 다음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결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청구인들의 토지에서 교회를 철거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명령하였다(*ibid.*, §§ 68–71).

428. 정부가 청구인의 재산권에 개입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자금 부족이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 채무 미집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였다(*Driza v. Albania*, 2007, § 108; *Prodan v. Moldova*, 2004, § 61).

429. 재판소는 예를 들어 독일 통일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만 매우 예외적으로 보상의 부재가 재산 보호와 일반의 이익 요건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공정한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다고 수용하였다(*Jahn and Others v. Germany* [GC], 2005, § 117). 일반적으로 제 1 의정서 제 1 조가 요구하는 것은 국가가 수용한 재산에 대한 보상 금액은 그 가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다(*Broniowski v. Poland* [GC], 2004, § 186). 이는 입법으로 부여된 보상받을 자격에도 적용된다. 재판소는 국내 행정 소송 계류 도중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 수준을 낮추는 것이 국고 보호라는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고 보상금이 불합리하게 낮지 않은 한 이를 수용하였다(*Serbian Orthodox Church v. Croatia*, 2020, §§ 62, 65–68).

430. 나아가,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 중 일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산 권원이 보상 없이 무효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안이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재판소는 법적 확실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법성 요건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Parvanov and Others v. Bulgaria*, 2010, § 50; *Kehaya and Others v. Bulgaria*, 2006, § 76; *Chengelyan and Others v. Bulgaria*, 2016, §§ 49–50). 적법성 요건은 국내법의 관련 조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적법성 요건은 자의적인 조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Parvanov and Others v. Bulgaria*, 2010, § 44).

431. 따라서 국내 법원의 모순된 판결과 국내 법원이 이전 판결의 명백한 논리를 벗어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의 “소유물”에 대한 박탈은 법의 지배와 양립할 수 없고 자의적이므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적법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Parvanov and Others v. Bulgaria*, 2010, § 50).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제 6 조 하에, 루마니아 국유재산 원상회복이라는 특별한 맥락에서 입법적 일관성이 부족하고 원상회복법의 특정한 측면 해석에 대한 판례가 상충하여 전반적으로 법적 확실성이 결여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하였다(*Tudor Tudor v. Romania*, 2009, § 27).

432. 나아가, 동일한 재산에 두 개의 권원 증서가 공존하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향유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수의 재판소 판결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되었으며(첫 번째 판결은 *Străin and Others v. Romania*, 2005, §§ 46–47 사건이며, 이 접근 방식을 확인한 가장 최근 사건은 *Dickmann and Gion v. Romania*, 2017, §§ 103–04), 이때 재판소는 공산 정권의 재산권 침해로 입은 “과거의 상처”를 완화하는 것이 비례성을 상실한 새로운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ibid.*, § 96).

433. 재판소는 선의로 재산을 획득한 후 다른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어 재산을 빼앗긴 소유자의 상황을 심리하기도 하였다(*Toșcuță and Others v. Romania*, 2008, § 33).

434. 특히 국가가 선의로 행동하는 제 3 자에게 개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타방의 권원에 대한 최종 사법적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해도 재산 박탈에 해당한다. 이러한 박탈에

보상이 전혀 없다면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위배된다(*Vodă and Bob v. Romania*, 2008, § 23). *Katz v. Romania*, 2009, §§ 30–36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인해 제 3 자가 국가로부터 선의로 매입한 국영 건물의 원상회복에 관한 불완전한 입법이 초래한 광범위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수없이 법률을 개정했지만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국가가 입법을 바로잡지 못한 것을 두고 국가는 악화 요인일 뿐만 아니라 협약 제 46 조에 따른 협약 기제의 향후 실효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 이는 *Maria Atanasiu and Others v. Romania*, 2010 사건의 후속인 *Preda and Others v. Romania*, 2014, §§ 146–148 사건 판결에서도 여전히 문제였으며, *Ana Ionescu and Others v. Romania*, 2019, § 29 사건에서도 역시 강조되었다. 이후 *Văleanu and Others v. Romania*, 2022, § 262 사건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재확인하면서 피청구국에게 원상회복 기제에서 지속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추가적인 일반 조치 실행을 요구하였다.

435. *Pincová and Pinc v. the Czech Republic*, 2002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해당 재산이 몰수된 것을 알지 못했고 거래 내용 또는 구매 가격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1967년 선의로 주택을 취득했다고 알리며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과거의 상처를 완화하려다 비례성을 상실한 새로운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입법부는 각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의로 “소유물”을 취득한 개인들이 그 “소유물”을 몰수한 국가의 정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ibid.*, § 58). 이 사건에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또한 *Zvolský and Zvolská v. the Czech Republic*, 2002, §§ 72–74). 공산주의 정권에 임의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타인이 국가로부터 구입한 재산을 박탈한 조치의 비례성 역시 *Velikovi and Others v. Bulgaria*, 2007, §§ 181 및 190 사건에서 쟁점이 되었다.

436. 이와는 반대로, *Wiegandová v. the Czech Republic*, 2024, §§ 60–65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재산 원상회복법에 따라 주택 협동조합을 위해 무료로 기간제한 없이 설정된 지역권(地役權)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1991년 원상회복으로 아파트를 환수받은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아 획득하였으며 아파트를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는 없고 오직 매도만 가능하였다. 재판소는 회원국들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민주적 공공질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재산 문제를 규제하는 데 있어 넓은 재량의 덕을 보았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비례성 분석의 목적상, 헌법재판소가 선의의 개인(협동조합과 그 구성원)이 금전적 기여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권을 보존하는 수단으로서 지역권의 영구적 존재를 고려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437. *Naskov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2023, §§ 72–78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재산상 이익에 개입한 것이 적법성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국내 당국은 그동안 사적 당사자가 토지에 구조물을 건설했기 때문에 법적 및 사실적으로 명령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필지에 대한 권원을 주는 최종 원상회복 명령을 직권으로 파기하였다.

438. 게다가 원상회복 절차 기간이 과도하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한 여러 사건에서 제 6 조 위반이 제기되었다(*Sirc v. Slovenia*, 2008, § 182). 해당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진정 사항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재산권을 인정한 후 절차가 지연된 경우 재판소는 특히 앞으로 청구인들에게 재산의 행방이 불확실한 상태라는 이유로 별도로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Igariené and Petrauskienė v. Lithuania*, 2009, §§ 55 및 58; *Beinarović and Others v. Lithuania*, 2018, §§ 141 및 154). *Kirilova and Others v. Bulgaria*, 2005, §§ 120–121 사건에서는 재산 수용(收用)에 대한 보상으로 제공된 아파트가 청구인들에게 인도되기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하였다.

439.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집단화된 농지를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원상회복하는 것과 관련하여, *Vasilev and Doycheva v. Bulgaria*, 2012, §§ 45–53 사건에서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협약 제 13 조 위반은 요구되는 여러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국내 당국의 타성(惰性)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 L. 국유 기업

440. 재판소는 협약에 따라 기업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해당 당국에 귀속되는지 또는 유책 회원국에 귀속되는지 결정할 때, 협약 제 34 조의 맥락에서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2003, § 26 사건에 열거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재판소는 특히 회사가 국가로부터 충분한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누리고 있는지에 따라 회사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한 협약상의 책임이 면제되는지 고려해야 한다(*Mykhaylenky and Others v. Ukraine*, 2004, § 44; *Shlepkin v. Russia*, 2007, § 24; *Ljubljanska banka d.d. v. Croatia* (dec.), 2015, §§ 51–55; *Liseytseva and Maslov v. Russia*, 2014, § 151; *Kuzhelev and Others v. Russia*, 2019, §§ 93–100 및 117). –제 34 조 본문 어디에도 “비정부기구”라는 용어가 피청구국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정부 조직만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Croatian Chamber of Economy v. Serbia* (dec.), 2017, § 38).

441. 재판소가 다수의 사건에서 참조한, 이를바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 심사는 2003 년 *Radio France* 결정, 2003 사건에 요약된 기준에서 직접 파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인, 특히 국유 기업을 협약 제 34 조가 의미하는 “정부 조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심사할 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만, 그 중에서 그 자체로 결정적인 요소는 없다.

442. 국가가 실제로 그러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회사의 법적 지위(공법 또는 사법 기준), 활동의 성격(공공 기능 또는 일반 상업), 운영의 맥락(독점 또는 엄격히 규제되는 사업 등), 제도적 독립성(국가의 감독 및 규제 정도)이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14; *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2019, § 172; *Tokel v. Turkey*, 2021, § 58).

443. 국영 회사의 채무에 대해 국가 책임이 성립할 때, 회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즉 파산과 관련하여 국가가 수행한 역할 또는 국가가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할 가능성 같은 추가적인 요소도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Liseytseva and Maslov v. Russia*, 2014, §§ 184–192 비교).

444. 따라서, 그러한 요소가 존재한다면, 국내법상의 형식적인 분류와 관계없이 채무 회사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상 청구인들에 대한 회사의 채무가 국가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면,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청구가 협약 조항의 인적 관할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예를 들어, *Tokel v. Turkey*, 2021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차(茶) 생산 전문 국영 기업(Çaykur)은 사법(私法) 조항이 적용되는 법인이며, 그 책임은 자본으로 제한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회사는 독점이 아니라 민간 차 회사와 더불어 차 시장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일반 법원의 관할권을 따랐다. 그런데도 이 회사의 자본금 전액은 항상 국가 소유였다. 정의에 따라 공공 서비스를 수행하고 생산 제품에 대해 양허를 받는 일종의 국영 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재판소는 국내법에 따른 공식 분류는 차치하고 당시 시행되던 법률에 비추어 볼 때 이 회사의 독립성은 제도와 운영상 국가와 강력하게 연계되어 제한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투자 계획에 대한 국가 당국의 감독과 규제를 결정적으로 고려하였다(*Tokel v. Turkey*, 2021, §§ 58–64).

445. 국가가 사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재판소는 문제가 된 회사가 별도의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i) 국가가 회사의 자산을 상당 부분 통제 및 관리하는 경우 (ii) 법원이 부과한 체납액을 일시적으로라도 무효로 하거나 회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의 재무 상황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 있고 이를 행사하는 경우 및 (iii) 정부 자체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경우 국가로부터 충분한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결론지었다(*Khachatryan v. Armenia*, 2009, §§ 51–54).

446. 그러나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피청구 회사가 주주의 재산과 구별되는 자산을 소유할 능력이 있고 경영을 위임한 경우, 국가는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회사 주식에 투자한 금액만큼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Anokhin v. Russia* (dec.), 2007).

447. 특히, 유고 연방에서 널리 사용된 사회적 소유권 체제 하의 회사에 대하여 재판소는 보통 국가의 협약에 따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누리지 못한다고 판결하였다(*R. Kačapor and Others v. Serbia*, 2008, § 98; *Mykhaylenky and Others v. Ukraine*, 2004, § 44; *Zastava It Turs v. Serbia* (dec.), 2013, §§ 21–23).

448. 나아가, 재판소는 금융 기관이 아닌 국영 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매개변수가 국영 은행과 관련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16). 실제로, 국가의 은행 채무 책임 여부 결정에 소환된 주요 기준은 2003년 *Radio France* 사건 결정에서 재판소가 확인한 것과 동일하다.

449.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14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영 기업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충분한 제도 및 운영상의 독립성을 누리지 못하여 협약에 따른 국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 국영 기업 채무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였다(*Mykhaylenky and Others v. Ukraine*, 2004, §§ 43–46; *Cooperativa Agricola Slobozia-Hanesei v. Moldova*, 2007, §§ 17–19; *Yershova v. Russia*, 2010, §§ 54–63; *Kotov v. Russia* [GC], 2012, §§ 92–107).

450. 위에서 언급한 요소 외에도, 재판소는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과 관련된 판례법에서 개발된 추가 요소도 국영 은행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했다(*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2014, § 115).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지, 회사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끼칠 정도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는지,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기타 회사 형태를 남용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Anokhin v. Russia* (dec.), 2007; *Khachatryan v. Armenia*, 2009, §§ 51–55).

451. 마지막으로, 파산 청산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재판소의 노력도 언급할 만하다. 청산인이 국가 대리인으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소가 심리한 기준은 i) 청산인 선임 검증(검증 작업에 청산인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국가의 책임 수반 여부), ii) 감독 및 책무(청산인이 채권자보다 먼저 책임을 지는데 비하여, 청산인의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 여부), iii) 목적(청산인의 업무 및 이익의 성격, 즉 재판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해도 청산인이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님), iv) 권한(파산 회사 재산의 운영 통제 및 관리로의 국한 여부 및 정부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위임 유무), v) 기능(청산인의 집행 절차 관여 여부 및 강제 권한 부여 여부)(특히, 법원이 파산 선고한 은행의 재산 관리를 위해 임명된 청산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손해 회수 불능에 관한 *Kotov v. Russia* [GC], 2012, §§ 92–98 및 99–106) 등이 있다.

452. 이 사건에서 청산인은 당시 상당한 수준으로 운영 및 제도상의 독립성을 누리고 있었고, 국가 당국은 지시를 내릴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청산 절차에 직접 간섭할 수 없었으므로 재판소는 청산인이 국가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Kotov*

v. Russia [GC], 2012, § 107). 따라서, 피청구국은 청산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 M. 긴축 조치

453.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협약당사국이 취한 긴축 조치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다수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자주 제 1 의정서 제 1 조 요건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회보험 및 급여 수급 자격의 축소 및 세금 조치가 포함되었다. 재판소는 해당 조치가 경제 위기에 따른 결과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 당국이 공익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 어떤 조치는 그보다 더 폭넓은 시책의 일부였다는 점,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Mockienė v. Lithuania* (dec.), 2017, § 48;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46; *Savickas and Others v. Lithuania* (dec.), 2013, §§ 92–94; *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2013, § 29; *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 37–49; *Žegarac and Others v. Serbia* (dec.), 2023, § 103). 재판소는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때 국가에 폭넓은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였다(*Valkov and Others v. Bulgaria*, 2011, § 96).

454. 재판소가 수용한 일부 조치는 특정 계층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2010년 루마니아는 국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6개월 동안 공공 부문 임금을 25% 삭감하였다(*Mihăies and Senteş v. Romania* (dec.), 2011, § 8). 2012년 포르투갈은 월 연금 600 유로 이상인 범주의 공공부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휴일과 크리스마스 수당을 삭감하고 월 연금이 1,100 유로 이상인 연금 수급자에게는 이를 전면 중단하여 두 명의 청구인은 11%에 가까운 연금 지급 감소를 겪었다(*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2013, § 6).

455. 기타 조치는 임시 추가 소득세의 형태를 띠었다. 2013년 포르투갈은 공공부문 연금을 두고 매월 1,800 유로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3.5%,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16%의 연대 기여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연금 수입이 4.6% 감소하였다(*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2015, § 8).

456. 다른 조치도 마찬가지로 인구의 일정 부분에서 영구적·반영구적 소득 감소를 초래하였다. 2010년 루마니아는 공공 부문 직원 중 특정 범주에 해당하면 적용되는 여러 특별 연금 제도를 폐지하여 5명의 청구인은 연금의 약 70% 감소를 겪었다(*Frimu and Others v. Romania* (dec.), 2012, § 5).

457. 또한 2010년 그리스는 공공 부문 연금과 임금을 12%~30% 소급 적용하여 삭감하고, 그해 말에 추가로 8%를 삭감하였으며, 공공 부문 고소득 직원에 대한 휴일 및 크리스마스 수당을 줄였다(*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2013, §§ 20 및 46).

458. 법관 급여의 일시적 삭감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진정이 제기된 조치가 공공부문 전반의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긴축 조치 시책의 일부라는 점, 2년 전 인상과 관련된 삭감이라는 점, 궁극적으로 해당인들이 해당 삭감에 대한 보상을 받은 점을 고려하였다(*Savickas and Others v. Lithuania* (dec.), 2013, § 93).

459. 나아가, *Kubát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2023, §§ 89–92 및 95–96 사건에서 법관의 급여는 급여법 개정에 따라 2011년~2014년 삭감되었다. 이러한 입법 개정은 이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고 그 결정에 미래효(pro futuro)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소는 장래효(ex nunc)/미래효(pro futuro)가 있는 무효 판결 선고를 정당하게 하는 예외적인 사정은 법관의 급여 삭감과는 다른 문제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융위기 당시 법관의 급여 차액에 대한 소급 지급 거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관의 보수 수준은 법관의 결정과 나아가 법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압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고정되어야 하며, 법관이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사법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법 기능 수행에 혼신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460. 그러나 52%의 세율로 퇴직금에 과세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용된 수단이 추구한 정당한 목적에 대해 비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과세 문제에 폭넓은 재량이 있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 예산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마찬가지였다. 재판소는 이 세율이 다른 모든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을 상당히 초과한 점, 청구인이 실직으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는 점, 청구인의 상황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 없이 고용주가 퇴직금에서 직접 공제하고 실질 과세 연도 이전에 발생한 활동 관련 소득에 부과한 점을 고려하였다(*N.K.M. v. Hungary*, 2013, §§ 66–74).

461. 고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관련 또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의 전반적인 판단에 따르면, 국가가 내린 결정이 과세 문제에서 당국에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공동의 이익과 기업의 개별 권리 보호 간 균형을 깨뜨리지 않았다. 재판소는 국가가 선택한 조치가 유럽연합 예산 규칙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국가 목표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P. Plaisier B.V. v. the Netherlands* (dec.), 2017, §§ 77–97).

462.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이 채권을 가치가 더 낮은 다른 채무 상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공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강제로 참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 개입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제 안정을 유지하고 국가 부채를 재조정하려는 공익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특히 해당 양역에서 국가의 넓은 인정 범위와 구 채권에 포함된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을 국가의 지급 능력 감소로 인해 이미 영향을 받은 채권의 상업적 가치 감소를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특별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는 않았다고 판결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집단소송 조항과 공공채무 구조조정이 공공채무를 줄이고 국가 파산을 막는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었다는 점, 채권 투자는 결코 아무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은 금융 시장 변동성 및 채권 가치 하락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였다(*Mamatás and Others v. Greece*, 2016, §§ 22 및 48–51; 또한 *Freire Lopes v. Portugal* (dec.), 2023, §§ 88–90 참조).

## N. 유럽연합법

463.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2005, §§ 155–156 사건은 청구사가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에 유엔 제재와 같은 효력이 있는 공동체 규정에 따라 1993년 아일랜드 당국이 압수한 유고슬라비아 회사에 임대된 항공기에 관한 사건이다. 재판소는 유럽연합법에 의한 기본권 보호가 당시 협약 체제의 기본권 보호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었으며, 그렇게 보았다고 판단하였다(이른바 “보스포루스 추정 또는 동등한 보호 원칙<sup>7</sup>”). 따라서, 아일랜드가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할 때 협약의 요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추정이 성립하였다. 재판소는 개입의 성격, 압류 및 제재 제도가 추구하는 일반의 이익, 대법원이 준수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준수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에 주목하였다. 재판소는 협약 관리 준수를 규제하는 기제가 분명히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스포루스 항공의 협약 권리 보호에 명백한 결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 제 1 의정서 제 1 조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464. 금전 청구권과 관련하여, 사이프러스에서 2004년 선고한 협약 제 6 조에 따른 채무 상환 관련 판결의 라트비아 내 집행과 관련된 *Avotiņš v. Latvia* [GC], 2016, §§ 104 및 109–111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본권 준수를 감독하기 위해 유럽연합법에 규정된 기제가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한, 협약이 제공하는 것과 유사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을

7. 제1조에 대한 해설서(인권 존중의 의무) 참조.

인정하였다(보스포루스 추정의 두 번째 조건으로, 첫 번째 조건은 *Michaud v. France*, 2012, §§ 114–116 사건에 명시된 대로 국내 당국 측에 어떠한 재량의 여지(margin of manoeuvre)도 없다는 것이다).

465. 나아가, *Heracles S.A. General Cement Company v. Greece* (dec.), 2016, §§ 63–70 사건에서 재판소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국가 보조금과 14년 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을 명령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결정에 더하여 국내 법원의 판결이 비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제 1 의정서 제 1 조 및 협약 제 6 조에 따른 청구 사항은 심리부적격으로 선언하였다.

466. *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2018 사건에서 미성숙한 흥합(흥합 종자)을 채취하는 한 회사는 아일랜드 정부가 유럽연합 환경법을 준수하지 않아 재정적 손실을 보았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가 아일랜드가 두 가지 유럽연합 환경 지침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2008년에 이 회사가 운영하던 항구에서 흥합 종자 어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그 결과 2010년에는 판매할 성숙한 흥합이 없어 회사는 수익 손실을 보았다. 재판소는 환경 보호와 유럽연합법률에 따른 피청구국의 의무 준수가 모두 정당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상업적 운영자로서 회사는 국가가 유럽연합 규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자사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했다.

467. 특히, 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피소국이 CJEU의 판결 및 지침을 이행하는 2차 입법을 준수할 의무에 있어 재량 범위가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므로 보스포루스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였다. 재판소는 침해 절차에서 CJEU의 판결이 사정이 달라져도 재량 범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2018, §§ 110–112).

468.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재판소는 회사가 정부 조치로 비례성을 상실한 부담을 겪은 것은 아니며 아일랜드가 공동체 내 공동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보장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따른 회사의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469. *Imeri v. Croatia*, 2021, § 72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국경을 넘을 때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몰수한 사건을 판결하면서 관련 유럽연합법에 주목하였다. 특히 재판소는 2005년 규정(공동체로 들고 나는 현금 규제에 관한 규정인 2005년 현금규제규정)이 사기 또는 불법 활동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 위반만을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판례를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2005년 규정을 폐지하고 대체한 2018년 현금규제규정의 전문(前文)에서 국경을 넘을 때 현금 신고 또는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서 처벌할 때 현금과 관련된 잠재적 범죄 행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서술한 점도 고려하였다.

470. 마지막으로, *Spasov v. Romania*, 2023, §§ 113–119 사건에서 불가리아 등록 선박의 소유주이자 선장은 해당 선박에 승선한 당시 루마니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넙치류 조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루마니아 어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고 루마니아 법률이 금지한 그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해당 사실관계는 양국이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청구인은 유럽연합의 공동어업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에 의거하였다. 그러나 2013년 10월 2일 최종 판결에서 상소법원은 여전히 공동체 어선은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여 제정된 루마니아 법률의 적용 대상이며, 특히 넙치류 어업에 관한 국내 규칙은 유럽연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상소법원이 (공동어업정책 규칙의 해석에 대한) CJEU의 결정을 구하지 않았으며, 해당 규칙에 비추어 자의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소는 상소법원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전적 처벌은 특정한 국내 조항에 근거한 것이며 불법 어업에 대한 유죄판결에 추가로 부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재판소가 청구인의 유죄판결이 명백한 법률 오류의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국내 조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추가적인 금전적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유럽인권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협약 제 44 조의 의미에 따라 최종이 아닌 소재판부 판결은 아래 목록에서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 44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재판부 판결은 (a) 당사자들이 대재판부에 회부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경우, (b) 대재판부로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일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후 또는 (c) 대재판부 패널이 제 43 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확정”됩니다. 대재판부 패널이 회부 요청을 승인하면, 소재판부 판결은 확정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고, 이어지는 대재판부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수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ies), 위원회 판례(결정 및 보고서),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또는 둘 중 하나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다수의 주요 판례를 30 가지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 및 제 3 자가 작성한 100여 개 온라인 판례집으로 연결되는 링크도 제공합니다. 인용된 사건에 대한 언어별 번역본은 모두 해당 사건의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HUDOC* 데이터베이스에서 ‘번역본(Language versions)’ 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A—

*Abukauskai v. Lithuania*, no. 72065/17, 25 February 2020

*Acar and Others v. Turkey* (dec.), nos. 26878/07 32446/07, 12 December 2017

*Ackermann and Fuhrmann v. Germany* (dec.), no. 71477/01, 8 September 2013

*Advisory opinion on the difference in treatment between landowners' associations*

“having a recognised existence on the date of the creation of an approved municipal hunters' association” and landowners' associations set up after that date [GC], request no. P16-2021-002, French Conseil d'État, 13 July 2022

*Adzhigitova and Others v. Russia*, nos. 40165/07 and 2593/08, 22 June 2021

*AGOSI v. the United Kingdom*, 24 October 1986, Series A no. 108

*Agrotexim and Others v. Greece*, 24 October 1995, Series A no. 330-A

*Air Canada v. the United Kingdom*, 5 May 1995, Series A no. 316-A

*Aka v. Turkey*,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Akdivar and Others v. Turkey*,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Akimova v. Azerbaijan*, no. 19853/03, 27 September 2007

*Akkus v. Turkey*, 9 July 1997, *Reports* 1997-V

*Aktiva DOO v. Serbia*, no. 23079/11, 19 January 2021

*Alatulkkila and Others v. Finland*, no. 33538/96, 28 July 2005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 Albergas and Arlauskas v. Lithuania*, no. 17978/05, 27 May 2014  
*Albert and Others v. Hungary* [GC], no. 5294/14, 7 July 2020  
*Albina v. Romania*, no. 57808/00, 28 April 2005  
*Alfa Glass Anonymi Emboriki Etairia Yalopinakon v. Greece*, no. 74515/13, 28 January 2021  
*Alif Ahmadov and Others v. Azerbaijan*, no. 22619/14, 4 May 2023  
*Ališ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Croatia, Serbia, Slovenia 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GC], no. 60642/08, ECHR 2014  
*Aliyeva and Others v. Azerbaijan*, nos. 66249/16 and 6 others, 21 September 2021  
*Allan Jacobsson v. Sweden* (no. 1), 25 October 1989, Series A no. 163  
*Allianz–Slovenska–Poistovna, A.S., and Others v. Slovakia* (dec.), no. 19276/05, 9 November 2010  
*Almeida Garrett, Mascarenhas Falcão and Others v. Portugal*, nos. 29813/96 and 30229/96, ECHR 2000–I  
*Amato Gauci v. Malta*, no. 47045/06, 15 September 2009  
*Ambruosi v. Italy*, no. 31227/96, 19 October 2000  
*Ana Ionescu and Others v. Romania*, nos. 19788/03 and 18 others, 26 February 2019  
*Anderlecht Christian Assembly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Belgium*, no. 20165/20, 5 April 2022  
*Andono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16225/08, 17 September 2015  
*Andrejeva v. Latvia* [GC], no. 55707/00, ECHR 2009  
*Andrzej Ruciński v. Poland*, no. 22716/12, 5 October 2023  
*Anheuser-Busch Inc. v. Portugal* [GC], no. 73049/01, ECHR 2007–I  
*Ankarcrona v. Sweden* (dec.), no. 35178/97, ECHR 2000–VI  
*Anokhin v. Russia* (dec.), no. 25867/02, 31 May 2007  
*Anonymos Touristikī Etairia Xenodocheia Kritis v. Greece*, no. 35332/05, 21 February 2008  
*Ansay and Others v. Turkey* (dec.), no. 49908/99, 2 March 2006  
*Anthony Aquilina v. Malta*, no. 3851/12, 11 December 2014  
*Antonopoulou v. Greece* (dec.), no. 46505/19, 19 January 2021  
*Apap Bologna v. Malta*, no. 46931/12, 30 August 2016  
*Apostolakis v. Greece*, no. 39574/07, 22 October 2009  
*Appolonov v. Russia* (dec.), no. 67578/01, 29 August 2002  
*Arcuri and Others v. Italy* (dec.), no. 52024/99, ECHR 2001–VII  
*Arnavutköy Greek Orthodox Taksiarhis Church Foundation v. Türkiye*, no. 27269/09, 15 November 2022  
*Arras and Others v. Italy*, no. 17972/07, 14 February 2012  
*Arsimikov and Arsemikov v. Russia*, no. 41890/12, 9 June 2020  
*AsDAC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47384/07, 8 December 2020  
*Ashby Donald and Others v. France*, no. 36769/08, 10 January 2013  
*Associations of Communally-owned Forestry Proprietors Porcenii Pleșa and Picioarul Bătrâni Banciu v. Romania*, nos. 46201/16 and 47379/18, 28 November 2023  
*Athanasiou and Others v. Greece*, no. 2531/02, 9 February 2006  
*Aunola v. Finland* (dec.), no. 30517/96, 15 March 2001  
*Avotiņš v. Latvia* [GC], no. 17502/07, 23 May 2016  
*Aygun v. Turkey*, no. 35658/06, 14 June 2011  
*Azas v. Greece*, no. 50824/99, 19 September 2002

*Azienda Agricola Silverfunghi S.a.s. and Others v. Italy*, nos. 48357/07 and 3 others,

24 June 2014

*Maria Azzopardi v. Malta*, no. 16467/17, 2208/20, 9 June 2022

—B—

*BCR Banca pentru locuințe S.A. v. Romania*, (dec.), no. 4558/20, 11 January 2024

*B.K.M. Lojistik Tasimacılık Ticaret Limited Şirketi v. Slovenia*, no. 42079/12, 17

January 2017

*Bäck v. Finland*, no. 37598/97, ECHR 2004–VIII

*Bagirova and Others v. Azerbaijan*, nos. 37706/17 and 5 others, 31 August 2023

*Bahia Nova S.A. v. Spain* (dec.), no. 50924/99, 12 December 2000

*Bakradze and Others v. Georgia* (dec.), nos. 1700/08 and 2 others, 8 January 2013

*Baláž v. Slovakia* (dec.), no. 60243/00, 16 September 2003

*Balsamo v. San Marino*, nos. 20319/17 and 21414/17, 8 October 2019

*Banfiel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6223/04, ECHR 2005–XI

*Barcza and Others v. Hungary*, no. 50811/10, 11 October 2016

*Bata v. Czech Republic* (dec.), no. 43775/05, 24 June 2008

*Baykin and Others v. Russia*, no. 45720/17, 11 February 2020

*Bečvář and Bečvářová v. the Czech Republic*, no. 58358/00, 14 December 2004

*Beeler v. Switzerland* [GC], no. 78630/12, 11 October 2022

*Beinarovič and Others v. Lithuania*, nos. 170520/10 and 2 others, 12 June 2018

*Béla Németh v. Hungary*, no. 73303/14, 17 December 2020

*Béláné Nagy v. Hungary* [GC], no. 53080/13, 13 December 2016

*Beller v. Poland*, no. 51837/99, 1 February 2005

*Bellet, Huertas and Vialatte v. France* (dec.), nos. 40832/98 and 2 others, 27 April 1999

*Belova v. Russia*, no. 33955/08, 15 September 2020

*Belvedere Alberghiera S.r.l. v. Italy*, no. 31524/96, ECHR 2000–VI

*Benet Czech, spol. s r.o. v. the Czech Republic*, no. 31555/05, 21 October 2010

*Berger-Krall and Others v. Slovenia*, no. 14717/04, 12 June 2014

*Bernotas v. Lithuania*, no. 59065/21, 30 January 2024

*Beshiri and Others v. Albania* (dec.), nos. 29026/06 and 11 others, 17 March 2020

*Beyeler v. Italy* [GC], no. 33202/96, ECHR 2000–I

*Bežanić and Baškarad v. Croatia*, nos. 16140/15 and 13322/16, 19 May 2022

*Bienkowski v. Poland* (dec.), no. 33889/96, 9 September 1998

*Bimer S.A. v. Moldova*, no. 15084/03, 10 July 2007

*Bistrović v. Croatia*, no. 25774/05, 31 May 2007

*Bittó and Others v. Slovakia*, no. 30255/09, 28 January 2014

*Blanco Callejas v. Spain* (dec.), no. 64100/00, 18 June 2002

*Blečić v. Croatia* [GC], no. 59532/00, ECHR 2006–III

*Blumberga v. Latvia* no. 70930/01, 14 October 2008

*Bock and Palade v. Romania*, no. 21740/02, 15 February 2007

*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ECHR 2005–VI

*Bowler International Unit v. France*, no. 1946/06, 23 July 2009

*Boyajyan v. Armenia*, no. 38003/04, 22 March 2011

*Bradshaw and Others v. Malta*, no. 37121/15, 23 October 2018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Bramelid and Malmström v. Sweden*, no. 8588/79 and 8589/79, Commission decision of 12 October 1982, DR 9, pp. 64 and 82  
*Brazauskienė v. Lithuania* (dec.), no. 71200/17, 18 January 2024  
*British-American Tobacco Company Ltd v. the Netherlands*, 20 November 1995, Series A no. 331  
*Broniowski v. Poland* [GC], no. 31443/96, ECHR 2004-V  
*Brossel-Triboulet and Others v. France* [GC], no. 34078/02, 29 March 2010  
*Brumărescu v. Romania* [GC], no. 28342/95, ECHR 1999-VII  
*Bruncrona v. Finland*, no. 41673/98, 16 November 2004  
*BTS Holding, a.s. v. Slovakia*, no. 55617/17, 30 June 2022  
*Bucheň v. the Czech Republic*, no. 36541/97, 26 November 2002  
*Buczkiewicz v. Poland*, no. 10446/03, 26 February 2008  
*Budayeva and Others v. Russia*, nos. 15339/02, 21166/02, 20058/02, 11673/02 and 15343/02, ECHR 2008 (extracts)  
*Budina v. Russia* (dec.), no. 45603/05, 18 June 2009  
*Buffalo S.r.l. in liquidation v. Italy*, no. 38746/97, 3 July 2003  
*Bulgakova v. Russia*, no. 69524/01, 18 January 2007  
“Bulves” AD v. Bulgaria, no. 3991/03, 22 January 2009  
*Bunjevac v. Slovenia* (dec.), no. 48775/09, 19 January 2006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no. 13378/05, ECHR 2008  
*Burdrov v. Russia*, no. 59498/00, ECHR 2002-III  
*Burdrov v. Russia (no. 2)*, no. 33509/04, ECHR 2009  
*Bursać and Others v. Croatia*, no. 78836/16, 28 April 2022  
*Butler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1661/98, ECHR 2002-VI  
*Buzescu v. Romania*, no. 61302/00, 24 May 2005

## —C—

*CDI Holding Aktiengesellschaft and Others v. Slovakia* (dec.), no. 37398/97, 18 October 2001  
*C.M. v. France* (dec.), no. 28078/95, ECHR 2001-VII  
*Cacciato v. Italy* (dec.) no. 60633/16, 16 January 2018  
Čakarević v. Croatia, no. 48921/13, 26 April 2018  
*Cacucci and Sabatelli v. Italy* (dec.), no. 29797/09, 17 June 2014  
*Caligiuri and Others v. Italy*, nos. 657/10 and 3 others, 9 September 2014  
*Camberrow MM5 AD v. Bulgaria* (dec.), no. 50357/99, 1 April 2004  
*Canea Catholic Church v. Greece*, 16 Dec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I  
*Capital Bank AD v. Bulgaria*, no. 49429/99, ECHR 2005-XII (extracts)  
*Cars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42184/05, ECHR 2010  
*Casarini v. Italy*, no. 4893/13, 11 February 2021  
*Cauchi v. Malta*, no. 14013/19, 25 March 2021  
*Ceni v. Italy*, no. 25376/06, 4 February 2014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no. 38433/09, ECHR 2012  
*Chabauty v. France* [GC], no. 57412/08, 4 October 2012  
*Chapman v. the United Kingdom* [GC], no. 27238/95, ECHR 2001-I  
*Chassagnou and Others v. France* [GC], nos. 25088/94 and 2 others, ECHR 1999-III  
*Chengelyan and Others v. Bulgaria*, no. 47405/07, 21 April 2016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Chiragov and Others v. Armenia* [GC], no. 13216/05, ECHR 2015  
*Christian Religious Organization of Jehovah's Witnesses v. Armenia* (dec.), no. 73601/14, 29 September 2020  
*Chroust v. the Czech Republic* (dec.), no. 4295/03, ECHR 2006–XV  
*Cichopek and Others v. Poland* (dec.), nos. 15189/10 and 1,627 others, 14 May 2013  
*Çiftçiler Joint Stock Company and Others v. Turkey* (dec.), nos. 62323/09 and 64965/09, 24 November 2020  
*Cindrić and Bešlić v. Croatia*, no. 72152/13, 6 September 2016  
*Cingilli Holding A.Ş. and Cingillioğlu v. Turkey*, nos. 31833/06 and 37538/06, 21 July 2015  
*Čolić v. Croatia*, no. 49083/18, 18 November 2021  
*Company S. and T. v. Sweden*, no. 11189/84, Commission decision of 11 December 1986, DR 50, p. 138  
*Connors v. the United Kingdom*, no. 66746/01, 27 May 2004  
*Cooperativa Agricola Slobozia–Hanesei v. Moldova*, no. 39745/02, 3 April 2007  
*Cooperativa La Laurentina v. Italy*, no. 23529/94, 2 August 2001  
*Ćosić v. Croatia*, no. 28261/06, 15 January 2009  
*Credit and Industrial Bank v. the Czech Republic*, no. 29010/95, ECHR 2003–XI (extracts)  
*Croatian Chamber of Economy v. Serbia* (dec.), no. 819/08, 25 April 2017  
*Cvjetić v. Croatia*, no. 71549/01, 26 February 2004  
*Czajkowska and Others v. Poland*, no. 16651/05, 13 July 2010

## —D—

*Da Conceição Mateus and Santos Januário v. Portugal* (dec.), nos. 62235/12 and 57725/12, 8 October 2013  
*Dănoiu and Others v. Romania*, nos. 54780/15 and 2 others, 25 January 2022  
*Da Silva Carvalho Rico v. Portugal* (dec.), no. 13341/14, 1 September 2015  
*Dabić v. Croatia*, no. 49001/14, 18 March 2021  
*Dabić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59995/00, 3 October 2001  
*Damayev v. Russia*, no. 36150/04, 29 May 2012  
*Dassa Foundation and Others v. Liechtenstein* (dec.), no. 696/05, 10 July 2007  
*Davydov v. Russia*, no. 18967/07, 30 October 2014  
*De Luca v. Italy*, no. 43870/04, 24 September 2013  
*Debelianovi v. Bulgaria*, no. 61951/00, 29 March 2007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and Mustafayev v. Azerbaijan*, nos. 74288/14 and 64568/16, 14 October 2021  
*Denev v. Sweden* (dec.), no. 12570/86, 18 January 1989  
*Denisov v. Ukraine* [GC], no. 76639/11, 25 September 2018  
*Denisova and Moiseyeva v. Russia*, no. 16903/03, 1 April 2010  
*Depalle v. France* [GC], no. 34044/02, ECHR 2010  
*Derbuc and Svečak v. Croatia* (dec.), nos. 53977/14 and 41902/15, 15 March 2022  
*Des Fours Walderode v. the Czech Republic* (dec.), no. 40057/98, ECHR 2004–V  
*Di Marco v. Italy*, no. 32521/05, 26 April 2011  
*Dickmann and Gion v. Romania*, nos. 10346/03 and 10893/04, 24 October 2017  
*Dimitrovi v. Bulgaria*, no. 12655/09, 3 March 2015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Dobrowolski and Others v. Poland*, nos. 45651/11 and 10 others, 13 March 2018  
*Doğan and Others v. Turkey*, nos. 8803/02 and 14 others, ECHR 2004–VI (extracts)  
*Đok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6518/04, 27 May 2010  
*Dolneanu v. Moldova*, no. 17211/03, 13 November 2007  
*Domalewski v. Poland* (dec.), no. 34610/97, ECHR 1999–V  
*Domenech Aradilla and Rodríguez González v. Spain*, nos. 32667/19 and 30807/20,  
19 January 2023  
*Döring v. Germany* (dec.), no. 37595/97, ECHR 1999–VIII  
*Dragan Kovačević v. Croatia*, no. 49281/15, 12 May 2022  
*Draon v. France* [GC], no. 1513/03, 6 October 2005  
*Driza v. Albania*, no. 33771/02, ECHR 2007–V (extracts)  
*Družstevní Záložna Pri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72034/01, 31 July 2008  
*Durini v. Italy*, no. 19217/91, 12 January 2014

## —E—

*East West Alliance Limited v. Ukraine*, no. 19336/04, 23 January 2014  
*Edoardo Palumbo v. Italy*, no. 15919/89, 30 November 2000  
*Edwards v. Malta*, no. 17647/04, 24 October 2006  
*Efstathiou and Michailidis & Co. Motel Amerika v. Greece*, no. 55794/00, ECHR  
2003–IX  
*Elif Kızıl v. Turkey*, no. 4601/06, 3 March 2020  
*Elsanova v. Russia* (dec.), no. 57952/00, 15 November 2005  
*Fólica de S. Julião, Lda v. Portugal* (dec.), no. 33545/14, 8 February 2024  
*Eskelinien v. Finland* (dec.), no. 7274/02, 3 February 2004

## —F—

*Fábián v. Hungary* [GC], no. 78117/13, 5 September 2017  
*Fabris v. France* [GC], no. 16574/08, ECHR 2013 (extracts)  
*Fakas v. Ukraine* (dec.), no. 4519/11, 3 June 2014  
*Fedulov v. Russia*, no. 53068/08, 8 October 2019  
*Feldman and Slovianskyy Bank*, no. 42758/05, 21 December 2017  
*Fener Rum Erkek Lisesi Vakfi v. Turkey*, no. 34478/97, 9 January 2007  
*Ferretti v. Italy*, no. 25083/94, Commission decision of 26 February 1997  
*Fine Doo and Cano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dec.), no. 37948/13,  
17 May 2022  
*Flamenbaum and Others v. France*, nos. 3675/04 and 23264/04, 13 December 2012  
*Floroiu v. Romania* (dec.), no. 15303/10, 12 March 2013  
*Fomenko and Others v. Russia* (dec.), no. 42140/05 and 4 Others, 24 September  
2019  
*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GC], no. 25701/94, ECHR 2000–XII  
*Former King of Greece and Others v. Greece* (just satisfaction) [GC], no. 25701/94,  
28 November 2002  
*Forminster Enterprises Limited v. the Czech Republic*, no. 38238/04, 9 October 2008  
*Fredin v. Sweden (no. 1)*, 18 February 1991, Series A no. 192  
*Freire Lopes v. Portugal* (dec.), no. 58598/21, 31 January 2023

*Freitag v. Germany*, no. 71440/01, 19 July 2007

*Frendo Randon and Others v. Malta*, no. 2226/10, 22 November 2011

*Frimu and Others v. Romania* (dec.), nos. 45312/11 and 4 others, 7 February 2012

*Fuklev v. Ukraine*, no. 71186/01, 7 June 2005

—G—

*G. v. Austria*, no. 10094/82, Commission decision of 14 May 1984, DR 38

*G.I.E.M. S.R.L. and Others v. Italy* (merits) [GC], nos. 1828/06 and 2 others, 28 June 2018

*G.J. v. Luxembourg*, no. 21156/93, 26 October 2000

*Gaćeša v. Croatia* (dec.), no. 43389/02, 1 April 2008

*Galakvoščius v. Lithuania* (dec.), no. 11398/18, 7 July 2020

*Galović v. Croatia*, no. 45512/11, 31 August 2021

*Galtieri v. Italy* (dec.), no. 72864/01, 24 January 2006

*Gashi v. Croatia*, no. 32457/05, 13 December 2007

*Gasus Dosier- und Fördertechnik GmbH v. the Netherlands*, 23 February 1995, Series A no. 306-B

*Gavrilova and Others v. Russia*, no. 2625/17, 16 March 2021

*Gayduk and Others v. Ukraine* (dec.), nos. 45526/99 and 20 others, ECHR 2002-VI (extracts)

*Gaygusuz v. Austria*,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Geerings v. Netherlands*, no. 30810/03, 1 March 2007

*Gellérthegyi and Others v. Hungary* (dec.) nos. 78135/13 429/14, 6 March 2018

*Georgia v. Russia (II)* [GC] (merits), no. 38263/08, 21 January 2021

*Georgia v. Russia (II) (just satisfaction)* [GC] no. 38263/08, 28 April 2023

*Gerasimov and Others v. Russia*, nos. 29920/05 and 10 others, 1 July 2014

*Gherardi Martiri v. San Marino*, no. 35511/20, 15 December 2022

*Giavi v. Greece*, no. 25816/09, 3 October 2013

*Gillow v. the United Kingdom*, 24 November 1986, Series A no. 109

*Giuran v. Romania*, no. 24360/04, ECHR 2011 (extracts)

*Gladysheva v. Russia*, no. 7097/10, 6 December 2011

*Glas Nadezhda EOOD and Anatoliy Elenkov v. Bulgaria*, no. 14134/02, 11 October 2007

*Godlevskaya v. Russia*, no. 58176/18, 7 December 2021

*Glod v. Romania*, no. 41134/98, 16 September 2003

*Gogitidze and Others v. Georgia*, no. 36862/05, 12 May 2015

*Goretzky v. Germany* (dec.), no. 52447/99, 6 April 2000

*Gorraiz Lizarraga and Others v. Spain*, no. 62543/00, ECHR 2004-III

*Gratzinger and Gratzingerova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9794/98, ECHR 2002-VII

*Grayson and Barnham v. the United Kingdom*, nos. 19955/05 and 15085/06, 23 September 2008

*Grbac v. Croatia*, no. 64795/19, 16 December 2021

*Greek Federation of Customs Officers, Gialouris and Others v. Greece*, no. 24581/94, Commission decision of 6 April 1995, DR 81-B, p. 123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Grishchenko v. Russia* (dec.), no. 75907/01, 8 July 2004  
*Grobelny v. Poland*, no. 60477/12, 5 March 2020  
*Grozdanić and Gršković-Grozdanić v. Croatia*, no. 43326/13, 28 January 2021  
*Grozeva v. Bulgaria* (dec.), no. 52788/99, 3 November 2005  
*Grudić v. Serbia*, no. 31925/08, 17 April 2012  
*Guberina v. Croatia*, no. 23682/13, 22 March 2016  
*Gubiye v. Russia*, no. 29309/03, 19 July 2011  
*Guiso and Consiglio v. Italy* (dec.), no. 50821/06, 16 January 2018  
*Guiso–Gallisay v. Italy* (just satisfaction) [GC], no. 58858/00, 22 December 2009  
*Gustafsson v. Sweden* [GC], judgment of 25 April 1996, Reports 1996-II, p. 658  
*Gyulumyan and Others v. Armenia* (dec.) no. 25240/20, 7 December 2023



*H.F. v. Slovakia* (dec.), no. 54797/00, 9 December 2003  
*Hakan Ari v. Turkey*, no. 13331/07, 11 January 2011  
*Hamer v. Belgium*, no. 21861/03, ECHR 2007-V (extracts)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7 December 1976, Series A no. 24  
*Hatton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 36022/97, ECHR 2003-VIII  
*Haupt v. Austria* (dec.), no. 55537/10, 2 May 2017  
*Hentrich v. France*, 22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6-A  
*Heracles S.A. General Cement Company v. Greece*, no. 55949/13, 11 octobre 2016  
*Herrmann v. Germany* [GC], no. 9300/07, 26 June 2012  
*Honecker and Others v. Germany* (dec.), nos. 53991/00 and 54999/00, ECHR 2001-XII  
*Hoogendijk v. the Netherlands* (dec.), no. 58641/00, 6 January 2005  
*Hornsby v. Greece*, 19 March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I  
*Hunguest Zrt v. Hungary*, no. 66209/10, 30 August 2016  
*Hüseyin Kaplan v. Turkey*, no. 24508/09, 1 October 2013  
*Hutten–Czapska v. Poland*, no. 35014/97, 22 February 2005



*Ian Edgar (Liverpool)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7683/97, ECHR 2000-I  
*Iatridis v. Greece* [GC], no. 31107/96, ECHR 1999-II  
*Igarienė and Petrauskienė v. Lithuania*, no. 26892/05, 21 July 2009  
*Ilyushkin and Others v. Russia*, nos. 5734/08 and 28 others, 17 April 2012  
*Imeri v. Croatia*, no. 77668/14, 24 June 2021  
*Immobiliare Saffi v. Italy*, [GC], no. 22774/93, ECHR 1999-V  
*International Bank for Commerce and Development AD and Others v. Bulgaria*, no. 7031/05, 2 June 2016  
*Interoliva ABEE v. Greece*, no. 58642/00, 10 July 2003  
*Iofil AE v. Greece* (dec.), no. 50598/13, 7 September 2021  
*İpek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v. Turkey*, no. 29214/09, 18 January 2022  
*Ireland v. the United Kingdom*, 18 January 1978, Series A no. 25  
*Ismayilov v. Russia*, no. 30352/03, 6 November 2008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Ivanov v. Ukraine*, no. 15007/02, 7 December 2006

*Ivanova and Cherkezov v. Bulgaria*, no. 46577/15, 21 April 2016

*Iwaszkiewicz v. Poland*, no. 30614/06, 26 July 2011

## —J—

*J.A. Pye (Oxford) Ltd and J.A. Pye (Oxford) Land Ltd v. the United Kingdom* [GC], no. 44302/02, ECHR 2007–III

*J.D. and A v. the United Kingdom*, nos. 32949/17 and 34614/17, 24 October 2019

*J.L.S. v. Spain* (dec.), no. 41917/98, ECHR 1999–V

*J.S. and A.S. v. Poland*, no. 40732/98, 24 May 2005

*Jahn and Others v. Germany* [GC], nos. 46720/99 and 2 others, ECHR 2005–VI

*James and Others v. United Kingdom*, 21 February 1986, Series A no. 98

*Janković v. Croatia* (dec.), no. 43440/98, ECHR 2000–X

*Jantner v. Slovakia*, no. 39050/97, 4 March 2003

*Jarre v. France*, no. 14157/18, 15 February 2024

*Jasinskij and Others v. Lithuania*, no. 38985/97, Commission decision of 9 September 1998

*Jasiūniene v. Lithuania*, no. 41510/98, 6 March 2003

*Jelič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41183/02, ECHR 2006–XII

*Jokela v. Finland*, no. 28856/95, ECHR 2002–IV

*Juszczyszyn v. Poland*, no. 35599/20, 6 October 2022

*Jurčić v. Croatia*, no. 54711/15, 4 February 2021

## —K—

*Kamoy Radyo Televizyon Yayincilik ve Organizasyon A.S. v. Turkey*, no. 19965/06, 16 April 2019

*Kanevska v. Ukraine* (dec.), no. 73944/11, 17 November 2020

*Karachalios v. Greece* (dec.), no. 67810/14, 24 January 2017

*Karahasanoğlu v. Turkey*, nos. 21392/08 and 2 others, 16 March 2021

*Karapetyan v. Georgia*, no. 61233/12, 15 October 2020

*Karner v. Austria*, no. 40016/98, ECHR 2003–IX

*Kasilov v. Russia*, no. 2599/18, 6 July 2021

*Kasmi v. Albania*, no. 1175/06, 23 June 2020

*Katikaridis and Others v. Greece*, 1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Katona and Závorský v. Slovakia*, nos. 43932/19 and 43995/19, 9 February 2023

*Katte Klitsche de la Grange v. Italy*, 27 October 1994, Series A no. 293–B

*Katz v. Romania*, no. 29739/03, 20 January 2009

*Keegan v. Ireland*, 26 May 1994, Series A no. 290

*Kehaya and Others v. Bulgaria*, nos. 47797/99 and 68698/01, 12 January 2006

*Kemal Bayram v. Turkey*, no. 33808/11, 31 August 2021

*Keriman Tekin and Others v. Turkey*, no. 22035/10, 15 November 2016

*Kerimova and Others v. Russia*, nos. 17170/04 and 5 others, 3 May 2011

*Kesyan v. Russia*, no. 36496/02, 19 October 2006

*KIPS DOO and Drekalović v. Montenegro*, no. 28766/06, 26 June 2018

*Khachatryan v. Armenia*, no. 31761/04, 1 December 2009  
*Khamidov v. Russia*, no. 72118/01, 15 November 2007  
*Khodorkovskiy and Lebedev v. Russia*, nos. 11082/06 and 13772/05, 25 July 2013  
*Khoniakina v. Georgia*, no. 17767/08, 19 June 2012  
*Kirilova and Others v. Bulgaria*, nos. 42908/98 and 3 others, 9 June 2005  
*Kjartan Ásmundsson v. Iceland*, no. 60669/00, ECHR 2004–IX  
*Klauz v. Croatia*, no. 28963/10, 18 July 2013  
*Klein v. Austria*, no. 57028/00, 3 March 2011  
*Kleine Staarman v. the Netherlands*, no. 10503/83, Commission decision of 16 May 1985, DR 42, p. 162  
*Köksal v. Turkey* (dec.), no. 30253/06, 26 November 2013  
*Kolesnyk v. Ukraine* (dec.), no. 57116/10, 3 June 2014  
*Könyv-Tár Kft and Others v. Hungary*, no. 21623/13, 16 October 2018  
*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no. 30078/06, ECHR 2012 (extracts)  
*Konstantin Stefanov v. Bulgaria*, no. 35399/05, 27 October 2015  
*Kopecký v. Slovakia* [GC], no. 44912/98, ECHR 2004–IX  
*Korotyuk v. Ukraine*, no. 74663/17, 19 January 2023  
*Korshunova v. Russia*, no. 46147/19, 6 September 2022  
*Kosmas and Others v. Greece*, no. 20086/13, 29 June 2017, §§ 68–71  
*Kosmidis and Kosmidou v. Greece*, no. 32141/04, 8 November 2007  
*Kotov v. Russia* [GC], no. 54522/00, 3 April 2012  
*Koua Poirrez v. France*, no. 40892/98, ECHR 2003–X  
*Koufaki and Adedy v. Greece* (dec.), nos. 57665/12, 57657/12, 7 May 2013  
*Kovalenok v. Latvia* (dec.), no. 54264/00, 15 February 2001  
*Kozak v. Poland*, no. 13102/02, 2 March 2010  
*Kozacioğlu v. Turkey* [GC], no. 2334/03, 19 February 2009  
*Kozlovs v. Latvia* (dec.), no. 50835/00, 23 November 2000  
*Krajnc v. Slovenia*, no. 38775/14, 31 October 2017  
*Kranz v. Poland* (dec.), no. 6214/02, 10 September 2002  
*Krayeva v. Ukraine*, no. 72858/13, 13 January 2022  
*Krivenogova v. Russia* (dec.), no. 74694/01, 1 April 2004  
*Kroon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7 October 1994, Series A no. 297–C  
*Krstić v. Serbia*, no. 45394/06, 10 December 2013, § 83  
*Kubát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s. 61721/19, 5496/20, 21318/20, 33522/20, 43039/20, 55448/20, 22 June 2023.  
*Kuchař and Štis v. the Czech Republic* (dec.), no. 37527/97, 21 October 1998  
*Kukalo v. Russia*, no. 63995/00, 3 November 2005  
*Kuna v. Germany* (dec.), no. 52449/99, ECHR 2001–V (extracts)  
*Kunić v. Croatia*, no. 22344/02, 11 January 2007  
*Kurban v. Turkey*, no. 75414/10, 24 November 2020  
*Kurşun v. Turkey*, no. 22677/10, 30 October 2018  
*Kutlu and Others v. Turkey*, no. 51861/11, 13 December 2016, § 58  
*Kuzhelev and Others v. Russia*, nos. 64098/09 and 6 others, 15 October 2019  
*Kyrtatos v. Greece*, no. 41666/98, ECHR 2003–VI (extracts)



*Łącz v. Poland* (dec.), no. 22665/02, 23 June 2009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 Lachikhina v. Russia*, no. 38783/07, 10 October 2017  
*Lakićević and Others v. Montenegro and Serbia*, nos. 27458/06 and 3 others, 13 December 2011  
*Larioshina v. Russia* (dec.), no. 56869/00, 23 April 2002  
*Larkos v. Cyprus* [GC], no. 29515/95, ECHR 1999–I  
*Lavrechov v. the Czech Republic*, no. 57404/08, ECHR 2013  
*Lederer v. Germany* (dec.), no. 6213/03, ECHR 2006–VI  
*Lekić v. Slovenia* [GC], no. 36480/07, 11 December 2018  
*Lelas v. Croatia*, no. 55555/08, 20 May 2010  
*Lenskaya v. Russia*, no. 28730/03, 29 January 2009  
*Lenz v. Germany* (dec.), no. 40862/98, ECHR 2001–X  
*Lenzing AG v. the United Kingdom*, no. 38817/97, Commission decision of 9 September 1998  
*Lessing and Reichelt v. Germany* (dec.) nos. 49646/10 and 3365/11, 16 October 2012  
*Levänen and Others v. Finland* (dec.), no. 34600/03, 11 April 2006  
*Liamberi and Others v. Greece*, no. 18312/12, 8 October 2020  
*Lidiya Nikitina v. Russia*, no. 8051/20, 15 March, 2022  
*Likvidējamā p/s Selga and Vasiļjevska v. Latvia* (dec.), nos. 17126/02 and 24991/02, 1 October 2013  
*Lindheim and Others v. Norway*, nos. 13221/08 and 2139/10, 12 June 2012  
*Liseytseva and Maslov v. Russia*, nos. 39483/05 and 40527/10, 9 October 2014  
*Lisnyy and Others v. Ukraine and Russia* (dec.), nos. 5355/14 and 2 others, 5 July 2016  
*Lithgow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8 July 1986, Series A no. 102  
*Lizanets v. Ukraine*, no. 6725/03, 31 May 2007  
*Ljaskaj v. Croatia*, no. 58630/11, 20 December 2016  
*Ljubljanska banka d.d. v. Croatia* (dec.), no. 29003/07, 12 May 2015  
*Lo Tufo v. Italy*, no. 64663/01, ECHR 2005–III  
*Locascia and Others v. Italy*, no. 35648/10, 19 October 2023  
*Loizidou v. Turkey* (merits), 18 Dec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I  
*Lungoci v. Romania*, no. 62710/00, 26 January 2006  
*Luordo v. Italy*, no. 32190/96, ECHR 2003–IX

## —M—

- M.A. and 34 Others v. Finland* (dec.), no. 27793/95, June 2003  
*Machard v. France*, no. 42928/02, 25 April 2006  
*Maggio and Others v. Italy*, nos. 46286/09 and 4 others, 31 May 2011  
*Mag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nos. 12959/05 and 5 others, 3 May 2012  
*Maharramov v. Azerbaijan*, no. 5046/07, 30 March 2017  
*Maioli v. Italy*, no. 18290/02, 12 July 2011  
*Malama v. Greece*, no. 43622/98, ECHR 2001–II  
*Malhouš v. the Czech Republic* (dec.) [GC], no. 33071/96, ECHR 2000–XII  
*Malik v. the United Kingdom*, no. 23780/08, 13 March 2012  
*Malinovskiy v. Russia*, no. 41302/02, ECHR 2005–VII (extracts)  
*Von Maltzan and Others v. Germany* (dec.) [GC], nos. 71916/01 and 2 others, ECHR 2005–V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Mamatas and Others v. Greece*, nos. 63066/14 and 2 others, 21 July 2016  
*Manushaqe Puto and Others v. Albania*, nos. 604/07 and 3 others, 31 July 2012  
*Marckx v. Belgium*, 13 June 1979, Series A no. 31  
*Maria Atanasiu and Others v. Romania*, nos. 30767/05 and 33800/06, 12 October 2010  
*Maria Mihalache v. Romania*, no. 68851/16, 30 June 2020  
*Marija Božić v. Croatia*, no. 50636/09, 24 April 2014  
*Marini v. Albania*, no. 3738/02, 18 December 2007  
*Markus v. Latvia*, no. 17483/10, 11 June 2020  
*Marshall and Others v. Malta*, no. 79177/16, 11 February 2020  
*Matheis v. Germany* (dec.), no. 73711/01, 1 February 2005  
*Matheus v. France*, no. 62740/00, 31 March 2005  
*Matos e Silva, Lda., and Others v. Portugal*, 16 Sept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V  
*Maurice v. France* [GC], no. 11810/03, ECHR 2005–IX  
*Mauriello v. Italy* (dec.), no. 14862/07, 13 September 2016  
*Mazurek v. France*, no. 34406/97, ECHR 2000–II  
*McCann v. the United Kingdom*, no. 19009/04, ECHR 2008  
*Megadat.com SRL v. Moldova*, no. 21151/04, ECHR 2008  
*Mellacher and Others v. Austria*, 19 December 1989, Series A no. 169  
*Melnichuk v. Ukraine* (dec.), no. 28743/03, ECHR 2005–IX  
*Meltex Ltd and Movsesyan v. Armenia*, no. 32283/04, 17 June 2008  
*Metaxas v. Greece*, no. 8415/02, 27 May 2004  
*Michaud v. France*, no. 12323/11, ECHR 2012  
*Microintelect OOD v. Bulgaria*, no. 34129/03, 4 March 2014  
*Mihăieș and Senteș v. Romania* (dec.), nos. 44232/11 and 44605/11, 6 December 2011  
*Milhau v. France*, no. 4944/11, 10 July 2014  
*Mindek v. Croatia*, no. 6169/13, 30 August 2016  
*Mockienė v. Lithuania* (dec.), no. 75916/13, 4 July 2017  
*Molla Sali v. Greece* [GC], no. 20452/14, 19 December 2018  
*Morabito and Others v. Italy* (dec.), 58572/00, 7 June 2005  
*Moreno Diaz Peña and Others v. Portugal*, no. 44262/10, 4 June 2015  
*Moskal v. Poland*, no. 10373/05, 15 September 2009  
*Muharrem Güneş and Others v. Turkey*, no. 23060/08, 24 November 2020  
*Müller v. Austria*, no. 5849/72, Commission decision of 1 October 1975, *Decisions and Reports* (DR) 3  
*Musa v. Austria*, no. 40477/98, Commission decision of 10 September 1998  
*Musa Tarhan v. Turkey*, no. 12055/17, 23 October 2018  
*Mykhaylenky and Others v. Ukraine*, nos. 35091/02 and 9 others, ECHR 2004–XII

## —N—

*NIT S.R.L. v. the Republic of Moldova*, no. 28470/12, 5 April 2022  
*N.K.M. v Hungary*, no. 66529/11, 14 May 2013  
*N.M. and Others v. France*, no. 66328/14, 3 Februay 2022  
*Naskov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31620/15 and 2 others, 12 December 2023

*National & Provincial Building Society, Leeds Permanent Building Society and Yorkshire Building Society v. the United Kingdom*, 23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National Movement Ekoglasnost v. Bulgaria*, no. 31678/17, 15 December 2020

*Neij and Sunde Kolmisoppi v. Sweden* (dec.), no. 40397/12, 19 February 2013

*Nerva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42295/98, ECHR 2002–VIII

*Nešić v. Montenegro*, no. 12131/18, 9 June 2020

*Nechayeva v. Russia*, no. 18921/15, 12 May 2020

*Niemietz v. Germany*, 16 December 1992, Series A no. 251–B

*Nikolay Kostadinov v. Bulgaria*, no. 21743/15, 8 November 2022

*Novoseletskiy v. Ukraine*, no. 47148/99, ECHR 2005–II (extracts)

—O—

*O'Sullivan McCarthy Mussel Development Ltd v. Ireland*, no. 44460/16, 7 June 2018

*OAO Neftyanaya Kompaniya Yukos v. Russia*, no. 14902/04, 20 September 2011

*O.N. v. Bulgaria* (dec.), no. 35221/97, 6 April 2000

*Olaru and Others v. Moldova*, nos. 476/07 and 3 others, 28 July 2009

*Olbertz v. Germany* (dec.), no. 37592/97, ECHR 1999–V

*Olczak v. Poland* (dec.), no. 30417/96, ECHR 2002–X (extracts)

*OGIS-Institut Stanislas, OGEC Saint-Pie X and Blanche de Castille and Others*

v. France, nos. 42219/98 and 54563/00, 27 May 2004

*Omasta v. Slovakia* (dec.), no. 40221/98, 10 December 2002

*Öneryıldız v. Turkey* [GC], no. 48939/99, ECHR 2004–XII

*OOO Avrora Maloetazhnoe Stroitelstvo v. Russia*, no. 5738/18, 7 April 2020

*Orion-Břeclav, S.R.O. v. the Czech Republic* (dec.), no. 43783/98, 13 January 2004

*Orlić v. Croatia*, no. 48833/07, 21 June 2011

*Orlović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no. 16332/18, 1 October 2019

*Osmanyan and Amiraghyan v. Armenia*, no. 71306/11, 11 October 2018

*Ouzounoglou v. Greece*, no. 32730/03, 24 November 2005

*Öztürk v. Turkey* [GC], no. 22479/93, ECHR 1999–VI

—P—

*P. Plaisier B.V. v. the Netherlands* (dec.), nos. 46184/16 and two others, 14 November 2017

*Păduraru v. Romania*, no. 63252/00, ECHR 2005–XII (extracts)

*Paeffgen GmbH v. Germany* (dec.), nos. 25379/04 and 3 others, 18 September 2007

*Pančenko v. Latvia* (dec.), no. 40772/98, 28 October 1999

*Pálka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 30262/13, 24 March 2022

*Panfile v. Romania* (dec.), 13902/11, 20 March 2012

*Pannon Plakát Kft and Others v. Hungary*, no. 39859/14, 6 December 2022

*Papachelas v. Greece* [GC], no. 31423/96, ECHR 1999–II

*Papachela and AMAZON S.A. v. Greece*, no. 12929/18, 3 December 2020

*Papamichalopoulos v. Greece*, 24 June 1993, Series A no. 260–B

*Paplauškienė v. Lithuania*, no. 31102/06, 14 October 2014

*Pařízek v. the Czech Republic*, no. 76826/14, 12 January 2023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 Parrillo v. Italy* [GC], no. 46470/11, ECHR 2015  
*Parvanov and Others v. Bulgaria*, no. 74787/01, 7 January 2010  
*Paulet v. the United Kingdom*, no. 6219/08, 13 May 2014  
*P.C. v. Ireland*, no. 26922/19, 1 September 2022  
*Pendov v. Bulgaria*, no. 44229/11, 3 March 2020  
*Perdigão v. Portugal* [GC], no. 24768/06, 16 November 2010  
*Perre v. Italy* (dec.), no. 32387/96, 21 September 1999  
*Petrescu and Others v. Romania* (dec.), no. 31390/18 and 9 others, 7 March 2023  
*Phillips v. the United Kingdom*, no. 41087/98, ECHR 2001–VII  
*Philippou v. Cyprus*, no. 71148/10, 14 June 2016  
*Phocas v. France*, 23 April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  
*Pialopoulos and Others v. Greece*, no. 37095/97, 15 February 2001  
*Pietrzak v. Poland*, no. 38185/02, 8 January 2008  
*Pincová and Pinc v. the Czech Republic*, no. 36548/97, ECHR 2002–VIII  
*Pine Valley Developments Ltd and Others v. Ireland*, 29 November 1991, Series A no. 222  
*Pintar and Others v. Slovenia*, nos. 49969/14 and 4 others, 14 September 2021  
*Pištorová v. the Czech Republic*, no. 73578/01, 26 October 2004  
*Platakou v. Greece*, no. 38460/97, ECHR 2001–I  
*Plechanow v. Poland*, no. 22279/04, 7 July 2009  
*Poltorachenko v. Ukraine*, no. 77317/01, 18 January 2005  
*Popović and Others v. Serbia*, nos. 26944/13 and 3 others, 30 June 2020  
*Poulain v. France* (dec.), no. 52273/08, 8 February 2011  
*Preda and Others v. Romania*, nos. 9584/02 and 7 others, 29 April 2014  
*Pressos Compania Naviera S.A. and Others v. Belgium*, 20 November 1995, Series A no. 332  
*Preußische Treuhand GmbH & Co. KG a.A. v. Poland* (dec.), no. 47550/06, 7 October 2008  
*Prince Hans-Adam II of Liechtenstein v. Germany* [GC], no. 42527/98, ECHR 2001–VIII  
*Prodan v. Moldova*, no. 49806/99, ECHR 2004–III (extracts)  
*Project-Trade d.o.o. v. Croatia*, no. 1920/14, 19 November 2020  
*Prokopovich v. Russia*, no. 58255/00, ECHR 2004–XI (extracts)  
*Prötsch v. Austria*, 1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Protsenko v. Russia*, no. 13151/04, 31 July 2008  
*Pyrantienė v. Lithuania*, no. 45092/07, 12 November 2013

## —R—

- R. Kačapor and Others v. Serbia*, nos. 2269/06 and 5 others 15 January 2008  
*R & L, s.r.o., and Others v. the Czech Republic*, nos. 37926/05 and 4 others, 3 July 2014  
*R.Sz. v. Hungary*, no. 41838/11, 2 July 2013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dec.), no. 53984/00, ECHR 2003–X (extracts)  
*Radomilja and Others v. Croatia* [GC], nos. 37685/10 and 22768/12, 20 March 2018  
*Radovici and Stănescu v. Romania*, nos. 68479/01 and 2 others, ECHR 2006–XIII (extracts)  
*Raimondo v. Italy*, 22 February 1994, Series A no. 281-A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Ramaer and Van Villingen v. the Netherlands* (dec.), no. 34880/12, 23 October 2012  
*Rasmussen v. Poland*, no. 38886/05, 28 April 2009  
*Reisner v. Turkey*, no. 46815/09, 21 July 2015  
*Richards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6252/08, 10 May 2012  
*Riela and Others v. Italy* (dec.), no. 52439/99, 4 September 2001  
*Romeva v. North Macedonia*, no. 32141/10, 12 December 2019  
*Rosenzweig and Bonded Warehouses Ltd. v. Poland*, no. 51728/99, 28 July 2005  
*Rosiński v. Poland*, no. 17373/02, 17 July 2007  
*Rositto v. Italy*, no. 7977/03, 26 May 2009  
*Rousk v. Sweden*, no. 27183/04, 25 July 2013  
*Ruiz Mateos v. the United Kingdom*, no. 13021/87, Commission decision of 8 September 1988, Decisions and Reports (DR) 57  
*Rummi v. Estonia*, no. 63362/09, 15 January 2015  
*Rustavi 2 Broadcasting Company Ltd and Others v. Georgia*, no. 16812/17, 18 July 2019  
*Ryabykh v. Russia*, no. 52854/99, ECHR 2003–IX  
*Rysovskyy v. Ukraine*, no. 29979/04, 20 October 2011

## —S—

*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11716/85, 14 May 1986  
*S.A. Bio d’Ardennes v. Belgium*, no. 44457/11, 12 November 2019  
*S.A. Dangeville v. France*, no. 36677/97, ECHR 2002–III  
*S.C. Antares Transport S.A. and S.C. Transroby S.R.L. v. Romania*, no. 27227/08, 15 December 2015  
*S.C. Service Benz Com S.R.L. v. Romania*, no. 58045/11, 4 July 2017  
*S.C. Zorina International S.R.L. v. Romania*, no. 15553/15, 27 June 2023  
*S.p.r.l. ANCA and Others v. Belgium*, no. 10259/83, Commission decision of 10 December 1984, Decisions and Reports 40, p. 170  
*Saccoccia v. Austria*, no. 69917/01, 18 December 2008  
*Safarov v. Azerbaijan*, no. 885/12, 1 September 2022  
*Saghinadze and Others v. Georgia*, no. 18768/05, 27 May 2010  
*Sak and Giebultowicz v. Poland* (dec.), nos. 39942/18 and 41347/18, 17 January 2023  
*Salabiaku v. France*, 7 October 1988, Series A no. 141-A  
*Salento Energy S.r.l. and Nuovo Sole S.r.l. v. Italy* (dec.), nos. 20445/15 and 59246/17, 1 February 2024  
*Saliba v. Malta*, no. 4251/02, 8 November 2005  
*Saraç and Others v. Turkey*, no. 23189/09, 30 March 2021  
*Šaltinytė v. Lithuania*, no. 32934/19, 26 October 2021  
*Sarica and Dilaver v. Turkey*, no. 11765/05, 27 May 2010  
*Sargsyan v. Azerbaijan* [GC], no. 40167/06, ECHR 2015  
*Sàrl Couttolenc Frères v. France*, no. 24300/20, 5 October 2023  
*Savickas and Others v. Lithuania* (dec.), nos. 66365/09 and 5 others, 15 October 2013  
*Savickis and Others v. Latvia* [GC], no. 49270/11, 9 June 2022  
*Scagliarini v. Italy* (dec.), no. 56449/07, 3 March 2015  
*SCEA Ferme de Fresnoy v. France* (dec.), no. 61093/00, ECHR 2005–XIII (extracts)  
*SC Editura Orizonturi SRL v. Romania*, no. 15872/03, 13 May 2008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Schembri and Others v. Malta*, no. 42583/06, 10 November 2009  
*Schirmer v. Poland*, no. 68880/01, 21 September 2004  
*Shorazova v. Malta*, no. 51853/19, 3 March 2022  
*Schwengel v. Germany* (dec.), no. 52442/99, 2 March 2000  
*Scollo v. Italy*, 28 September 1995, Series A no. 315–C  
*Scordino v. Italy (no. 1)* [GC], no. 36813/97, ECHR 2006–V  
*Sebeleva and Others v. Russia*, no. 42416/18, 1 March 2022  
*Selçuk and Asker v. Turkey*, 24 April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  
*Šeiko v. Lithuania*, no. 82968/17, 11 February 2020  
*Semenov v. Russia*, no. 17254/15, 16 March 2021  
*Serbian Orthodox Church v. Croatia*, no. 10149/13, 30 June 2020  
*Seregin and Others v. Russia*, nos. 31686/16 and 4 others, 16 March 2021  
*Şerife Yiğit v. Turkey* [GC], no. 3976/05, 2 November 2010  
*Sherstyuk v. Ukraine* (dec.); no. 37658/03, 18 September 2006  
*Shestakov v. Russia* (dec.), no. 48757/99, 18 June 2002  
*Shesti Mai Engineering OOD and Others v. Bulgaria*, no. 17854/04, 20 September  
2011  
*Shlepkin v. Russia*, no. 3046/03, 1 February 2007  
*Shvedov v. Russia*, no. 69306/01, 20 October 2005  
*SIA AKKA/LAA v. Latvia*, no. 562/05, 12 July 2016  
*Sildedzis v. Poland*, no. 45214/99, 24 May 2005  
*Silickienė v. Lithuania*, no. 20496/02, 10 April 2012  
*Simonyan v. Armenia*, no. 18275/08, 7 April 2016  
*Sirc v. Slovenia*, no. 44580/98, 8 April 2008  
*Skibińscy v. Poland*, no. 52589/99, 14 November 2006  
*Skóríts v. Hungary*, no. 58171/09, 16 September 2014  
*Skórkiewicz v. Poland* (dec.), no. 39860/98, 1 June 1999  
*Skowroński v. Poland* (dec.), no. 52595/99, 28 June 2001  
*Skrzyński v. Poland*, no. 38672/02, 6 September 2007  
*Smiljanić v. Slovenia* (dec.), no. 481/04, 2 June 2006  
*Smith Kline and French Laboratories Ltd v. the Netherlands* (dec.), no. 12633/87, 4  
October 1990  
*Sorić v. Croatia* (dec.), no. 43447/98, 16 March 2000  
*Sovtransavto Holding v. Ukraine*, no. 48553/99, ECHR 2002–VII  
*Spasov v. Romania*, no. 27122/14, 6 December 2022  
*Špaček, s.r.o., v. the Czech Republic*, no. 26449/95, 9 November 1999  
*Špoljar and Dječji Vrtić Pčelice v. Croatia* (dec.), no. 68320/13, 22 September 2020  
*Sporrong and Lönnroth v. Sweden*, 23 September 1982, Series A no. 52  
*Stankiewicz v. Poland*, no. 46917/99, ECHR 2006–VI  
*Statileo v. Croatia*, no. 12027/10, 10 July 2014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GC], nos. 65731/01 and 65900/01,  
ECHR 2005–X  
*Stec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GC]*, nos. 65731/01 and 65900/01, ECHR  
2006–VI  
*Stefanetti and Others v. Italy*, nos. 21838/10 and 7 others, 15 April 2014  
*Stere and Others v. Romania*, no. 25632/02, 23 February 2006  
*Stołkowski v. Poland*, no. 58795/15, 21 December 2021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Stolyarova v. Russia*, no. 15711/13, 29 January 2015  
*Străin and Others v. Romania*, no. 57001/00, ECHR 2005–VII  
*Stran Greek Refineries and Stratis Andreadis v. Greece*,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1–B  
*Streltsov and other “Novocherkassk military pensioners” cases v. Russia*, nos. 8549/06 and 86 others, 29 July 2010  
*Stretch v. the United Kingdom*, no. 44277/98, 24 June 2003  
*Strezovski and Others v. North Macedonia*, nos. 14460/16 and 7 others, 27 February 2020  
*Stummer v. Austria* [GC], no. 37452/02, ECHR 2011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dec.), no. 75909/01, 30 August 2007  
*Sud Fondi srl and Others v. Italy*, no. 75909/01, 20 January 2009  
*Sukhanov and Ilchenko v. Ukraine*, nos. 68385/10 and 71378/10, 26 June 2014  
*Sukhobokov v. Russia*, no. 75470/01, 13 April 2006  
*Suljagić v. Bosnia and Herzegovina*, no. 27912/02, 3 November 2009  
*Sun v. Russia*, no. 31004/02, 5 February 2009  
*Surugiu v. Romania*, no. 48995/99, 20 April 2004  
*Süzer and Eksen Holding A.Ş. v. Turkey*, no. 6334/05, 23 October 2012  
*Svitlana Ilchenko v. Ukraine*, no. 47166/09, 4 July 2019  
*Sypchenko v. Russia*, no. 38368/04, 1 March 2007

## —T—

*Taganrog LRO and Others v. Russia*, nos. 32401/10 and 19 others, 7 June 2022  
*Taşkaya v. Turkey*, no. 14004/06, 13 February 2018  
*Tchokontio Happi v. France*, no. 65829/12, 9 April 2015  
*Teteriny v. Russia*, no. 11931/03, 30 June 2005  
*The Holy Monasteries v. Greece*, 9 December 1994, Series A no. 301–A, pp. 34–35  
*The Karibu Foundation v. Norway*, no. 2317/20, 10 November 2022  
*Tkachenko v. Russia*, no. 28046/05, 20 March 2018  
*Todorov v. Bulgaria* (dec.), no. 65850/01, 13 May 2008  
*Todorov and Others v. Bulgaria*, nos. 50705/11 and 6 others, 13 July 2021  
*Tokel v. Turkey*, no. 23662/08, 9 February 2021  
*Tormala v. Finland* (dec.), no. 41258/98, 16 March 2004  
*Toşcuță and Others v. Romania*, no. 36900/03, 25 November 2008  
*Traina Berto and Alfonsetti v. Italy* (dec.), no. 75505/12, 8 March 2022  
*Trajkovsk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dec.), no. 53320/99, ECHR 2002–IV  
*Tre Traktörer Aktiebolag v. Sweden*, 7 July 1989, Series A no. 159  
*Tudor Tudor v. Romania*, no. 21911/03, 24 March 2009

## —U—

*UAB AmberCore DC and UAB Arcus Novus v. Lithuania*, no. 56774/18, 13 June 2023  
*Udovičić v. Croatia*, no. 27310/09, 24 April 2014  
*Ukraine–Tyumen v. Ukraine*, no. 22603/02, 22 November 2007  
*Ulemeš v. Serbia* (dec.), no. 41680/13, 2 February 2021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Ünsped Paket Servisi SaN. Ve TiC. A.Ş. v. Bulgaria*, no. 3503/08, 13 October 2015  
*Urbárska Obec Trenčianske Biskupice v. Slovakia*, no. 74258/01, 27 November 2007  
*Uzan and Others v. Turkey*, no. 19620/05 and 3 others, 5 March 2019

### —V—

*Văleanu and Others v. Romania*, 59012/17 and 29 others, 8 November 2022  
*Valentin v. Denmark*, no. 26461/06, 26 March 2009  
*Valle Pierimpiè Società Agricola S.P.A. v. Italy*, no. 46154/11, 23 September 2014  
*Valkov and Others v. Bulgaria*, nos. 2033/04 and 8 others, 25 October 2011  
*Valverde Digon v. Spain*, no. 22386/19, 26 January 2023  
*Van den Bouwhuijsen and Schuring v. the Netherlands* (dec.), no. 44658/98, 16 December 2003  
*Van Marle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26 June 1986, Series A no. 101  
*Van Offeren v. Netherlands* (dec.), no. 19581/04, 5 July 2005  
*Varvara v. Italy*, no. 17475/09, 29 October 2013  
*Vasilescu v. Romania*, 22 Ma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Vasilev and Doycheva v. Bulgaria*, no. 14966/04, 31 May 2012  
*Vaskrsić v. Slovenia*, no. 31371/12, 25 April 2017  
*Vassallo v. Malta*, no. 57862/09, 11 October 2011  
*Veits v. Estonia*, no. 12951/11, 15 January 2015  
*Vékony v. Hungary*, no. 65681/13, 13 January 2015  
*Velikovi and Others v. Bulgaria*, nos. 43278/98 and 8 others, 15 March 2007  
*Velosa Barreto v. Portugal*, 21 November 1995, Series A no. 334  
*Veselá and Loyka v. Slovakia* (dec.), no. 54811/00, 13 December 2005  
*Vijatović v. Croatia*, no. 50200/13, 16 February 2016  
*Vikentijevik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50179/07, 6 February 2014  
*Vilho Eskelinen and Others v. Finland* [GC], no. 63235/00, ECHR 2007–II  
*Vistiņš and Perepjolkins v. Latvia* [GC], no. 71243/01, 25 October 2012  
*Vitiello v. Italy*, no. 77962/01, 23 March 2006  
*Vladimirov v. Bulgaria* (dec.), no. 58043/10, 25 September 2018  
*Vladimirova v. Russia*, no. 21863/05, 10 April 2018  
*Vodă and Bob v. Romania*, no. 7976/02, 7 February 2008  
*Vrtar v. Croatia*, no. 39380/13, 7 January 2016  
*Vrzić v. Croatia*, no. 43777/13, 12 July 2016  
*Vulakh and Others v. Russia*, no. 33468/03, 10 January 2012

### —W—

*Wallishauser v. Austria (no. 2)*, no. 14497/06, 20 June 2013  
*Waldner v. France*, no. 26604/16, 7 December 2023  
*Wasa Liv Ömsesidigt, Försäkringsbolaget Valands Pensionsstiftelse and a group of approximately 15,000 individuals v. Sweden*, no. 13013/87, Commission decision of 14 December 1988, DR 58, p.186  
*Webb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6054/00, 10 February 2004  
*Welch v. the United Kingdom*, 9 February 1995, Series A no. 307-A

##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Wendenburg and Others v. Germany* (dec.), no. 71630/01, ECHR 2003-II (extracts)  
*Werra Naturstein GmbH & Co Kg v. Germany*, no. 32377/12, 19 January 2017  
*Wessels-Bergervoet v. the Netherlands* (dec.), no. 34462/97, 3 October 2000  
*Wieczorek v. Poland*, no. 18176/05, 8 December 2009  
*Wiegandová v. the Czech Republic*, no. 51391/19, 11 January 2024  
*Wysowska v. Poland*, no. 12792/13, 23 January 2018  
*Wyszyński v. Poland*, no. 66/12, 24 March

## —Y—

*Yanakiev v. Bulgaria*, no. 40476/98, 10 August 2006  
*Yaroslavtsev v. Russia*, no. 42138/02, 2 December 2004  
*Yaşar v. Romania*, no. 64863/13, 26 November 2019  
*Yavaş and Others v. Turkey*, no. 36366/06, 5 March 2019  
*Yavuz Özden v. Turkey*, no. 21371/10, 14 September 2021  
*Yel and Others v. Turkey*, no. 28241/18, 13 July 2021  
*Yershova v. Russia*, no. 1387/04, 8 April 2010  
*Yetiş and Others v. Turkey*, no. 40349/05, 6 July 2010  
*Yıldırım v. Italy* (dec.), no. 38602/02, ECHR 2003-IV  
*Yuriy Lobanov v. Russia*, no. 15578/03, 2 December 2010  
*Yuriy Nikolayevich Ivanov v. Ukraine*, no. 40450/04, 15 October 2009  
*Yusifli and Others v. Azerbaijan* (dec.), no. 21274/08, 6 December 2022

## —Z—

*Zaghini v. San Marino*, no. 3405/21, 11 May 2023  
*Z.A.N.T.E. – Marathonisi A.E. v. Greece*, no. 14216/03, 6 December 2007  
*Zaklan v. Croatia*, no. 57239/13, 16 December 2021  
*Zammit and Vassallo v. Malta*, no. 43675/16, 28 May 2019  
*Zamoyski-Brisson v. Poland* (dec.), no. 19875/13, 5 September 2017  
*Zanghi v. Italy*, 19 February 1991, Series A no. 194-C  
*Zastava It Turs v. Serbia* (dec.), no. 24922/12, 9 April 2013  
*Zbaranskaya v. Ukraine*, no. 43496/02, 11 October 2005  
*Žegarac and Others v. Serbia* (dec.), no. 54805/15, 17 January 2023  
*Zehentner v. Austria*, no. 20082/02, 16 July 2009  
*Zeïbek v. Greece*, no. 46368/06, 9 July 2009  
*Zelenchuk and Tsytsyura v. Ukraine*, no. 846/16, 1075/16, 22 May 2018  
*Zhelyazkov v. Bulgaria*, no. 11332/04, 9 October 2012  
*Zhidov and Others v. Russia*, nos. 54490/10 and 3 others, 16 October 2018  
*Zhilalev v. Russia*, no. 54891/00, 6 July 2006  
*Zielinski and Pradal and Gonzalez and Others v. France* [GC], nos. 24846/94 and 9 others, ECHR 1999-VII  
*Ziya Çevik v. Turkey*, no. 19145/08, 21 June 2011  
*Zolotas v. Greece (no. 2)*, no. 66610/09, ECHR 2013 (extracts)  
*Zouboulidis v. Greece (no. 2)*, no. 36963/06, 25 June 2009  
*Zrilić v. Croatia*, no. 46726/11, 3 October 2013

제 1 의정서 제 1 조에 대한 해설서 – 재산권의 보호

*Zvolský and Zvolská v. the Czech Republic*, no. 46129/99, ECHR 2002-IX